季刊 **KDI 政策研究**

제 18권 제 3, 4 호 1996 가을/ 겨울

製造物責任法 導入의 經濟的 效果와
立法方向 ……申 光 湜 具 本 天… 3
論 評：金 一 仲/ 金 仁 奎

우리나라 消費者物價 變動의 分布와
政策的 含意 ……柳 潤 河 成 明 基… 63
論 評：朴 宗 奎/ 洪 基 錫

産業構造調整의 成果와 政策的 示唆點 ……成 素 美…129
論 評：姜 哲 圭/ 朴 埈 卿

企業集團의 現況과 特徵：
比重・市場地位・多邊化・所有構造 ……李 在 亨…183
論 評：朴 炳 亨/ 林 暎 宰

編 輯 陣

委員長 左 承 喜
幹 事 黃 晟 鉉
委 員 金 大 逸 金 俊 逸
羅 東 敏 朴 進
林 暎 宰 韓 震 熙
編 輯 申 東 祚

編輯問議：編輯委員會(958-4171)
購讀問議：發刊資料相談室(958-4326~8)

KDI 政策研究

『KDI 政策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의 發展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政策的·理論的 問題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문형태로 수록하여 年 4回 發刊됩니다. 本誌의 發刊 目的은 大學 및 研究機關의 專門家들은 물론 정부정책담당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本 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널리 紹介하는 데에 있습니다.

本誌에 실리는 論文 중 「政策研究」는 주로 懸案政策課題에 대한 分析과 政策代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2人 이상의 院內外 專門家의 指名論評과 함께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편 「研究論文」은 本院의 政策研究過程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政策研究를 위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2人 이상의 院內外 專門家의 논평을 거쳐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諸般 政策建議를 포함하여 이들 論文에 報告되는 一切의 內容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이나 編輯委員會의 公式意見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本誌의 內容은 出處 및 執筆者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습니다.

本誌는 발표되는 論文에 대한 讀者들의 솔직하고 생산적인 論評을 환영합니다.

製造物責任法 導入의 經濟的 效果와 立法方向

申 光 湜 (本院 研究委員)
具 本 天 (本院 專門研究員)

◇要　約◇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賠償 및 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消費者 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製造物責任의 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損害賠償額 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Ⅰ. 製造物責任法 導入論議의 背景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地球村 時代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製品安全, 健康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장개방 등으로 소비상품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使用·消費過程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韓國消費者保護院(1993)의 『消費者危害實態 및 安全意識調査』 결과에 따르면, 1991~92년 사이에 조사대상 총 1,477가구 중 186가구(12.6%)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219건 발생하였고 관련상품의 종류도 62개에 이르고 있다. 宋泰會(1995)는 이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제품결함으로 인한 연간 소비자피해의 규모를 1,5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民事責任法制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확대손해)를 입은 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民法 第750條에 의한 불법행위(tort)책임[1]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그러나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이 '過失原則'(negli-

1)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시각으로 환경책임, 제조물책임, 산업재해책임의 기본사상이다. 19세기에는 계약당사자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계약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2) 民法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는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제조자와 소비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제조자에게 채무불이행

gence rule)에 입각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因果關係, 그리고 제조자의 故意나 過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등 그 立證責任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조자의 안전제고유인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嚴格責任原則'(rule of strict liability)을 채택한 現代的 製造物責任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嚴格責任原則은 제조자의 故意나 過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製品缺陷의 存在 및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因果關係의 입증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 제조물 결함에는 제조결함뿐만 아니라 설계(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도 포함된다. 製造缺陷은 '제품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므로 대량생산된 제품 중 하나가 특별히 결함을 지닐 때를 일컬으며, 設計缺陷은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만큼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제품설계의 편익이 그 위험을 능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제품의 위해속성에 관한 경고가 있었으면 피해가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되면 警告缺陷이 인정된다. 결국, 엄격책임원칙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責任의 要件을 제조자의 과실로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함으로써 제조자의 자기 제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을 제공하고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확대손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도 불가능하다.

3) 1982년 2월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마련하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康昌景 · 崔秉祿 · 朴熙主(1994), 崔秉祿(1996) 참조.

그 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비용은 보험료, 법정비용, 제품시험·안전관리비용, 제품철회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게 부과되나, 궁극적으로 이 비용들은 가격상승이나 구매선택폭의 감소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本稿는 제조물책임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여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피해보상과 사고감소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엄격책임원칙의 논거를 살펴본 다음, 責任原則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기술하고 있다. 제Ⅲ장은 제조물책임법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제와 그 시행경험을 논의하고 있다. 제Ⅳ장은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Ⅴ장은 Ⅱ~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Ⅱ. 製造物責任의 論據와 經濟分析

1. 製造物責任의 論據

어떤 사회이든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事故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산업·기술이 발달하여 '복잡한' 제품의 생산·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제품사용 및 소비상의 사고발생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불가능하다. 예컨대,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0km로 하면 사망사고를 거의 없앨 수 있겠지만 운전자의 시간기회비용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政策課題로 대두되는바, 정부의 안전규제 및 불법행위법제 등의 제도, 산재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격시스템을 통한 市場의 힘 등이 제품위험의 통제와 사고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1960년대 초부터 不法行爲法制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제품결함에 기인하는 피해의 배상책임을 규율하여 오던 契約(contract)·過失(negligence)法制가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의 不法行爲法制로 대체됨으로써 미국기업들은 제품결함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게 되었다.[4] 유럽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指針(EC Directive)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거의 모든 EC회원국들이 엄격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였다. 일본은 1994년 6월에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확대를 가져온 엄격책임의 불법행위법제는 다음의 두가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事故의 費用을 사고를 초래하는 행위로 內部化함으로써 위험제품의 생산·소비를 줄여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5] 기업이 자기가 제조·판매한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事故의 費用을 부담하도록 하면, 生産·販賣 등의 결정과정에서 이 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제품안전을 제고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사고방지·감소조치를

4) 1916년 Buick사건, 1944년 Escola사건.
5) Smith(1914)는 비용내부화를 논거로 산재보상보험을 정당화하였으며, Prosser(1943)는 비용내부화의 개념을 불법행위법 전반으로 확대적용하였다.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이 사고피해자에 대한 補償保險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은 多數의 消費者들을 상대로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사고의 비용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바, 개별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피해의 비용을 부담하여 사고보상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2. 責任原則의 經濟分析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등의 책임원칙들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적 분석은 제조자가 소비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製品被害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嚴格責任原則이 사고감소 및 억지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조물이 복잡해질수록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제조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위험제품의 생산·판매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칼, 드릴 등과 같이 사용상의 위험이 명백한 제품은 소비자가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제조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製品安全을 달성하도록 하는 責任費用이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책임의 범위와 그 입증이 너무 어려우면 시장에서 판매·소비되는 危害可能製品이 과도하게 많아질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제품의 생산·소비가 사회적 적정량보다 줄어들 것이다.

가. 責任原則

責任(liability)은 누가 事故의 費用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통상 세가지 책임부과의 기준이 책임법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6)]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원칙을 혼용하고 있고, 순수한 무과실보상체제는 뉴질랜드만이 채택하고 있어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는다.[7)]

(1) 過失責任原則

過失原則하에서는 가해자에게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구체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일정 행위에 있어 '상당한 주의'(due care)를 취할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過失이 있다'고 본다.[8)] 따라서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이외에 제조자에게 過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제조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자의 過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제품사용·소비과정상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제조자의 過失이 있음을 推定하고 제조자가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여 이 추정을 깨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다.

(2) 嚴格責任原則

嚴格責任原則하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손해발생의 近因이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제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가해자에게 過失이 있음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엄격책임원칙으로의 전환은 제조자의 행동양식과 정보에 관한 복잡한 분석으로부터

6) OECD(1995).

7) 無過失補償體制(no-fault compensation system)는 사회보장이나 의무보험기금 등으로 사고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보완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완전히 대체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1982년 사고보상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른 책임법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무과실보상체제하에서는 단순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바, 이 제도의 장점은 법집행의 비용을 줄이고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8) 법적 의무가 상세히 정의되거나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가 법률적으로 측정되어야만 過失의 개념이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過失原則은 법원이 '상당한 주의'를 평가·결정하는 방법으로부터 실체를 갖게 된다.

좀더 간단하고 객관적인 제품속성의 규명으로 사건분석의 주안점이 바뀌게 되며,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엄격책임원칙은 '상당한 주의'의 수준이 매우 높아 가해자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過失原則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엄격책임원칙하에서 어떠한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絶對責任을 지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은 旣存技術(state of the art) 또는 開發危險(development risk)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제품오용, 위험감수(assumption of risk) 등을 부분적 또는 완전한 항변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생산자무책임, 과실책임, 엄격책임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생산자무책임(가)은 누구의 주의수준에도 상관없이 상

[그림 1] 過失 및 嚴格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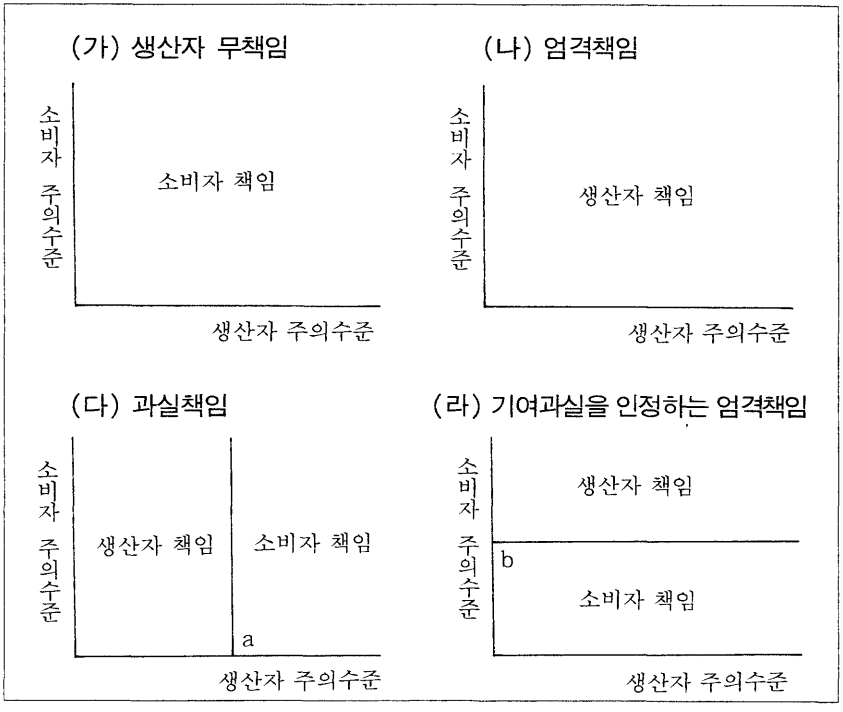

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순수한 엄격책임(나)에서는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과실책임(다)에서는 생산자가 적정수준의 주의(a)를 기울이면 소비자가 책임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며,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라)에서는 소비자가 적정수준의 주의(b)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製造缺陷의 경우에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대개 법원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는 제품을 그 제조자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결함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設計缺陷과 警告缺陷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제품 자체의 검사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판단과 기술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過失 여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나. 經濟分析

제품의 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 즉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결국 效率과 衡平의 문제로 귀결된다. 흔히 효율과 형평은 상충관계에 있는바, 소득을 아무 제약 없이 재분배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후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배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嚴格責任原則과 過失原則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품사용·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제조자와 소비자이다. 이제 Polinsky(1983)의 간단한 例를 통해 책임원칙들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어떤 음료업자가 음료수를 병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캔에 넣을 것인지를 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병은 값이 싸지만 소비자가 다칠 확률(예상피해액)이 높다. 먼저 소비자가 다칠 확률(예상피해액)은 소비자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각 경우의 비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경우에 따른 費用

(단위 : 원, 하나당)

	생산비용	사고확률	사고시피해액	예상피해액	전체비용
병 사용	40원	1/100,000	10,000	10	50
캔 사용	43원	1/200,000	4,000	2	45

이 경우에는 캔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캔의 사용이 생산비용을 3원 올리긴 하나 예상피해액에서 8원이 싼 셈이므로 전체 생산비용은 결국 캔이 5원 싸다. 생산자들이 43원이 아니라 예상피해액을 합친 45원에 음료수를 판매하므로 (위험한 음료의) 과다한 소비가 방지된다.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알고 있는지(완전정보)와 소비자의 행동이 사고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소비자 행위의 영향)에 대한 가정을 바꿔가면서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1) 消費者의 完全情報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자가 사고의 원인을 떠나서 피해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9] 따라서 기업은 예상피해액을 비용에 포함하여 병을 사용하면 50원, 캔을 사용하면 45원의 비용이 들며 가격도 이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연히 45원짜리 캔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이 값에는 제품가격에 모든 사회적비용이 포함되므로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소비량(캔)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책임은 제조자가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나 생산량에 있어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과실책임은 제조자가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병을 사용하면 가격이 50원이 되지

9) 소비자가 손을 다칠 만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가정했음.

만 캔을 사용하면 가격이 43원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완전정보를 가정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캔의 가격을 계산할 때 자신이 책임질지 모르는 예상피해액 2원을 더하여 45원이 전체가격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캔을 택할 것이며 비록 가격은 43원이지만 2원을 더한 45원의 유효가격에 음료수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과실책임하에서도 주의의 정도나 판매량에서 모두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결국, 제조자와 소비자들이 危險中立的이고 소비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책임원칙이 적용되든 제조자가 기울이는 주의의 수준이나 생산량에서 모두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된다.

(2) 消費者의 不完全情報

소비자가 危險을 과소평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엄격책임에서는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조자는 여전히 병은 50원에 그리고 캔은 45원에 공급하려 한다. 결국 엄격책임의 효율성은 소비자의 정보에 무관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고발생시 완전히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 제품정보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취급하며 제조자는 자신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격에 예상피해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이 대량 소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엄격책임이 효율적이라는 이론적 뒷받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과실책임하에서 기업은 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지기 때문에 병 음료수는 50원에 그리고 캔 음료수는 43원에 판매하려 한다.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캔을 선택하지만 위험을 과소평가하므로 43원에 예상피해액 2원을 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더 많은 캔을 구입하게 된다. 결국 정보

가 불완전하고 소비자가 제품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기울여야 할 주의수준과 소비자의 구입량에 있어 엄격책임만이 효율적이다.

(3) 消費者의 不完全情報 및 事故確率 變化

소비자의 행동이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금까지의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음료수 병이나 캔으로 부상을 입는 것은 구입자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가 주의를 더 기울이면 사고확률을 감소시켜 예상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엄격책임하에서 寄與過失(contributory negligence)의 원칙이 필요하다. 즉 엄격책임에서는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여과실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에서 보행자(피해자)가 걷고 있었으면 책임이 없지만 뛰다가 다쳤으면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행자를 걷게 하고 운전자는 천천히 운전케 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 되고 소비자가 알맞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앞의 (1)와 같은 논리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도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진다. 현실에서 기여과실을 채택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여과실은 이론의 설명을 위해서만 채택하고 추후는 논의하지 않는다.[10]

---

10) 미국에서 6개주만 채택하고 있다.

〈표 2〉 消費者의 情報 및 事故確率變化

	엄격책임	과실책임
소비자의 완전정보	효율적	효율적
소비자의 불완전정보	효율적	비효율적
소비자의 불완전정보 및 사고확률변화	비효율적	비효율적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는 부주의할 경우 자신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손실을 과소평가하면 주의를 덜 기울일 것이므로 자신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또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행동이 예상피해액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평가할 때(不完全情報)는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나 과실책임 모두 위험의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4) 保險(소비자가 危險回避를 선호할 때)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危險中立的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제 소비자가 危險回避的(risk-averse)이라 가정해 보자. 먼저 保險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 소비자가 위험회피적이고 제조자가 위험중립적이라면 제조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엄격책임이 이상적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만 과실책임이 이상적이다. 즉 제도선택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위험회피 정도를 비교해야 하며 만약 소비자가 제조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심하면 기업의 책임이 높아져야 효율적이다.

이상적인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배분의 차원에서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은 모두 효율적이다.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자는 책임보험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가 상해보험으로 완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이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의 문제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보상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엄격책임하에서 제조자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바, 이는 제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데 비해 책임보험이 완전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실책임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소비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해보험료가 제품구입량에 비례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가 소비자가 구입하는 음료수의 양과 무관하게 정해진다면 소비자는 너무 많은 음료수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과다한 양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 완전한 보호보다는 적은 혜택을 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둘 다 불완전하다면, 위험배분에 있어서 엄격책임과 과실책임간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제조자와 생산자간의 상대적인 위험회피에 달려 있다. 여기서도 소비자가 제조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심할수록 기업의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

(5) 第3者 被害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가정하였다. 샴페인 병을 땄을 때 코르크마개가 날아가 다른 사람의 눈에 맞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소비자가 아닌 제3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엄격책임이 과실책임보다 우월하다. 엄격책임이라면 제조자 책임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사고보상의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가격이 시장가격이 된다. 과실책임에 있어서, 제조자는 책임이 없어 시장가격은 전체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 또한 자신이 겪지 않을 사고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시장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위험제품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많이 매매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의 목적은

여러가지 상호배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규칙을 찾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이나 과실책임 모두 제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주의와 적정한 생산량을 유도한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면, (소비자가 알맞은 주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만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예상피해액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라 주의조차 소홀히 한다면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조차 비효율적이 된다.

위의 결론에 위험회피정도까지 고려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제조물 책임의 모든 요소(제조자의 주의, 소비자의 주의, 산업생산량, 위험분산)가 고려될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한 규칙이 모든 면에서 최선일 수는 없다. 어떤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각각의 특정한 제조물책임의 상황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6) 기타 硏究

Yandle(1974)은 소비자를 세그룹(보험을 이용하는 그룹, 자체보험을 만드는 그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규칙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어떤 한 책임원칙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적제도나 정치적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urrows(1982)는 과거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와 제조자들의 행동이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었다. Coase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이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구성원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과실책임

은 물론 엄격책임조차 비효율적임을 보였다.

책임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사고비용을 소비자 대신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위험제품의 판매를 억제시키고 따라서 사고의 정도와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Oi(1973)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달리 보통 가능한 조건하에서, 제조자책임으로의 전환은 위험한 제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의 결과는 몇가지 가정에 기인하는데 첫째, 소비자와 제조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제품위험이 어떤 행동에 의해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셋째 소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등이다.

Brown(1973)은 각각의 책임법칙이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과실책임, 공헌적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 공헌적과실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등의 책임규칙을 살펴보고 모든 책임규범이 각 구성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rown(1974)은 제조자와 소비자에게 보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정기간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때, 법으로 위험을 분배할 때의 세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는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동이 위험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한 책임규칙이 항상 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다른 몇몇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바꾸거나 완화하면서 책임의 모델을 분석하였다. Green(1976)은 각각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수준의 주요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를 가정한다. 그는 책임규범의 효율성은 각 개인그룹에서 비용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였다. 만약 피해자마다 사고예방의 비용이 다르다면, 사고방지비용이 높은 피해자는 낮은 수준의 주의를 하고, 방지비용이 낮은 피해자

는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다양한 비용수준에 있는 데 반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예방비용이 든다면 이 결과가 효율적일 것이다.

Ordover(1979)는 주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하고 공급자가 이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가정하에서 엄격책임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아 Oi(1973)의 결과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엄격책임은 낮은 위험도의 소비자들이 높은 위험도의 소비자들을 경제적으로 보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엄격책임과 과실책임간의 우월성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Shavell(1980)은 소비자의 행동이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와 미치지 못할 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이 각각 효율적인 경우를 설명한다. 과실책임에선 피해자가 행동의 모든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을 하고, 기여과실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과다한 구입을 하려는 반면에 가해자는 행동의 전체비용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생산한다.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수학적 모형은 부록에서 다룬다.

Ⅲ. 先進國의 製造物責任法

1. 주요 이슈

다음의 여섯가지 사항들이 제조물책임법의 작동과 기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서, OECD 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제 도입·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다.

가. 製品使用者의 責任

이는 책임의 결정에 있어 제품사용자의 과실이나 위험의 감수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모든 OECD 국가들은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순수한' 비교과실책임원칙은 피해자가 사고에 대하여 40%의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을 40%만큼 삭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경우 6개주만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한 배상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43개주가 비교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일정 임계수준을 넘지 않는 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수정된' 비교과실책임원칙을 쓰고 있다.

나. 連帶 및 個別責任

이는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 누구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연대 및 개별책임의 원칙이 채택되면 일단 각 피고의 책임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정된 비율로 한정되나(개별책임) 다른 피고들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선택한 피고가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연대책임)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서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촉진되나 배상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피고가 그 과실비율 이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도 자신이 취급한 물품의 결함에 대해 100%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대책임의 적용방식과 범위는 州에 따라 다르며, 9개주는 1987년 이후 연대책임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스웨덴의 제조물책임법은 주요책임자(제조업자, 자기 상표로 제품을 판매한 자,

수입업자)와 부속책임자(판매업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판매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이전단계의 사업자를 알려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開發危險抗辯(기존기술항변)

이는 제조자가 제품의 생산·판매시점에서 제품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개발위험항변은 '숨겨진 위험'의 경우 및 생산 또는 판매 이후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지식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이 판매될 시점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중에 환자의 복용후에 발견되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EC 지침은 제품의 판매시점에서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의 상태가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각 회원국이 이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EC 국가들이 이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기술혁신의 위축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개발위험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법원이 이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

라. 提訴期限

이는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제소기한이 없는 경우 제조자는 무한의 책임기간에 직면하게 되어 책임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소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EC 지침은 10년의 제소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8개주가 5년에서 12년에 이르는 제소기한을 두고 있다.

마. 損害賠償

손해배상의 금액과 유형, 손해배상한도의 설정 여부, 副補償源原則(collateral source rule)의 채택 여부 등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의 수준 및 기업의 책임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손해배상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으로 나눌 수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의 주목적은 원고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은 소득손실과 의료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EC 지침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고 있다. 최근 일부 미국법원들은 생의 즐거움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쾌락적 손해배상이라는 새로운 비경제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고를 처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많은 법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엄격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수와 배상금액이 급증하였다.

EC 지침은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각 회원국에게 7천만ECU(약 650억원)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만이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은 설정하지 않았다. 미국에는 손해배상액 규모를 제한하는 연방법률은 없으며, 13개주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미 6개주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제한설정은 줄어들 것이다.

副補償源 원칙은 손해배상액이 의료보험이나 산업보상보험 등의 부차적 보상원에 의해 감소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42개주)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는 의료보험의 보상액뿐 아니라 제조자의 배상도 받기 때문에 이중배상이 된다.

바. 製造物의 範圍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택의 부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자체는 제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고, 단지 미국에서만 대량으로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중고품, 전기, 가스는 제조물에 해당하나 혈액, 臟器, 동물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C 지침은 1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EC 국가는 이들을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2. 美國의 經驗

1960년 뉴저지주 대법원의 Henningsen 판결과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Greenman 판결에서 엄격책임이론이 채택되고 1964년에 American Law Institute가 엄격책임원칙의 수용을 권고한 이래, 많은 州들이 엄격책임원칙으로 전환하였다. 후속 판결들을 통해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의 개념이 확대되어 그 입증이 용이해지고 제조자의 항변도 크게 제한됨으로써, 1970년대부터 경고결함 관련 쟁송이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업들이 배상책임의 폭증을 겪었다.

신체적 피해와 관련된 연방 제조물책임소송이 1975~89년 사이에 2,393건에서 13,408건으로 6배 증가하였고, 민사사건에서 제조

물책임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5.74%로 증가하였다. 1975년에 9건에 불과하던 100만달러 이상의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판결이 1984년에는 86건에 달하는 등 배상판결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책임보험료의 급상승, 고위험 업종의 보험인수 거부 등의 '책임보험위기'가 발생하여 항공기, 스포츠용품, 제약, 자동차, 화학산업 등이 크게 영향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1985년에 기업책임 관련 소송의 비용으로 700억달러(56조원)가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업 자문회사인 Tillinghast의 1989년 연구에 의하면 1987년도 총책임비용 지출액이 1,179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표 3〉 EU 會員國 및 日本의 施行 및 옵션採擇 現況

국 명	입법현황 (시행일)	옵션		
		1차농산물/수렵물	개발위험항변	책임한도액
영 국	1988년 3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그 리 스	1988년 7월30일	배제	인정	존재
이 탈 리 아	1988년 6월29일	배제	인정	부재
룩셈부르크	1989년 5월 2일	포함	부정	부재
덴 마 크	1989년 6월10일	배제	인정	부재
포 르 투 갈	1989년11월21일	배제	인정	존재
독 일	1990년 1월 1일	배제	인정	존재
네 덜 란 드	1990년11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벨 기 에	1991년 4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아 일 랜 드	1991년12월16일	배제	인정	부재
프 랑 스	불명	포함	인정	부재
스 페 인	1994년 7월 8일	배제	인정	존재
오스트리아	1988년 7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핀 란 드	1991년 9월 1일	포함	부정	부재
스 웨 덴	1993년 1월 1일	포함	인정	부재
일 본	1995년 7월 1일	배제	인정	부재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많고 손해배상액이 높은 것은 배심원제, 비경제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성공보수제 및 광고, 재판전 증거조사권,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의 발견' 등과 같은 미국 사법제도의 특성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배심원에 의한 책임의 결정 및 비경제적·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배상액에 많은 편차를 가져오면서 결함과 책임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제조물책임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다.

최근에는 제조물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법의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의 범위와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경제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한도의 설정과 절차적 제한, 연대 및 개별책임 원칙의 개정 또는 폐지, 부보상원 원칙의 철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3. 日本 및 유럽의 經驗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제조물책임소송이 1건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불편한 소송체계와 소송을 꺼리는 문화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국민생활센터 및 민간부문의 11개 산업별 PL센터가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소비자들은 이들 기관을 제일 먼저 이용하여 제조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를 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경험이 1년에 불과하여 아직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산업에 미친 영향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법의 유럽통일안(EC지침)을

채택하여 역내 법적용의 통일성을 모색하였는데, 논란의 대상이 된 1차농산물과 수렵물의 포함, 개발위험항변의 인정, 책임한도액의 설정 여부 등은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중 대다수 국가들은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개발위험항변을 인정하였으며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았다(표 3 참조).

Ⅳ. 製造物責任法의 經濟的 效果 및 費用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통한 엄격책임원칙으로의 전환은 제조자, 소비자, 보험회사, 법조인 등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경제활동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와 내용, 사법제도, 법률서비스시장의 작동 등 많은 요소들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손해배상, 안전과 기술개발, 물가, 국제경쟁력 및 중소기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살펴본다.

1. 損害賠償

결함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과 배상수준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원칙과 내용 및 제조물책임법제 이용의 비용에 달려 있다. 사법절차의 이용비용이 일정하다면 엄격책임으로의 전환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가망성을 높일 것이다. 과실책임하에서는 피고가 제품의 결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이 부과되나, 엄격책임원칙하에서는 피고가 취한 행위(주의의 수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불법행위법이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원고의 승소확률이 20%에서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Viscusi(1986)의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엄격책임원칙의 채택은 원고의 승소 가망성을 20% 높인다고 한다. 원고승소확률의 증가는 쟁송 이전 단계의 결정(소송제기, 화해, 소취하 등)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제조물책임법이 인정하는 손해의 유형, 부보상원 원칙의 채택 여부, 배상액에 대한 제한의 여부 등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절차의 이용비용이 높고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이 과도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2. 安全과 革新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생산·소비를 억제하고 안전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잘못 운용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비용의 부과는 제조자의 안전제고노력과 주의조치를 강화시킬 것이나, 이것이 소비자의 사고방지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사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FDA가 안전 병마개 사용을 의무화한 뒤 부모들의 주의수준이 낮아져 오히려 어린이가 약을 삼키는 사고가 증가한 예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혁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onfer-

ence Board(198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물책임사건을 경험한 기업들 가운데 47%가 제품사용법과 경고문을 개선하였고, 35%는 제품의 안전도를 높였으며, 33%는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조사대상기업의 36%가 과다한 책임비용 때문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였고, 30%는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1%는 제품연구를 중단하였다. Priest(1990)와 Swazey(1991) 등의 연구결과는 책임의 확대가 안전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억제하여 그 비용/편익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반면, Graham(1991)과 Craig(1991)는 제조물책임소송이 관련제품의 안전과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안전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산업부문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안전과 혁신을 모두 증진시켰으나 민간항공기, 자동차, 제약,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혁신을 위축시키고 안전도 저해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럽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안전이 향상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기업이 법제정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제조물책임비용의 증가는 제품안전의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노력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에 수반하는 위험을 제거 또는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제도의 예측불가능한 성격과 과도한 책임비용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는 Conference Board의 조사결과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과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Viscusi & Moore(1991)의 실증분석은 제조물책임비용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는 책임비용의 증가가 안전제고유인을 창출·강화하지만 기대책임비용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연구개발을 저해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비용의 표본평균에서 제조물책임비용은 연구개발강도를 15% 높이며, 제조물책임법제가 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책임비용의 임계치는 매출액의 1%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비용이 극히 미미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제조물책임의 확대가 기업의 안전제고유인을 강화하여 연구개발노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소송절차, 법률서비스시장 등이 영미법계통의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준까지 기업의 책임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하겠으나, 제조물책임법이 기존제품보다 신제품에 대하여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기존기술항변 및 소비자의 위험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제품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등의 제조물책임비용이 높아지고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의 가능성에 노출되는바, 이는 신제품의 개발·도입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3. 物 價

일본 경제기획청의 의회보고에 따르면, 일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할 당시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모두 1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가 0.005% 정도 상승하리란 분석이 있으며, 다른 방법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물가가 0.01% 정도 상승하리란 예측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직접적인 손해배상비용 이외에 기업의 사고예방노력, 연구개발, 소송비용, 생산성, 국제경쟁력, 보험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인 분석 없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제품 10가지 중 가장 위험한 2가지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으로 해서 사라졌다면 평균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평균안전도도 상승하므로 단순한 물가상승과는 달리 품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보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위해 및 위험이 산업성격상 내재된 부문에서 가격상승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계, 전기기기, 운송용기기(자동차부품 등), 건설업(부품 및 설치 포함), 고무와 플라스틱, 비철금속, 정밀기기, 화학, 화장품, 가스제품, 운동용구, 완구, 의약품(한약 포함), 가구, 식료품, 의류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 國際競爭力 및 中小企業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 평가의 변화를 수반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979년에 베트남에서 화학무기로 쓰였던 Agent Orange의 후유증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날

생산기업 6개사의 주식가치가 5,600만달러(448억원) 하락하고 그 후 열흘간 9,800만달러(784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지자, 주식가치는 1억4,500만달러(1,160억원)이 상승하였고 그중 Dow Chemical은 8,300만달러(664억원)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험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비용의 부과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자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20~50배나 많은 제조물책임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자동차가격 중 제조물책임비용은 500달러인 데 반해 수입차는 50달러에 불과하며 대만에서 12달러에 불과한 간염백신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비용으로 160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매년 300만명의 어린이에게 주사되던 DTP의 가격은 최근까지 10센트였으나 제조물책임의 증가로 2달러80센트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번의 배상판결이 제품의 연간 매출액 90만달러를 쉽게 넘기 때문이다. 1987년도에 Dow Chemical은 총매출의 절반을 해외판매에서 확보하였는데, 외국에서는 4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을 겪은 반면에 미국내에서는 456건을 겪었다. Campbell의 보고서는 기업책임의 경감이 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을 증진시킴을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어 제조물책임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도 소송제도상 과다하게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수출품의 55%가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정립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제품이 제조물책임법으로 안정성이 향상된다면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및 시행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위험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최종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안전책임의 증가로 하청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하청기업에 대한 검품 및 업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지며 부품에서 결함 발견시 벌금부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기업의 필요한 대응조치는 ① 제품안전관리자의 선임 ② 제품안전을 위한 조직신설 ③ 사고발생후 대책체제 ④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파악 ⑤ 사내 기록보존체제 정비 ⑥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⑦ 제조과정 품질관리 ⑧ 경고문구와 취급설명서 검토 ⑨ 판매후 감시와 경고의 실시 ⑩ 배상청구체제와 리콜체제 확립 ⑪ 하청기업까지 보험대상으로 하였는지 점검 ⑫ 비용부담과 책임비율 정립 등이다. 특히 하청기업에게 일어날 예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구도 필요한데 이는 ① 품질관리체제의 정비 ② 손해발생시 책임분담의 명확화 ③ 품질보증의 강화 및 명확화 ④ 보험 가입 ⑤ 안전성에 관한 서류보존 ⑥ 경고표시의 의무이행 및 적정화 ⑦ 수주내용의 명확화 ⑧ 애프터서비스체제의 정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완성품의 사고원인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을 때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대금지급의 지연, 금액의 삭감 등 대금에 관한 사항만 규제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으로 하청기업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부담, 검사기준변경 등으로 인한 제품수령거부, 보험 가입 강요 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의 확대해석 또는 조건추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하청기업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 납품제품 자체의 하자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성 강화로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시

장에서 탈락되어 독과점률 증가 및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안전의 품질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감소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증진효과와 독과점폐해를 사안에 따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품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행위(광고, 보도)를 촉진하는 정책이 안전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품질관리 및 상품명(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의 신뢰구매를 유도하는 시장행위이므로 낭비적 요소로만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영향은 하청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은 사고발생시 책임부담 이상의 여론의 주목과 인지도 악화를 겪어 피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대기업의 제품은 중소기업에 비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며 따라서 안전에 더 주의할 유인이 존재한다. 간장의 위해성 논란, 광우병사건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위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높아 부정확한 정보는 기업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규명의 정확성이 요청된다.

5. 生産物賠償責任保險

1967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위험과 시공위험을 담보하고 생산물자체의 손해, 리콜비용 등은 담보하지 않으며, 제조자는 판매인이나 하청기업을 피보험자로 추가할 수 있다. 엄격책임의 과다적용이 위험예측의 불가능과 부담의 과다를 초래하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회피하여 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보험계약 회피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동차부품생산의 회피는 교통의 혼란을 초래하게

〈표 4〉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年度別 契約實績

(단위 : 천원)

	국 내		해 외		합 계	
	건 수	보험료	건 수	보험료	건 수	보험료
1990	461	961,357	148	1,582,475	609	2,543,833
1991	620	1,539,302	160	1,994,924	780	3,534,226
1992	707	1,690,282	144	2,010,589	851	3,700,871
1993	922	2,084,779	156	2,664,081	1,078	4,748,861
1994	988	4,627,152	159	4,724,763	1,147	9,351,915

되며, 그밖에 신제품개발의욕의 저하, 실업 및 생산자본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1994년의 우리나라 전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계약건수는 1,147건, 보험료는 93억5,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0%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내용 제품의 보험료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50%에 이르고 있다(표 4 참조).

1994년에 국내용 제품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건수는 988건, 보험료 총액은 46억3천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일반손해보험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로 아직 미미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르러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소수제품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의 미성숙을 알 수 있는데, 전기제품, 곤돌라, 가스용품, 음식물, 보일러의 5대 종목이 전체 보험료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자동차부품, 난로,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파이프의 비중이 크다(표 5 참조). 보험금을 지급한 실제사건 중에서 국내에서 1억7,900만원을 지급한 보일러제조회사가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이며 수출품의 경우

〈표 5〉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원수실적(1994)

(단위 : 천원, %)

항 목	건 수	보 험 료	보 험 금[1]	보험료비중
1. 전기제품	159	2,947,037	928,437	31.51
2. 기 계 류	62	980,908	132,000	10.49
3. 곤 돌 라	107	898,166	824,728	9.60
4. 가스용품	50	506,184	366,360	5.41
5. 자동차부품	92	420,077	106,114	4.49
6. 음 식 물	247	333,896	94,158	3.57
7. 보 일 러	41	211,260	152,236	2.26
8. 난 로	27	144,752	168,973	1.55
9. 의 류	22	81,264	0	0.87
10. 의 약 품	26	78,742	0	0.84
11. 화학제품	22	74,136	0	0.79
12. 파 이 프	15	30,058	15,618	0.32
13. 기 타	277	2,645,430	1,983,618	28.29
합 계	1,147	9,351,915	4,772,247	100.00

註 : 1) 미지급 보험금 포함.

에는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한 와이어로프회사가 있다.

거의 모든 국내 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1993~94년)에 전기제품, 가스용품, 보일러 등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해외수출용품은 변동폭이 워낙 커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전기제품, 기계류, 의약품의 총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출하액대비 보험료 부담률을 알아보고자 했으나 기업별로 그 위험도 및 가입금액에 따라 변동폭이 워낙 크고 0.01%부터 1.5%까지 범위가 워낙 넓어 일정한 의미를 도출할 수 없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확대할 것은 명확하지만 보험료를 상승시킬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업책임 확대 및 안전의식 강화는 상대적으로 低危險度의 사업자의 보험가입

을 유도하고 종전의 逆選別現象을 교정하여 오히려 보험요율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엄격책임의 강화가 보험료지급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산업별 협회를 통한 단체계약으로 중소기업의 보험요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다.

V. 製造物責任法 制定에 관한 提案

1.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必要性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제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만큼 제품의 사용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용은 증가하게 되나 피해 소비자가 현행 민법의 과실책임이 요구하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결함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실제로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품관련 事故의 頻度나 被害規模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기업이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의 범위와 책임비용이 얼마나 적은지는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업들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로써 잘 알 수 있다. 기업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위험제품들이 생산·소비되고 있어 제품결함에 기인하는 신체적·물적 피해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피해 소비자들은 전체적

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현행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과실책임을 엄격책임원칙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물책임법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증진시키며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높여 책임부담에 근접시키고 제품의 국제경쟁력도 상승시키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만약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안전증진에 의한 사고감소에 의해 상당부문 상쇄되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전체적인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리라 생각되므로 제도는 도입하고,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대한 반론으로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조물책임소송과 엄청난 배상판결액이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책임비용이 과다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배심원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책임을 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도 매우 적고(1인당 변호사수가 미국의 1/23) 성공보수제와 변호사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대립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판전 증거조사권을 허용하고 있어 변호사의 활동과 능력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우리는 대립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된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조사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증인의 활용범위도 좁아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작다.

많은 선진국들이 미국의 엄격책임제도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바꾸어 왔지만, 소송 및 책임비용의 폭증을 겪은 나라는 없다. 1985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불법행위소송의 총비용은

약 7억700만달러인 반면에 미국의 비용은 290억~36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두 나라간의 인구의 차이를 조정하면 미국이 영국보다 불법행위소송에 10배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제조물책임의 비용이 실체법상의 차이보다는 일국의 전반적인 법적 및 사회적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조차도, 책임비용이 급증한 시점이 엄격책임이 도입된 1960년대가 아니라 1970~80년대였다는 것은 엄격책임의 채택이 책임비용증가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Viscusi(1991)는 책임비용증가의 요인으로서 추정조항과 결합된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의 광범위한 인정을 들고 있다.

2.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方向

무엇보다도 책임비용과 제품결함(위험)이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여 사고억제의 유인과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단지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안전을 달성하도록 기업에게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제조결함에 대해서는 결함판단이 용이하므로 엄격책임의 철저한 적용으로 기업의 보상보험기능을 강화하되,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에 대해서는 위험/효용의 평가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11] 제조물책임법과 정부의 안전규제간의 합리적 기능배분을 통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총체적인 위험관리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11) 디자인결함은 제품디자인 개선의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는데도 디자인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으로 정의되고, 경고결함은 경고가 있었으면 사고가 방지되었을 경우에 경고의 부재를 결함으로 정의한다.

가. 抗 辯

기존기술항변을 인정하여 기업이 제품의 생산·판매시점에서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숨겨진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적절한 사고억제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디자인결함과 마찬가지로 경고결함의 인정도 위험/효용의 비교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제품위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고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고결함에 대한 책임부과의 논거이다. 그러나 경고결함이 객관적·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지 않는다면, 위해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사고억제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채 기업들의 책임비용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에게 제품경고의 확대유인을 제공하여 정보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이는 경고의 실효성을 낮추어 오히려 제품의 전체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안전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설정한 품질·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기준의 위반을 디자인결함의 증거로 채택하고, 기준충족시에는 결함이 없다고 추정하되 원고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규제가 구체적으로 경고용어들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명시적 경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예: 의약품, 주류, 담배 등)에는 규제의 준수를 항변으로 인정하여 법원이 전면적인 위험/효용(risk/ben-

efit)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을 경감하고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 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품표시를 승인할 뿐 표준화된 구체적 경고용어와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고표시의 내용과 방식이 제품에 따라 다른 경우나 경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경고의 형태와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결함의 결정에 있어 규제의 준수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항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損害賠償의 上限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액과 위험수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완전한 보상을 지향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EC 지침은 손해배상상한의 설정 여부를 개별 국가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자료지급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실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배상판결액의 과다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손해배상한도의 설정은 두뇌손상, 마비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보상기능 및 보상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비용과 위험수준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사고억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副補償源 原則은 소비자에게 이중의 피해보상을 하여 사고방지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게 되는 의료보험이나 산재보상보험의 혜택만큼 결함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의 책임비용이 낮아져 기업의 안전제고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다.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는 위험분산이란 효과가 있기는 하나 각 기업의 위험감소노력에 대해 올바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자율적인 시장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강제보험은 동일 산업군에 단일화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자율시장은 사고다발 기업 및 제품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므로 더욱 효율적이다. 강제보험이나 無過失保險은 사고방지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지 못하므로 경제학적인 정당성이 없다.

라. 連帶 및 個別責任

연대 및 개별책임 원칙의 채택은 결함과 배상책임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연대책임은 지불능력이 우월한 대기업에게 불리하지만 제조기업 외에 유통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제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유인을 제공하며, 현재 지불능력을 갖춘 기업이 일단 피해액을 배상한 후 공동책임자간에 책임비율에 따라 추후 상호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억제의 공동유인도 상존한다.

마. 提訴期限 및 製品의 範圍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10년의 제소기한이 무난할 것이다. 제조물은 일반제조물 외에 전기와 가스, 부동산의 부품을 포함하고 중고품, 혈액, 臟器, 未加工 농산물 및 수렵물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연혁적으로 대량생산의 결과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임을 고려한다면, 그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량생산'되는 제품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대량으로 건설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자체에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건설업체의 과실은 명백해지고, 이에 대하여서는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은 건축에 필요한 부품의 구성체이므로 부품 중 어느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건물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부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시기와 사고발생은 오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건축시 발생한 것인지 관리소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12)]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하여 강력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 효용의 극미한 증가를 위한 과다한 자원의 사용에 다름아니며, 특히 다른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도 부동산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소비자보호를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

12) 우리나라에서는 대량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고발생시 민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일일이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거래비용·측정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原下都給者에게 책임배분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 缺陷의 存在 및 因果關係의 推定

원고가 제품의 생산기술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여 제품결함 및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推定規定을 둠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질 것이나, 제조자가 자기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는 제조물책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인과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정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과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위험통제의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매우 불완전한 사회보험의 기능만을 수행할 것이다.

판단이 쉬운 제조결함의 증명을 위해서는 추정조항이 필요치 않다.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은 그 입증 및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정조항과 결합되었을 때 제조업체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부담이 폭증하였던 원인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 특히 경고결함과 결함의 추정이 함께 인정되면 제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두 경고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비하여 제조물의 안내서에 모든 사고발생 가능상황에 대비한 경고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경고 및 디자인결함은 그 위험과 효용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극히 어려우며, 이 때문에 개발위험항변을 통해 실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현대의 제조물책임 정

신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법원에서는 결함의 추정 대신 피해자 측의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결함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유보시키되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자인결함과 경고결함에 대한 판단이 명확지 않을 때 이를 추정원칙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판단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안전규정 및 규제가 소비자의 안전 및 기업의 안전제고 유인제공을 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를 제조자에게 책임지우게 되는 추정조항은 결함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사고억제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과 동떨어지게 되므로 추정조항은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사. 立法時期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한명 또는 법률이 정한 단체가 대표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각 소비자에게는 소액이지만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사건의 배상추구유인이 창조되고 제조물책임법이 보완·강화될 것이다. 소비자보호 증진을 위하여 집단소송법과 리콜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조만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입법후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關聯機關 및 制度의 整備

가. 危害情報蒐集 및 原因糾明센터

각 기관별 위해정보 수집활동이 미약하고 정보의 분석·평가기

〈표 6〉 우리나라의 危害情報制度

구 분	주관부처
식중독신고제도	보건사회부
의약품부작용신고제도	보건사회부
가스사고신고제도	상공자원부
화재발생신고제도	내무부
생활용품 위해·위험정보제도	공업진흥청
소비자위해정보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능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전체의 위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표 6 참조). 식중독과 의약품부작용신고제도는 보건사회부, 소비자위해정보는 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인진단에 협조가 되지 않아 사고방지 및 대책마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제조자의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에 기인한 것인지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판명되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서 제조물책임의 사고억제기능 수행이 용이해지므로, 이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망라하여 객관적인 원인규명센터를 전국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나. 業界 및 政府의 安全規制整備

제조물책임법은 사후적인 배상을 통한 간접적인 사고억제 유인책이므로 개개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미약하여 청구유인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막대해서 가해자의 배상능력 부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이 감시·통제의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효과 및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채택되었으나 모든 규제는 비용/효과분석에 의거한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FDA는 엄격한 신약검증으로 신뢰받지만 과다한 사전검사규제로 신약당 2,000만달러(160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며, 외국에서는 이미 소개된 신약이 FDA인증을 위해 수년을 소모함으로써 신약개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FDA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약검증체계의 비용/효과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생명에 대한 비용추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다. 裁判外 紛爭處理機構

법률서비스 이용 편이성이 낮은 일본에서는 재판외 분쟁처리기구가 발달하였다. 기관의 중재가 소송보다 빠르고 低費用이며 少金額의 청구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정에서 보장되는 제소 및 변호과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청구의 용이성으로 청구건수가 늘어나 전체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는 11개의 제품별 PL(Product Liability) 센터가 있어 소비자와 제조자간의 중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일반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한 SG마크(Safety Goods), 주택부품에 대한 BL마크(Better Living), 폭죽에 대한 SF마크(Safety Fireworks), 완구에 대한 ST마크(Safey Toy) 등의 안전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사고발생시 배상이행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법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이용 편이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단기적인 보조체계로서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는 활용이 가능하나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듯하다.

뉴질랜드의 무과실보상체계처럼 사고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배상 시스템도 한가지 대안이긴 하지만 사고책임소재와 배상의무의 無聯關으로 사고억제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라. 리콜(Recall)制度

사전규제의 하나인 리콜제도는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회수·수리·교환하는 제도로서, 제조물책임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후에 배상을 원활히 해주는 제도이지만 리콜제도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리콜제도는 제품가치가 높은 경우(예: 자동차)에는 회수율이 높지만, 제품의 가치가 회수비용보다 낮은 경우(예: 장난감)에는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에서도 소비제품의 평균회수율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부적절한 리콜은 남아 있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축소시켜 반대로 위험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리콜제도가 사고방지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 회수·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크다는 비난이 있다. 美 소비제품안전협회의 48건의 리콜로 인한 관련기업 株價의 평균하락폭은 6.9%, 절대손실액은 70억달러로 나타났으며, FDA의 의약품 리콜은 株價의 6% 손실을 초래하고 NHTSA에 의한 자동차 리콜은 1.4%의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리콜비용은 제품가격상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수행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사고 발생후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리콜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리콜을 활성화하므로 소비자안전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Ⅵ. 結　　論

제조자가 소비자보다 제품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제품의 성질을 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엄격책임원칙이 과실책임보다 사고억제·감소에 있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엄격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는 결함제품이 초래하는 사고의 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 위험제품의 생산·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세계경제통합에 대응하여 기업책임법제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安全提高誘因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사전적 안전규제는 기업이 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추가적인 안전투자의 유인을 갖기 어려우나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안전의 향상에 노력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의 소비자와 대등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OECD에의 가입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의 충분한 홍보 및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康昌景·崔秉祿·朴熙主,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宋泰會, 「제조물책임원칙의 법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製造物責任의 立法化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제2주제,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4년 7월, pp. 49~76.

申光湜・具本天, 「美國・日本의 製造物 責任法 및 企業責任法制의 施行現況 調査」, KDI出張報告 96-01, 韓國開發硏究院, 1996. 7.

———, 『製造物 責任法 導入의 經濟的 效果分析』, 消費者保護院 硏究用役報告書, 韓國開發硏究院, 1996. 6.

梁峻模, 「製造物責任法 導入을 위한 政策方向」, 『産業硏究』, 제2집 제1호, 1996.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5.

崔秉祿, 「제조물책임법 시안」,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제2주제, 1996.

韓國消費者保護院, 『消費者危害實態 및 安全意識調査』, 1993. 3/1994. 3/1995. 3.

日本 經濟企劃廳, 「製造物責任制度導入の影響: 歐洲調査報告」,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 第1科, 1993. 5.

濱本哲治, 『新PL法のしくみと對策』, 日本實業出版社, 1994.

Brown, John P.,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Journal of Legal Studies,* 1973.

———, "Product Liability: The Case of an Asset with Random Lif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No. 1, 1974, pp. 149~161.

Burrows, Paul, "Idealised Negligence, Strict Liability and De-

terrenc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 1982, pp. 165~172.

Conference Board, *Product Liability: The Corporate Response,* Report #893, New York: The Conference Board, 1987.

Craig, Andrew,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in General Aviation,"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12,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Graham, John D., "Product Liability and Motor Vehicle Safety,"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4,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Green, Jerry, "On the Optimal Structure of Liability Laws," *Bell Journal of Economics,* 553, 1976.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1995.

Oi, W.Y., "The Economics of Product Safety,"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4, Spring 1973.

———, "The Economics of Product Safety: A Rejoinder,"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5, Autumn 1974, pp. 689~695.

Ordover, Janusz A., "Products Liability in Markets with Heterogeneous Consumer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No. 8, June 1979, pp. 505~525.

Polinsky, A. M.,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Priest, G. L., "The Modern Expansion of Tort Liability: Its Source, Its Effect, and Its Reform," *Journal of Econ-*

omic Perspective, 1990.

Shapiro, Carl, "Symposium on the Economics of Lia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3, Summer 1991, pp. 3~10.

Shavell, Steven,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9, 1980, pp. 1~25.

———, "On Liability and Insurance," *Bell Journal of Economics,* 120, 1982.

Swazey, Judith P., "Prescription Drug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8,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Viscusi, W.K., "The Determinants of the Disposition of Product Liability Claims and Compensation for Bodily Injury," *Journal of Legal Studies,* 15(2), 1986, pp. 321~346.

———, *Reforming Product Liabi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1991.

———and Michael J. Moore, "An Industrial Profile of the Links between Product Liability and Innovation," Peter Huber and Robert Litan(eds.), *The Liability Maze,* Ch. 8,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Yandle, Bruce, "Products Liability, Risk, and Economic Efficiency,"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1, 1974, pp. 699~709.

論 評

金 一 仲
(崇實大學校)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의 확대에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소의 비용으로 제조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사고감소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소비자 주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OECD의 가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비자 제품의 질에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자들이 국내외시장에서 직면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동안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산발적인 논의들이 다분히 비경제적 논리 위에서 이루어져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1] 이 논문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에 기본을 두고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에 관해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오로지 경제논리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여러 곳에서 원숙하게 구사된 저자들의 논리 전개는 출간과 함께 정책입안가,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제조물책임의 학제간 논의를 크게 자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 예컨대, 현존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의 제1조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으로서 신속한 피해 구제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저자들의 주장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efficient management of risks)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구성상 논리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본목적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전제한 후, 저자들은 Ⅳ장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특정 제도의 도입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들을 개관하는 논문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모든 부문의 효과를 나열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 경제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체의 맥을 희석시키는 식의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요컨대, Ⅴ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으나) 설사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전체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정책입안가를 포함한 관련 이익집단들이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논의를 좀더 중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끌자는 저자들의 의도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논문임에 틀림없으나 저자들의 모든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본고를 읽으면서 느낀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는 본고에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에서, 나머지는 후속 연구자들이 향후 비중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로서 이해되었으면 한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에서 채택될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의 기본원칙을 더욱 명확히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향후 입법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Ⅱ장에서 저자들은 엄격책임주의의 경제적 속성을 소개하고 있다. 사고비용의 내부화와 보험자 역할에 있어서 기업이 소비자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과실책임(negligence)보다 엄격책임이 우월하다는 논리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미국에서 주장된 바 있으며, 미국 제조물책임원리를 과실에서 엄격책임으로, 그리고 급기야 절

대책임(absolute liability)으로 이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이 갖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엄격책임하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Epstein, Priest, Schwartz 등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의 두가지 기본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첫번째 기본원칙으로서 공개적(open)이고 명백한(obvious) 결함은 책임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이 법정신에 깔린 의도는 제조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결함을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두지 말고 공개시키자는 데 있다. 제조자가 명백한 결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윤의 감소분보다 클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 쪽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므로 주의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상사용(normal use)의 조건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구매후 원래 의도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이 조건은 소비자측의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사고는 제조자 및 소비자의 주의의무에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사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에게 최

2)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학계 및 법조계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몇가지 주장들로 인해 계약법의 쇠퇴는 물론 과도한 엄격책임이 도입되어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시작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보상 때문에 발생하는 제조자의 손실은 보험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 ② 위험을 배분함에 있어서 민간끼리의 계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③ 소비자 계층은 위험에 대해 무지하다. ④ 명성 때문에 기업이 제품안전을 제고시킨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⑤ 좋은 상품과 불량상품을 구별하는 법을 만드는 데 법관과 배심원은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3) 흥미롭게도 저자들은 V장 2절 가.에서 기존기술항변을 논하며 '숨겨진 위험(hidden risk)'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문헌에서 엄격책임을 논할 때의 숨겨진 위험이란 구매 당시 '소비자'가 몰랐던 위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따라서 기존기술항변에는 숨겨진 위험보다는 '알려지지 않은(unknown) 위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소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자는 의도이다.

둘째, 저자들은 Ⅱ장 2절의 책임원칙의 경제분석에서 과실책임·엄격책임·기여과실 등에 대한 경제적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예로서 핵심 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이 좀더 명료하게 표현되었으면 독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본다. 저자들은 '소비자 정보불완전'이라는 조건과 '소비자 주의태만'이라는 두가지 조건하에서 각 책임원리의 경제효율성을 논하고 있다. 즉 전자에 해당하면 엄격책임이 효율적이고, 후자까지 해당하면 기여과실 항변인정의 엄격책임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대표적으로 첫째, 전자만 해당할 때 기여과실 항변인정의 엄격책임은 어떠한가, 둘째 저자들의 표현대로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 평가하는데 주의의무는 잘 지킬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등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본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이 일방적(unilateral)인가 아니면 쌍방적(bilateral)인가라는 구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라면 기여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만약 쌍방적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정보가 완전하다면 소위 미국 보통법 체계에서 논의되는 여섯가지 책임원리는 모두 경제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명제를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예컨대, 기여과실을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형평성만을 변화시킬 뿐 효율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4] 반면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책임원리가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다.[5]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쌍방주의 의

4) 같은 맥락에서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 역시 보험의 기능은 제고시키나 경제효율성에는 차이가 없다.

5) '소비자가 피해액을 과소 평가하는데 주의의무는 잘 지킬 때'라는 표현이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면 당연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할 것이다. 바꿔 표현하면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무, 불완전정보) 많은 학자들이 전술된 '두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엄격책임원칙'을 주로 하되, 보조적으로 '과실상계'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6)]

본고에 대해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자들이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서 우리와 미국의 법절차 혹은 소송제도와의 차이를 판단근거로 삼는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거래비용이 높으므로 남소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송제도보다는 일단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자체에 우선적으로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들도 Ⅴ장에서 뚜렷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에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미국의 소송제도보다는 추정조항, 디자인결함, 경고결함 등 때문이었다. 물론 소송제도의 차이점이 갖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논문을 읽는 정책입안가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한국소송제도상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섣불리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직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고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조물책임원리와 행정규제와의 연계성 또는 조합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반드시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Ⅴ장에서 매우 간략히 언급되었기는 하나 저자들도 이 주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행정 규제와는 상당한 연계성이 존재한다. 이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센티브가 두가지 제도에 의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면 구태여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엄격책임원리만으로 효율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6) 전자는 불완전 정보를 극복하고 쌍방주의 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보험기능을 추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 요컨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두가지 수단을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정책입안가에게 관건으로 남는다. 만약 이 두 메커니즘의 연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다면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일대 혼란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이 분야 선도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안전기준 설정능력이 전반적으로 모자라므로 제조물책임법은 특히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에 초점을 두고 또 거기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또 최근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자인결함(design defect)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담당시켜 양립하는 두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험경고(hazard warning)의 차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전개된다. 디자인 결함에서처럼 최적 경고수준 및 경고 형태에 관해서는 법원보다 규제기관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크다. 물론 그 비교우위의 크기는 무엇보다도 제조자와 규제기관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의 양 및 연속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준수가 사고발생의 면책사유로 항상 인정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칙에는 어느 정도 가변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7)]

제조물책임법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밖에도 해결

7) 먼저 특정 규제기관에서 엄격한 분석을 한 후 경고문 자체를 정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제를 준수한 제조자는 경고의무를 충족했다는 의미에서의 결함으로부터는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담배·식료첨가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준수가 면책사유까지도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직접 정해주기보다는 기준(standards) 또는 지침(guidelines)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 규제가 이런 형태의 예이다. 농약의 종류가 제품 및 기업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경고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면책사유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저자들에 의해서도 적절하게 언급된 배상의 범위, 분쟁조정체계의 확충, 보험제도의 정립, 외국 기준과의 조화 등 중요 과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무쪼록 저자들의 본 논문이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가속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金 仁 奎

(本院 硏究委員)

自律開放時代를 선언한 지 10여년이 훨씬 지났지만,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더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정책기조는 아직도 開發年代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모든 경제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에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소비자후생이 모든 경제행위의 궁극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자는 구호는 과거 개발연대에는 아마 타당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이러한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申光湜·具本天 박사의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 연구가 법제정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사고감소 및 적절한 피해보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나친 소비자보호는 생산자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단순한 소비자보호가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연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제Ⅲ장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은 OECD 국가들의 제조물책임

법제 도입·변경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주요 사안별로 잘 정리해 놓았다. 제Ⅳ장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역시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주요 사안별로 산뜻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한 본 논평자의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연구는 두 사람 이상의 공저자가 논문을 나누어 쓸 때 나타나기 쉬운 단원간의 연계성 문제가 발견된다. 둘째, 제Ⅱ장 "제조물책임의 논거와 경제분석"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의 하나인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문제를, 그것을 채택한 미국의 주나 나라가 극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단원간의 연계성 문제부터 지적하면, 제Ⅱ장과 제Ⅳ장은 제조물책임법의 경제분석 및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느낌을 준다. 그리고 제Ⅴ장 제1절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은 제Ⅰ장 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제Ⅴ장 제1절로 제Ⅰ장을 대체하는 것이 독자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제Ⅱ장 제2절 "책임원칙의 경제분석"을 설명함에 있어, 기여과실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의 책임원칙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면에서도 더 좋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이슈까지 자연스럽게 도입·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평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논거는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책임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법적 주의의무인 기여과실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제받은 측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나타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책임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책임원리를 비교과실이라 하며, 여기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1985년 *Journal of Legal Studies*에 실린 D. Haddock and C. Curren의 "An Economic Theory of Comparative Negligence"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消費者物價 變動의 分布와 政策的 含意

柳 潤 河(本院 研究委員)
成 明 基(本院 主任研究員)

◇要　約◇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指數 편제를 위해 調査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價格變動分布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含意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얻어진 價格變動 분포의 일반적 특성들은 첫째, 價格變動의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0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긴 막대를 갖고 있다. 즉 대부분 품목의 가격변동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체평균을 끌어올리는 품목은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外食費, 家事서비스, 被服·신발서비스, 理美容 등과 같이 人件費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果實, 어개류, 菜蔬·海草, 乳卵, 肉類 등 農畜水産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셋째, 인플레와 가격변동 분포의 分散 및 歪度는 陽의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즉 인플레가 진행될 때 相對價格體系의 심한 교란이 동반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에서 얻은 결과들은 가격변동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것, 즉 價格變動에 메뉴費用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에 메뉴費用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 또는 추구되고 있는 '제로인플레'운동이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뉴費用의 절감은 물론 인플레에 수반되는 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I. 序 論

物價는 어떻게 오르는 것일까? 1995년 3월중에 消費者物價는 전월에 비해 1.4% 上昇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990년 기준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의 산정에는 470개 品目의 價格이 포함되어 있는데 3월중 消費者物價가 1.4% 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品目의 價格이 동일하게 1.4%씩 오르면 물론 전체 物價는 1.4% 오를 것이다. 그러나 모든 個別品目의 價格이 1995년 3월 한달중에 정확히 1.4%씩 오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실제 그렇지도 않다. 3월 한달중 個別品目의 價格動向을 보면 221개 品目의 價格은 올랐고 57개 品目의 價格은 내렸으며 192개 品目의 價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내린 價格들의 전체 평균이 1.4%가 된 것이다.

모든 品目의 價格이 일시에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개별 品目 價格들의 分布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평균 상승률 1.4% 주위에 正規分布와 비슷한 모습으로 고르게 分布되어 있을까? 어느 한 곳에 밀집해 있을까, 또는 널리 퍼져 있을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을까?

Lucas를 비롯하여 合理的期待假說, 또는 보다 넓게는 古典派的 전통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은 物價變動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케인지안들은 物價 또는 賃金의 움직임이 경직적이며, 특히 賃金이나 物價가 오르기는 쉽지만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賃金·物價의 下方硬直性을 주장한다. 物價들의 움직임에 이러한 下方硬直性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硬直性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價格變動의 分布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價格變動 分布가 변화하는가? 특히 높은 율의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을 때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의 分布 사이에 어떤 규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분포의 우측 끝부분에 위치한 품목들, 즉 어느 한 시점에서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품목들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順位가 바뀌고 있는가?

최근 物價變動의 이같은 微視的 構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위에 든 의문들은 물론 그들 자체로서도 흥미있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분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다음의 두가지 추세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인플레의 害惡(the welfare costs of inflation)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인플레이론에 의하면 인플레는 예견된 것일 경우 通貨需要의 감소를 초래하고 대신 잦은 은행출입을 유발하는 등 소위 신발끈 비용(shoe leather cost)과 같은 社會的 費用을 증대시킨다. 반면 예견되지 않은 인플레는 所得分配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名目金額이 고정되어 있는 계약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는 것이다. 인플레의 이같은 福祉費用을 추산하려고 시도한 70년대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인플레 비용이 미미하다는 것, 특히 인플레를 낮추려고 할 경우 감내해야 될 景氣沈滯費用까지를 감안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우세하였다.[1)]

그러나 80년대 이후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인플레가 단순히 화폐수요의 감소나 소득분배악화뿐만이 아니고 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통하여 資源分配에 심대한 왜곡을 초래하고 따라서 경제전반

1) 인플레 해악에 비하여 인플레 收束費用이 더 크므로 인플레율을 낮추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를 용인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서는 Tobin(1972, 1980) 참조.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Fischer and Summers(1988) 참조.

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견해가 점점 더 광범한 지지를 받아가고 있다. 이같은 인플레의 상대가격 攪亂假說[2]은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예견되지 않은 인플레가 경제주체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이다. Lucas를 비롯한 合理的 期待論者들의 주장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플레과정에서 어느 특정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때 이것이 전체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그룹은 인플레가 진행될 때 메뉴費用 등으로 각 상품간 가격변동의 시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3] 이론적으로는 前者가 古典派的 전통에 따라 가격변동의 신축성을 가정하고 따라서 가격변동이 正規分布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주로 新케인지안들을 중심으로 價格變動의 硬直性을 가정하고 이로 인해 가격변동이 非正規分布의 모습을 취한다고 주장한다.[4]

이중 어느 입장을 취하든 인플레가 相對價格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價格變動의 실제 分布를 조사해 봄으로써 확인

2) 相對價格體系의 교란 외에 인플레가 資源配分에 악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경로로는 인플레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플레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율의 可變性(variability) 내지 不可測性(uncertainty or unpredictability)이 높아진다는 Okun(1971), Friedman(1977)의 가설이 그것인데 이를 경험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노력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의 서베이로는 Ball and Cecchetti(1990) 참조.

3) 최근의 인플레의 해악에 관한 논의를 조감해 보기 위해서는 Fischer and Modigliani(1978), Fischer(1981a, 1995), Driffil et al.(1990), Briault (1995) 참조. 또한 인플레가 상대가격체계를 교란시켜 단기적인 총공급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든다는 이같은 주장 외에,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經濟成長率 자체를 낮춘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성장과 인플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Jones and Manuelli(1993), Bruno and Easterly(1995), Barro(1995), Easterly(1996), Gregorio(1996) 참조.

4) 分布의 正規性 여부가 가격변동의 伸縮性 또는 硬直性 여부를 가리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같은 기준은 價格變動을 유발하는 실질쇼크(real shock)에 대하여 임의의 특수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가격변동의 사후적 분포도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는 선험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해 볼 수 있다. 즉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가격변동 분포의 分散이나 歪度가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해 봄으로써 그 교란효과의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립하는 두 理論의 현실적 타당성여부도 각 이론의 分布에 대한 함의를 실제 자료와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價格變動의 分布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두번째의 이유는 첫번째에 비하여 좀더 실질적인 데 있다. 앞서 인플레의 해악에 대한 견해가 최근 바뀌고 있다고 했거니와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추세는 인플레 收束을 위해 中央銀行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中央銀行으로 하여금 成長이나 雇傭, 또는 國際收支 등 경제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보다는 오직 通貨價値의 안정에 전념토록 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5] Kydland and Prescott(1977), Barro and Gordon(1983), Rogoff(1985) 등이 지적하고 있는바, 中央銀行이 물가안정 외에 成長이나 國際收支 등에도 관심을 쏟게 될 경우 통화정책에 소위 動態的 矛盾(dynamic inconsistency)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인플레율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6] 이같은 추세변화로 인해 중앙은행의 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앙은행이 종래와 같이 通貨量이나 利子率과 같은 中間目標(intermediate targets)를 설정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인플레율 목표자체를 정하고 이를 목표(inflation targeting)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7] 사실상 종래의 中間目標 관리방식은

5) 최근의 중앙은행 제도의 이같은 변화 추이에 관해서는 Fischer(1995) 참조.
6) 經濟政策의 動態的 矛盾에 관한 알기 쉬운 해설을 위해서는 拙稿(1989) 참조.
7) Infation targeting 정책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그 구체적인 운용실태에 관해서는 Haldane(1995), McCallum(1996) 참조.

中央銀行이 추구하는 목표가 多數였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 하나만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에 선택된 최선의 목표치"라는 어중간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통화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최적이 아닌(suboptimal) 결과가 초래될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中央銀行의 목표를 物價安定이라는 단일 목적에 둔다고 하면 통화량이나 기타의 중간목표 대신 目標인플레率 자체를 분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金融政策의 효과적인 집행방법이라고 하겠는데 최근의 인플레 타겟팅제도는 이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央銀行이 인플레率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물가상승 중에는 통화량과는 무관한 短期的 特殊要因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단기적 특수요인에 의한 물가상승까지 中央銀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따라서 실제물가 상승 중 中央銀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들어 물가변동의 미시적 구조나 분포에 관한 연구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필요성에 연유한다. 즉 物價變動構造의 분석을 통해서 물가상승 중 통화적 요인 또는 총수요적 요인에 의한 것－이를 흔히 '根源的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라고 한다－과 단기적 공급쇼크에 의한 것을 구분해 보자는 것이다.[8)]

8) 이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價格變動의 分布 중 左右극단을 잘라내는 방법이다. 이는 수요측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價格變動은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완만하게 변동하는 한편 공급측 사정에 의한 價格變動은 일시 大幅的인 변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우리나라 消費者物價指數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의 價格變動分布와 그 개략적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상 분포의 조사와 함께 특정분포가 갖는 이론적 함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이 논문에서 다 시도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消費者物價變動의 개략적인 分布와 그 특성만을 요약하는 데 그치고 연관된 명제들에 관한 보다 깊이있는 분석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消費者物價 41개 中·細分類의 價格變動分布를 살핀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앞장에서 나타난 몇가지 價格變動分布의 기본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어 Ⅳ장에서는 物價變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틀 속에서 관측된 분포를 再照明하기로 한다. 즉 왜 價格變動의 分布가 한쪽으로 기우는지, 價格의 變動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 또 시계열상 分散이나 歪度의 변동이 전체 인플레의 진행과 어떠한 相關關係를 갖는지 등을 몇가지 대립하는 이론모형의 틀 속에서 살핌으로써 어느 모형의 함의가 실제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는 요약과 결론을 정리한다.

Ⅱ. 價格變動의 分布

1. 資 料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指數를 이루는 41개의 中·細分類指數이다. 기간은 1975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로 잡았다. 원래 價格變動의 分布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개의 商品價格을 가중평균한 中分類나 細分類指數보다는 각각

의 個別 商品價格指數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지만 자료제약상 中·細分類指數를 이용하였다. 個別商品價格이 아니고 여러개의 價格을 종합평균한 중·세분류지수를 이용하게 되면 평균되는 과정에서 價格變動의 폭은 작아지고 빈도는 많아지게 되므로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정확한 價格策定行態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9] 반면 개별상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消費者物價指數의 기준연도가 바뀔 때마다 일부 調査對象品目이 바뀌게 되므로(특히 새로운 상품이 추가되는 경우) 價格系列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물론 현행 消費者物價指數의 기준연도가 1990년이므로 1990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한다면 전체 調査對象品目 470개의 개별계열을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이용가능한 자료의 포괄기간이 20년에서 최근 5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본고에서는 보다 많은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하여 세분류를 이용하는 쪽을 택하였다.[10]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Fischer(1982), Blejer(1983), Mizon et al.(1990), Lach and Tsiddon(1992) 등이 세분류지수를 이용하고 있고, Rae(1993)는 個別商品價格指數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결론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41개 中·細分類는 아래와 같다.

1. 穀類, 2. 肉類, 3. 乳卵, 4. 어개류, 5. 菜蔬·海草, 6. 果實, 7. 油脂·調味料, 8. 빵·과자, 9. 茶·飮料, 10. 酒類, 11. 外食, 12. 住居費, 13. 電氣料, 14. 水道料, 15. 燃料, 16. 一般家具, 17.

9) 個別價格指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개별상품가격의 행태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消費者物價 지수산정상 개별가격으로 취급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여러개의 商品價格을 조사하여 그것을 평균하거나 한개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調査對象處는 복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 사용된 자료 중 세분류 자체가 송두리째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다.

家庭用家具, 18. 廚房用品, 19. 家事雜貨消耗品, 20. 寢具 및 織物製品, 21. 家事서비스, 22. 外衣, 23. 스웨터·셔츠, 24. 內衣, 25. 織物·실, 26. 기타被服, 27. 신발, 28. 被服 및 신발서비스, 29. 醫藥品, 30. 保健醫療用品, 31. 保健醫療서비스, 32. 敎育, 33. 文房具, 34. 敎養·娛樂, 35. 交通, 36. 通信, 37. 理美容, 38. 裝身具, 39. 담배, 40. 宿泊料, 41. 手數料

분석의 기본자료로서는 中·細分類의 月指數를 이용하였다. 分期 또는 年間指數를 사용하지 않고 月間指數를 이용한 것은 價格變動의 週期나 價格變動幅의 산정에 정확을 기하는 데 이편이 더 정확하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分期나 年間資料를 이용할 경우에는 物價指數의 변동이 그 기간동안 발생한 價格變動의 평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의 週期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11] 본고에서는 따라서 消費者物價 41개 項目의 전월대비 변동률의 分布를 主 對象으로 하였으며 간간이 分期 또는 年間變動率의 分布도 참고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간평균지수의 변동률을 이용하지 않고 각월지수의 前分期 同月 또는 前年同月대비 변동률을 이용하여 分期 및 年間 價格變動이 평균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피하고자 하였다.[12]

2. 全體 標本의 分布

이제 價格變動의 개략적인 分布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11) 月指數의 경우에도 실제 조사는 매월 5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 평균이 月指數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平均現象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다.

12) 가격변동의 騰落이 심하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부정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價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前期 同月對比 변동률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은 全體 標本期間에 걸쳐 발생한 모든 個別品目의 價格變動 分布를 그린 것이다. 여러개의 기간을 하나의 標本集團으로 간주하여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每期間別 平均과 分散效果를 제거해 주어야 하므로 먼저 月別 平均과 分散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료를 標準化하였다. 즉 어느 한 상품항목 i의 t시점에서의 전기대비 價格變動率을 p_{it}라고 하고 각 시점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각각 $\overline{p_t}$, s_t라고 할 때 표준화된 價格變動率 z_{i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z_{it}=(p_{it}-\overline{p_t})/s_t$$

그래프는 이 z_{it}의 分布를 그린 것이다. 分布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우선 두가지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첫째, 價格變化의 分布가 특정값의 주변에 매우 밀집되어 있다. 전체 標本 중 평균의 좌우 標準偏差 1% 이내에 전체의 86.3%가 밀집되어 있고 標準偏差의 0.2% 이내에는 31.0%가 밀집되어 있다. 만일 이같은 價格變化 分布가 正規分布에서 추출된 것이었다면 標準偏差의 1% 이내에는 전체의 68.2%, 그리고 標準偏差의 0.2% 이내라면 15.8%만이 평균치 주위에 몰려 있었을 것이다. 參考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갯수만큼의 假標本을 標準正規分布로부터 생성시켜서 그 分布의 그래프를 함께 실어보았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正規分布인데 物價分布의 밀집정도가 정규분포에 비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평균보다 낮은 價格上昇을 기록한 品目數가 평균값보다 큰 폭의 價格上昇을 보인 品目數보다도 많다는 점이다. 즉 物價上昇率의 分布들이 평균의 좌측에 몰려 있으며 꼬리부분에서는 우측의 꼬리가 약간 더 길고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品目이 평균보다 낮은 價格變化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品目이 큰 폭의 價格上昇을 보임으로써 전체 평균값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림 1] 價格變動의 分布(全體標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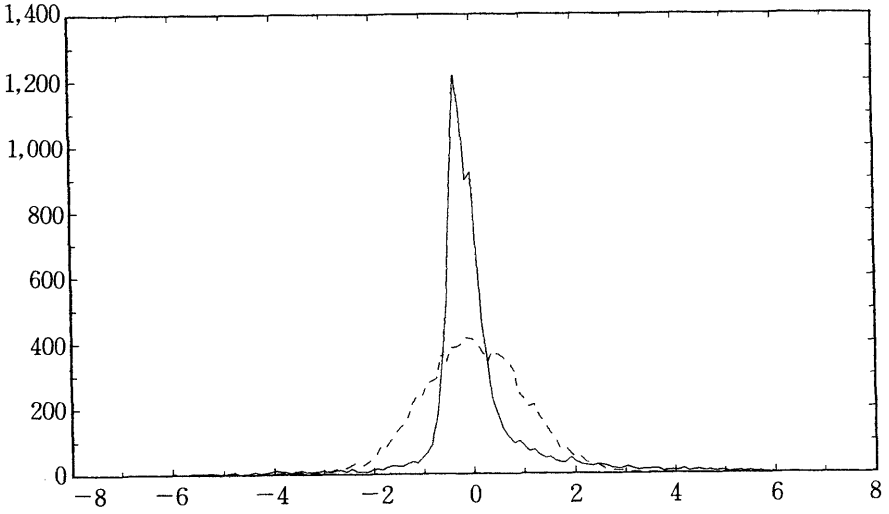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平均보다 낮은 上昇率을 보인 品目數가 전체의 64.3%를 보이고 있다.

價格變動의 分布가 왼쪽으로 기우는 것[13]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이를테면 아르헨티나(Blejer[1983]), 뉴질랜드(Rae[1993]), 영국(Mizon et al.[1990]), 미국(Ball and Mankiw[1995]) 등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14]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 메뉴費用(menu

13) 위와 같은 모습의 分布를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독자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같은 分布의 英語式 표현은 "skew to the right"가 되어 상기 표현과는 반대로 들리기도 한다. 아마도 英語式 표현은 分布의 꼬리가 어느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표현인 듯하다. 또는 分布의 非對稱 정도를 나타내는 歪度(skewness) 값이 위와 같은 경우에 陽數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직관적으로 빈도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포를 "왼쪽으로 기운 분포"로 표현하였다.

14) 分布가 왼쪽으로 기우는 것은 標本期間중의 평균적인 현상일 뿐 每期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외생적인 물가 쇼크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경우에는 分布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뒤에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cost)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分布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 전체 標本을 前·後半으로 나누어 그려 보았다(그림 2 참조). 구체적으로 1975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의 월별자료를 1985년 6월을 전후하여 2개의 標本集團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分布를 그린 것인데 전후반의 分布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分布의 密集程度를 보면 전반부 표본에서는 標準偏差의 1% 이내에 전체의 86.0%가 몰려 있고 후반부 표본에서도 전체의 86.5%가 밀집해 있어 全體標本의 86.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15] 分布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표본의 前半期 分布에서 약간 심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평균보다 낮은 上昇率을 보인 品目數가 전반부 표본에서는 전

[그림 2] **價格變動의 分布**(上半 및 下半標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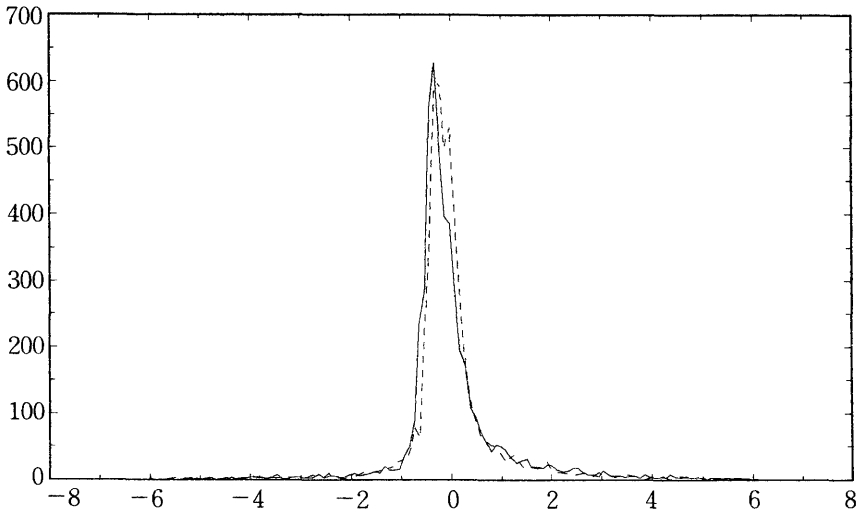

15) 이상의 密集比率은 正規分布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平均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分布가 왼편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最頻數(mode)를 기준으로 계산했더라면 이보다 더 높은 密集度를 보였을 것이다.

체의 65.9%, 그리고 후반부 표본에서는 62.8%로 나타나고 있다.

3. 各月에 있어서의 橫斷面分布

이제 價格變化의 月別 橫斷面分布를 보기로 하자. [그림 3]은 어느 특정 月에 있어서 41개 品目 價格變化率의 分布를 그린 것이다.[16] 지면관계상 총 242개월의 分布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分布들을 뽑아서 열거한 것이다. 먼저 첫번째 행의 두 그래프는 월중 인플레율[17]이 전기간중의 月平均增加率(0.7%)에 가까웠던 月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전형적인 分布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행은 物價가 상당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기간(月 2.0% 이상)에서, 그리고 세번째 행은 인플레율이 0에 머물러 있을 때, 마지막 행은 物價가 下落하고 있을 때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래프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특징들이 드러난다.

첫째, 分布上 0의 값에서 매우 긴 막대가 나타나고 있다. 즉 月中 價格變化가 없는 品目의 數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全體物價가 上昇하고 있을 때이든 下落하고 있을 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全體物價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 품목이 이같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격변동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價格變動이 신축적이어서 價格變化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0의 값에서 긴 막대가 나타나기보다는 正規分布와 같이 비교적 매끄러운 곡선형태의 分布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6) 이하는 標準化하지 않은 原資料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한 것이다.

17) 원래 消費者物價에서의 인플레율은 각 품목의 價格變動에 加重値를 곱하여 구한 加重平均을 주로 쓰는데 본고에서는 加重 없이 單純平均하여 인플레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加重할 경우 후술하는 Shapiro-Wilk의 正規分布檢定이 왜곡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Mizon et al.(1990)도 같은 이유에서 加重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3] 價格變動의 月別 橫斷面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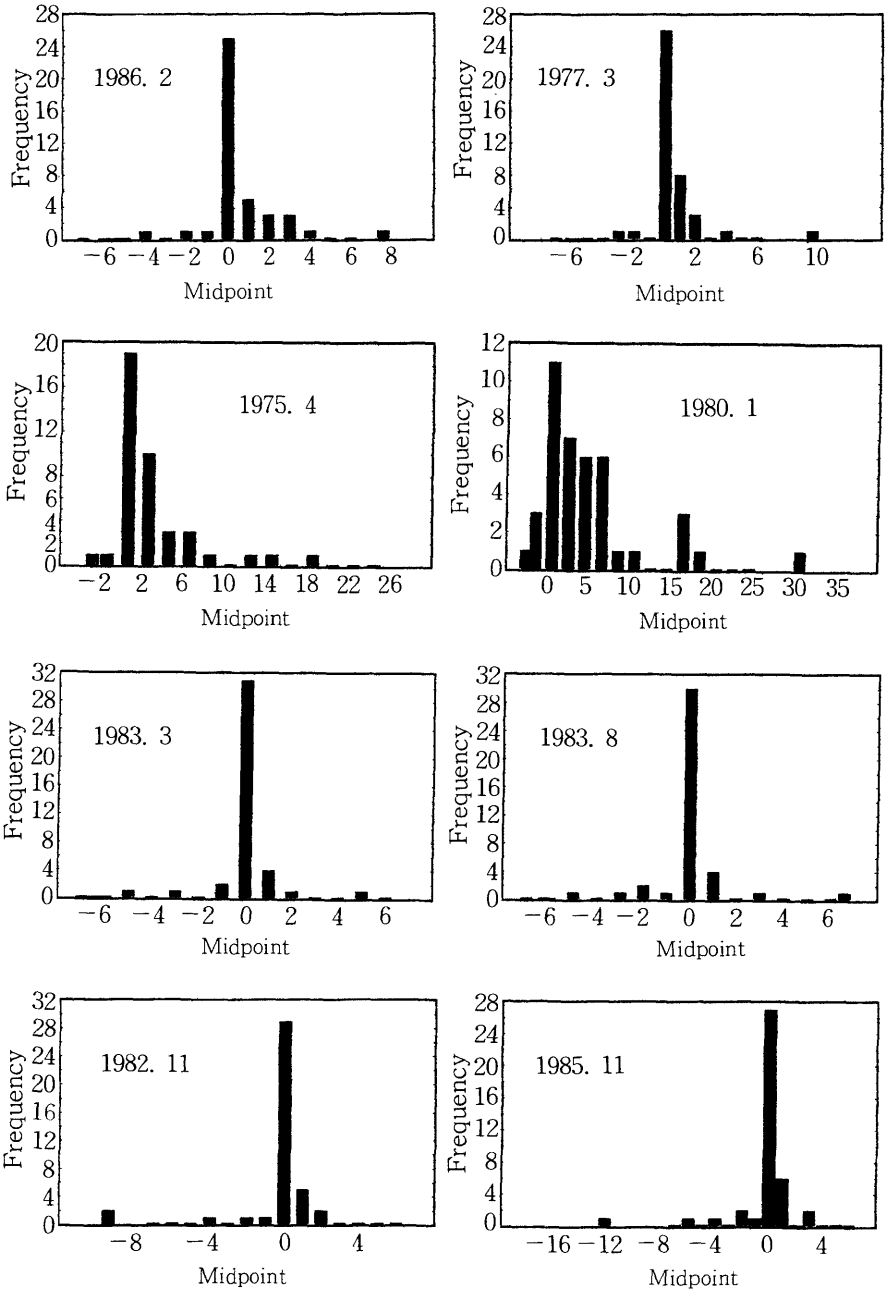

두번째 특징은 앞에서의 전체표본 分布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分布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왼쪽으로 기우는 分布를 보이는 것은 첫번째 행과 두번째 행에 불과하지만 전기간의 월별분포를 分布의 기운 방향에 따라 구분한다면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월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18] 그래프의 상하 행들을 비교해 보면 드러나듯이 分布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기간중 物價가 上昇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物價가 上昇한 월에는 대체로 分布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物價가 하락한 달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分布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物價가 상승한 달이 하락한 달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分布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평균주위에 밀집되어 있으며 0의 값에서 긴 막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다. 또 이같은 특성은 價格變化가 正規分布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Ⅲ. 統計的 檢定

1. 正規分布 檢定

위에서 그래프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hapiro-Wilk의 正規分布檢定을 실시해 보았다. 檢定結果는 지면관계상 그 일부만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인 檢定結果

18) 이는 뒤에 실제 계산된 歪度(skewness) 값이 대부분 양수라는 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를 보면 5% 有意水準에서 매월의 價格分布가 正規分布를 하지 않는다는 歸無假說을 기각하는 월이 전체 242개월 중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價格變化가 正規分布를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價格變化를 전월대비로 측정하지 않고 전년동월비, 즉 연간 變化率로 측정한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결과가 얻어지긴 하지만 正規分布假說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는 못된다. 즉 총 242개월 중 非正規分布假說을 기각하는 月이 60개로 늘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分布가 正規化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182개월은 여전히 正規分布를 부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표에 함께 정리한 月間 및 年間 價格變動率 分布의 歪度(skewness)나 尖度(kurtosis)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에서 分布의 第3 및 第4積率을 나타내는 歪度와 尖度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小規模標本 調整方式으로 산출하였다.

$$skewness = \frac{n}{(n-1)(n-2)} \sum_{j=1}^{n} (p_{jt} - \overline{p_t})^3 / s_t^3$$

$$Excess\ Kurtosis = \frac{n(n+1)}{(n-1)(n-2)(n-3)} \sum_{j=1}^{n} (p_{jt} - \overline{p_t})^4 / s_t^4 - \frac{3(n-1)^2}{(n-2)(n-3)}$$

윗식에서 n은 品目數를 의미하고, $\overline{p_t}$는 표본의 월평균 價格上昇率, 그리고 s_t는 표본의 標準偏差를 의미한다.

계산된 統計量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分布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70개월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172개월에서는 왼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尖度값도 3을 크게 초과하여 正規分布에 비해 평균 주위 그리고 꼬리부분에 많은 표본이 몰려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연간 價格變動率을 기초로 계산한 것에서도 결과는 비슷한데, 이를테면 오른쪽으로 기운 分布를 가지고 있는 월의 갯수는 46개에 불과하다. 차이가 있다면 연간 變化率을 이용한 경우에는 월간 변동률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歪度

〈표 1〉 價格變動의 平均, 標準偏差, 歪度, 尖度 및 Shapiro-Wilk 統計量

年月	月間 變動率					年間 變動率				
	平均	標準偏差	歪度	尖度	S-W	平均	標準偏差	歪度	尖度	S-W
1984.9	0.78	2.33	3.34	10.99	0.46	2.67	4.68	1.83	5.64	0.85
1984.10	-0.30	1.13	-2.39	6.56	0.64	2.49	5.27	1.57	5.43	0.83
1984.11	-0.11	1.27	-2.67	11.45	0.54	2.48	5.60	1.43	4.62	0.84
1984.12	0.20	2.12	0.40	8.96	0.64	2.25	6.33	1.61	4.19	0.83
1985.1	0.11	1.46	0.13	4.30	0.85	1.88	5.88	1.30	4.13	0.86
1985.2	0.57	1.38	2.55	6.33	0.60	1.79	6.50	1.24	6.12	0.78
1985.3	-0.02	1.68	-3.33	15.76	0.59	1.50	6.61	1.90	6.96	0.73
1985.4	0.06	1.08	-1.91	8.10	0.67	1.45	7.14	1.64	5.56	0.77
1985.5	0.28	0.88	0.37	2.92	0.72	1.56	5.64	2.38	9.14	0.79
1985.6	-0.02	0.80	-2.73	13.56	0.69	1.84	5.28	2.74	9.64	0.72
1985.7	-0.08	1.53	-1.81	13.01	0.57	1.78	5.38	2.71	10.81	0.76
1985.8	0.15	1.57	-3.65	21.73	0.54	1.61	4.14	1.17	2.33	0.87
1985.9	0.85	2.82	4.59	24.62	0.49	1.69	3.95	1.35	3.70	0.87
1985.10	0.35	1.93	2.85	15.98	0.61	2.33	3.82	1.66	3.28	0.84
1985.11	-0.44	3.04	-4.47	23.43	0.48	2.00	3.06	1.45	4.54	0.91
1985.12	0.24	0.55	2.01	3.36	0.70	2.04	3.58	0.82	3.08	0.93
1986.1	0.59	1.43	2.28	4.62	0.62	2.53	4.73	0.56	2.76	0.89
1986.2	0.65	1.80	2.19	9.53	0.75	2.61	5.32	0.07	2.86	0.90
1986.3	0.16	1.14	-0.64	6.49	0.77	2.78	5.04	0.76	2.09	0.91
1986.4	0.22	1.62	0.38	4.73	0.76	2.95	5.05	1.19	1.89	0.89
1986.5	0.71	2.76	3.23	14.24	0.58	3.37	6.01	1.17	2.36	0.88
1986.6	0.00	3.28	-2.96	11.63	0.57	3.39	6.49	0.85	5.11	0.86
1986.7	0.02	0.75	-0.89	6.84	0.71	3.50	7.00	0.07	6.52	0.83
1986.8	-0.04	0.55	-1.19	7.70	0.74	3.30	6.13	0.90	5.11	0.87
1986.9	0.43	1.42	3.22	11.70	0.56	2.87	6.10	0.65	2.88	0.94
1986.10	-0.37	2.29	-4.56	24.92	0.50	2.16	7.94	-1.49	7.72	0.84
1986.11	-0.04	1.29	-2.13	5.77	0.69	2.56	7.06	-0.68	4.62	0.86
1986.12	0.08	0.73	-1.36	10.79	0.72	2.40	7.28	-1.09	5.49	0.84

나 尖度값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타의 다른 品目의 價格들이 후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分布가 보다 正規分布에 가까운 모습으로 變化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된다.

2. Friedman Matched Sample 檢定

전체적으로 보아 價格變動의 分布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두꺼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인플레가 꼬리의 끝 부분에 分布되어 있는 少數品目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物價上昇을 주도하고 있는 品目들은 오른쪽 꼬리부분인데 이들의 價格上昇이 전체 平均物價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品目의 價格들은 平均物價上昇率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함께 밀집해 있는 것이다.

物價上昇이 이같이 일부 少數品目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 이들 物價上昇 主導 品目이 거의 항상 동일한 品目들인지, 아니면 개별 品目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균등하게 物價上昇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Friedman(1937)의 Matched Sample Test를 실시해 보았다. 檢定方法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기에 있어서 각 品目의 價格變化率을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 다음 이같은 순위가 매번 거의 독립적이라고 할 만큼 임의로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기간에서 순위가 높게 나타났던 항목이 다른 기간에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歸無假說은 순위가 매기 독립적이라는 것이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χ^2 分布를 하는 통계량이 675.2를 보여 자유도 40에서의 臨界値 63.7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고 있다. 즉 순위가 독립적이라

는 歸無假說이 기각되고 있어서 物價上昇을 주도하고 있는 品目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2〉는 상위 10위권에 들고 있는 物價上昇 主導品目과 하위 10위권에 속해 있는 品目을 나열한 것이다.

이를 보면 生産性增加가 부진하고 作況에 따라 공급과 價格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農畜水産物들(果實, 어개류, 菜蔬·海草, 乳卵, 肉類 등)과 人件費의 비중이 높은 品目들(外食,

〈표 2〉 價格變動 順位 最高·最下 品目

순위	전월비 증가율	전월비 증가율(절대값)
1	外食	菜蔬·海草
2	住居費	果實
3	廚房用品	乳卵
4	果實	油脂·調味料
5	어개類	肉類
6	家事서비스	어개類
7	被服·신발서비스	穀類
8	外衣	裝身具
9	油脂·調味料	外食
10	理美容	住居費
32	交通	保健醫療用品
33	裝身具	家庭用家具
34	燃料	交通
35	保健醫療서비스	스웨터·셔츠
36	家庭用家具	保健醫療서비스
37	水道料	水道料
38	手數料	通信
39	通信	담배
40	담배	手數料
41	電氣料	電氣料

家事서비스, 被服·신발서비스, 理美容)이 높은 순위를 보이면서 物價上昇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동률의 순위를 절대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낮은 순위를 보인 品目들을 보면 電氣料, 담배, 手數料, 通信, 水道料 등 대부분 공공요금적 성격을 띤 品目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순위비교에 기초하여 公共料金이 우리나라 消費者物價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뒤에 밝혀지듯이 이들 品目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가 일단 변하게 되면 매우 큰 폭으로 上昇하여 그 이전에 뒤져 있던 것을 일거에 회복하거나 그 이상 追越하고 있기 때문이다.

3. 價格變動의 頻度와 變動幅과의 관계

價格變動의 分布상 0의 값에서 높은 막대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品目의 價格이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한 價格水準에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4]의 상단은 각 品目價格의 平均持續期間(duration)을 나타낸 것이다. 많은 品目이 1~2개월의 지속기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品目은 반년 또는 일년 이상의 긴 지속기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확한 品目別 價格의 평균지속기간은 〈표 3〉 참조).

특히 價格이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品目을 보면 電氣料, 手數料, 담배, 通信, 水道料, 保健醫療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에서 價格變動의 순위상 하위에 머물러 있던 品目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에서 이들이 최하위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들 品目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따라서 그 기간동안 변동률이 0의 값을 가졌던데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價格의 平均持續期間 및 變動幅

품 목	지속기간 (월)	변동폭 (%)	품 목	지속기간 (월)	변동폭 (%)
1. 穀類	1.10	0.70	22. 外衣	1.46	1.08
2. 肉類	1.04	0.89	23. 스웨터・셔츠	2.42	1.60
3. 乳卵	1.03	0.63	24. 內衣	1.42	0.75
4. 어개류	1.04	1.18	25. 織物・실	1.68	0.91
5. 菜蔬・海草	1.01	0.97	26. 기타被服	1.43	0.64
6. 果實	1.03	0.99	27. 신발	1.57	0.83
7. 油脂・調味料	1.02	0.75	28. 被服 및 신발서비스	1.59	2.09
8. 빵・과자	1.27	0.68	29. 醫藥品	1.22	0.69
9. 茶・飮料	1.54	0.70	30. 保健醫療用品	1.94	1.10
10. 酒類	1.35	0.77	31. 保健醫療서비스	3.56	2.20
11. 外食	1.18	1.19	32. 敎育	1.82	1.80
12. 住居費	1.19	0.98	33. 文房具	1.51	0.85
13. 電氣料	13.44	2.99	34. 敎養・娛樂	1.09	0.55
14. 水道料	4.65	3.33	35. 交通	2.85	2.16
15. 燃料	2.14	1.69	36. 通信	5.38	3.39
16. 一般家具	1.74	0.80	37. 理美容	1.45	1.09
17. 家庭用家具	1.65	0.17	38. 裝身具	1.11	0.60
18. 廚房用品	1.19	0.89	39. 담배	7.33	4.04
19. 家事雜貨消耗品	1.29	0.61	40. 宿泊料	1.70	1.68
20. 寢具 및 織物製品	1.62	0.73	41. 手數料	8.07	6.23
21. 家事서비스	1.81	1.83			

이제 價格이 한번 변할 때 얼마나 큰 폭으로 변하는가, 즉 平均變動幅을 보기로 하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의 하단이다. 대부분의 品目이 평균 1~2% 내외에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品目은 특히 큰 폭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品目別 平均變動幅의 숫자는 〈표 3〉 참조). 그리고 이들 品目은 위에서 價格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 특히 길었던 品目과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水道料, 담배, 通信, 電氣

[그림 4] 品目別 價格의 平均持續期間 및 平均變動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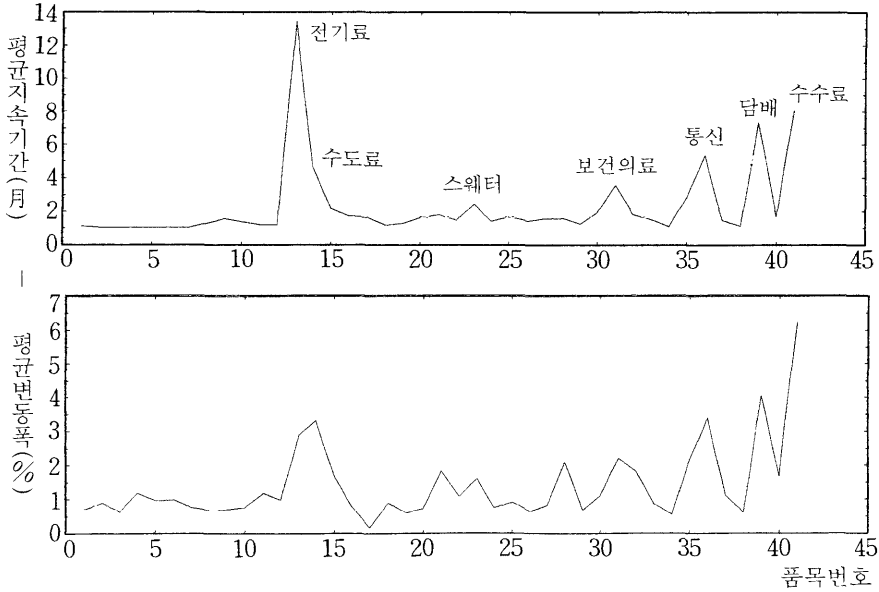

料 등이 매우 높은 平均變動幅을 보이고 있고 保健醫療서비스의 變動幅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乳卵, 어개류, 菜蔬·海草, 果實, 油脂·調味料 등 농수산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價格變動幅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앞에서 價格變動의 순위상 이미 상위를 기록했던 品目들이다. 즉 농수산품들은 價格이 자주 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變動幅이 커서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공공요금은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관계로 순위상 하위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變動幅면에서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價格의 平均持續期間과 變動幅과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보기 위해 양자간의 관계를 散布圖(scatter plot)로 그려보면 [그림 5]와 같이 兩者 사이에 매우 밀접한 陽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격변동의 頻度가 낮아서 한 價格水準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림 5] 價格의 平均持續期間과 平均變動幅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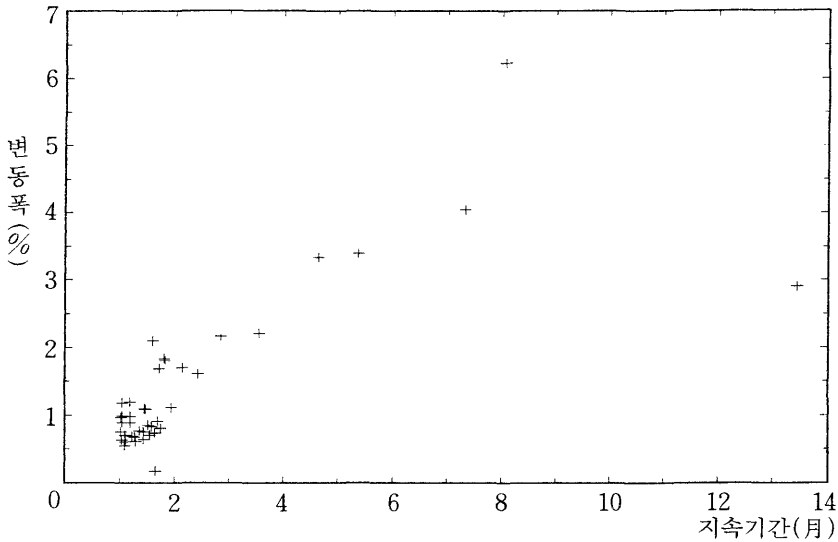

품목일수록 가격이 한번 변하면 큰 폭으로 변하며, 가격이 자주 변동하는 품목의 1회 變動幅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인플레율과 分布의 分散과의 관계

價格의 伸縮性을 가정하는 고전파적 세계에서 相對物價의 변동정도가 인플레의 정도와 연결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 즉 가격변동의 분포면에서 볼 때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그 평균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이 고전파적 결론이 된다.

그러나 실제 物價變動의 분포에서 보면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相對價格體系의 변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되고 있다(Vining and Elwertowski[1976], Parks [1978], Blejer[1983], Gerhaeusser[1988], Mizon et al.[1990], Lach and Tsiddon[1992], Rae[1993] 참조). 명목변수의 움직임

이 실물변수에 이같이 비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서는 메뉴費用이나 價格變動의 下方硬直性, 또는 인플레와 분산의 상관관계를 초래하는 제3의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같은 요인분석에 관한 고찰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우리나라 消費者物價 변동의 분포에 있어서 양자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플레와 함께 相對價格의 可變性이 증대된다는 일차적인 증거는 개별가격변동의 최대·최소값간의 차이가 인플레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은 양자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것이다(최대·최소값간의 차이를 *dif*로 표기하고 인플레를 *inf*로 표기).

$$dif = \underset{(17.28)}{9.224} + \underset{(9.13)}{4.759}\ inf, \qquad R^2 = 0.26, \qquad (\quad) \text{ 안은 } t\text{-값}$$

단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지만 개별가격의 변동폭이 인플레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最大·最小값간의 差뿐만이 아니고 전체 분포의 분산정도가 인플레율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면 [그림 6]과 같다. 인플레율을 수평축에, 그리고 표준편차를 수직축에 놓고 양자간의 散布圖를 그린 것인데 양자 사이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준편차는 *std*로 표기)

$$std = \underset{(18.84)}{1.332} + \underset{(15.56)}{1.073}\ inf, \qquad R^2 = 0.50$$

로서 決定係數의 크기로 보아 윗식보다도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分布의 분산이 커진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相對價格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그림 6] 인플레율과 價格變動分布의 標準偏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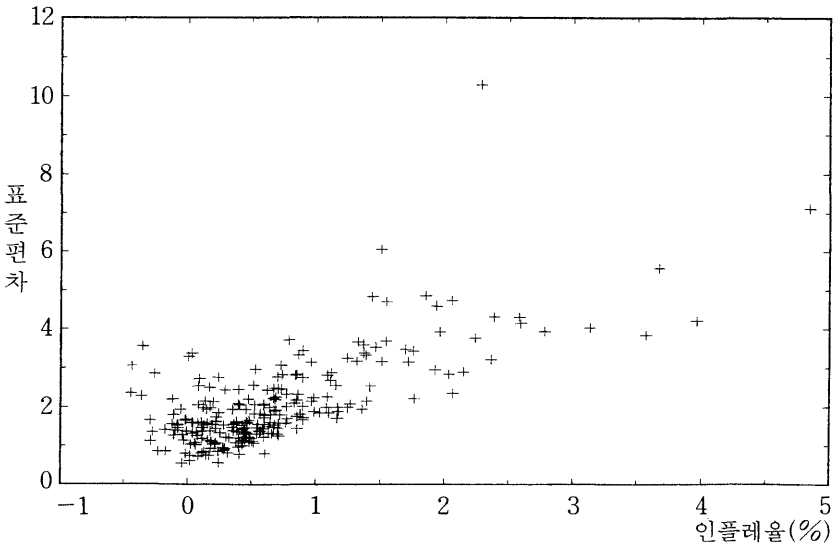

것을 알 수 있다.

5. 인플레율과 分布의 歪度와의 관계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價格變動分布의 분산이 커진다는 위의 결과는 다수품목의 가격이 평균주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일부 소수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分布의 오른쪽 상단 부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이 인플레를 주도하는 현상은 인플레과정에서 分布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인플레율이 높아질수록 분포의 分散이 커질 뿐 아니라 분포의 第3積率, 즉 歪度가 커진다는 것도 거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로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림 7]은 우리나라의 자료에도 이같은 현상이 관측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인플레율과 歪度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

[그림 7] 인플레율과 價格變動分布의 歪度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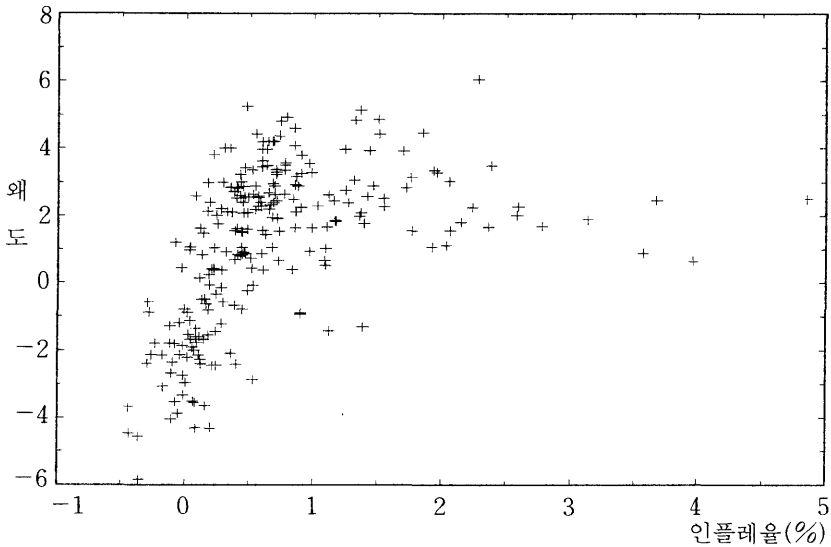

낸 것이다. 일견 歪度가 인플레와 陽의 相關關係를 갖는다는 위의 추측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歪度의 정도가 어느 수준의 인플레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선형과 2차함수의 형태로 각각 회귀해 보면 (歪度는 *skew*로 표기)

$$skew = 0.160 + 1.428\ inf, \qquad R^2 = 0.220$$
$$(0.902)\quad(8.223)$$

$$skew = -0.750 + 4.180\ inf - 0.954\ inf^2, \qquad R^2 = 0.438$$
$$(-4.01)\quad(12.99)\quad(-9.63)$$

가 되어 2차함수 형태를 가정한 두번째 식의 회귀결과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

Ⅳ. 物價變動分布의 理論的 含意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消費者物價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의 價格變動이 대부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分布의 꼬리도 正規分布에 비해 현저히 두껍게 되어 있고 또 특정부위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價格變動 分布의 이같은 非正規性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이같은 비정규성의 원인은 또 무엇일까? 본장에서는 주로 Rae(1993)가 뉴질랜드의 자료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던 몇가지 설명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價格變動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Rae는 뉴질랜드의 消費者物價指數에서 나타나고 있는 價格變動의 비정규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대립적인 이론모형을 제시한 다음 각각의 타당성을 자료에 입각하여 검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物價理論은 다음의 네가지이다. 그 첫째는 完全伸縮的 物價假說이다. 즉 모든 價格이 아무런 마찰이나 제약없이 자유롭게 變動되기 때문에 價格變動이 미세한 連續變動의 형태를 취하리라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가설은 價格變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價格에 어느 정도의 硬直性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중 하나인 두번째 가설은 價格變動이 경직적이되 그 경직성의 방향은 위 아래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對稱的 價格 硬直性이 있을 경우에는 價格變動의 分布상 0의 값에서 큰 막대가 형성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分布에 非對稱性이 발생하는 것은 分布가 이동할 때 0의 값에 밀집되어 있는 分布가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新케인지안的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시경제이론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소위 메뉴費用理論(menu cost theory)은 바로 이러한 上下方 對稱的 硬直性을 시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가설은 소위 下方硬直性 假說이다. 즉 物價가 경직적이긴 하지만 오를 때는 비교적 쉽게 오르는 반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저항을 보인다는 것이다. 네번째 가설은 物價가 공통적으로 어떤 경직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價格變動의 속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외생적 쇼크가 있을 때 각 상품의 價格이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폭의 價格調整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조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價格調整의 속도차는 價格變更으로부터 초래되는 각종 비용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급의 단기탄력성차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完全伸縮的 物價 假說

價格이 완전히 신축적이라는 이 가설은 Lucas(1973)나 Sargent and Wallace(1975)에 의해 도입된 소위 景氣變動의 貨幣的錯覺模型(monetary misconception theory of business cycles)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物價나 賃金은 언제나 신축적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物價의 硬直性을 가정하고 수요가 감퇴할 때 物價나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물량면에서의 조정이 일어난다는 케인지안의 景氣變動論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착각모형에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것은 物價가 경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별시장에서의 價格變動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 物價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즉 個別商品價格이 변할 때 그것이 실물적 요인을 반영하는 相對價格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반적

인 物價水準의 變化를 의미하는 絶對價格의 變化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이나 경기후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9]

위에서 살펴본 價格變動의 分布가 신축적 가격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가? 우선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20] 가격변동의 분포가 正規分布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격신축성 가설을 부정하는 일차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伸縮的 價格假說이 價格變動分布의 형태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는 사실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需給狀況의 변화 등 가격변경을 요하는 쇼크가 실제 가격에 즉각적이고 연속적으로 반영된다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격변동의 분포는 당초 쇼크의 분포형태를 그대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즉 신축적 가격가설이 분포의 형태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외생적 쇼크의 분포에 따라 최종분포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적 가격가설이 곧 正規分布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외생적 쇼크가 특정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正規分布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그것이다.[21] 둘째 이유로는 Lucas나 Curkierman(1984) 등 伸縮的 價格假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個別價格의 分布가 全體物價水準

19) 착각모형의 두번째 근간을 이루는 假說은 合理的期待假說이다. 즉 絶對物價水準에 대한 예측오차로부터 實質産出의 변화가 초래되지만 이같은 豫測誤差는 기대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체계를 갖지 않고 불규칙적(random)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부터 政策無力論(policy ineffectiveness)이 도출된다.

20) Mizon et al.(1990), Rae(1993) 등.

21) 그러나 Ball and Mankiw(1995)는 원래 쇼크의 분포가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같이 기운 分布가 메뉴費用의 가정하에서 인플레로 연결된다는 가설을 개진하고 있다.

주위에 正規分布를 하리라는 가정을 명시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그들에 의하면 어느 한 상품의 價格 p_{it}는 그 시점에서의 평균物價 p_t 주위에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分布되어 있다.

$$p_{it} = p_t + e_{it},$$

윗식에서 e_{it}는 평균값 0의 正規分布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물론 이같은 正規分布 가정은 그들의 이론전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분석의 편의상 도입된 것이라는 면이 짙다. 하지만 이같은 가정이 正規分布가 마치 신축적 物價假說의 논리적 귀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데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신축성 가설은 正規分布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설의 하나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관측된 價格變動의 분포가 正規分布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 가설 중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가설은 역시 伸縮的 物價假說이라는 의미에서 아래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價格變動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價格伸縮性 假說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앞의 〈표 1〉에 요약한 바와 같이 Shapiro-Wilk검정결과 正規分布假說을 강력히 기각하고 있다. 즉 分布가 과도하게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둘째, 價格變動의 分布가 0의 값에서 매우 긴 막대를 가지고 있다. 價格의 硬直性이 없이도 價格變動이 어느 특정값에서 긴 막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유독 0의 값에서 규칙적으로 긴 막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價格의 변동률이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가격변동에 硬直性이 있다는 일차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셋째, 價格變動

에 있어서 평균과 분산 사이에 강한 포지티브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도 價格變動이 신축적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價格이 伸縮的인 세계에 있어서 경제의 名目部門과 實質部門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이를 classical dichotom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名目部門에서는 인플레율이 결정되고 實物部門에서는 相對價格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서는 相對價格의 變動을 의미하는 價格變動分布의 分散과 平均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평균인플레와 價格變動의 分散 사이에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2. 價格 硬直性

硬直性理論은 價格을 바꾸는 데 비용이 든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소위 新케인지안 이론의 골간을 이루는 메뉴費用理論이 이것이다.[22] 이 이론에서 價格變動費用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한가지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카탈로그의 인쇄나 價格表의 변경 등 개별상품의 메뉴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다. 다른 한가지는 가격변경을 포함한 계약갱신 비용, 가격홍보 비용, 價格變動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 등 가격변경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반비용 모두를 의미한다.[23]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도입되는 가정은

22) 메뉴費用理論, 新케인지안, 價格硬直性 등에 관한 최근의 서베이 論文으로는 Gordon(1990), Mankiw(1990), Ball and Mankiw(1994b), Cassino(1995) 등을 참조할 것.

23) 넓은 의미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절대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뉴비용이론이 價格硬直性 가설의 미시경제학적 기초로서는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Mankiw(1985)는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미미한 규모의 메뉴비용이 경제전체로서는 매우 큰 경기변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가격변동의 비용이 가격의 변동폭과는 무관하게 변동횟수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물론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 등은 價格變動의 횟수는 물론 價格變動의 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문헌에서 메뉴비용이라고 할 때는 價格變動幅과는 무관하게 횟수에 의존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만일 메뉴비용이 價格變動의 폭과는 무관하고 한번 바꿀 때마다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는 성격을 띤다면 언제 가격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의 최적 價格變動解는 간단해진다. 즉 價格의 변경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을 초과할 때만 價格을 변경시킬 것이므로, 작은 價格變更要因이 발생하였을 때는 價格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價格變更의 이유가 충분이 누적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대폭 價格을 변경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24)]

이 메뉴비용이론이 價格變動의 分布에 대하여 시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함의는 어느 한 시점에서 價格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판매자의 수가 많으리라는 점이다. 즉 價格變動의 分布상 0의 값에서 긴 막대가 존재하리라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價格變動分布의 대부분이 이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價格變動分布의 分散이나 歪度에 대하여 메뉴비용이론이 시사하는 함의는 인플레율과 分散(또는 歪度)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을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하긴 힘들다. 즉 앞에서 인플레율과 分散이 陽의 相關

24) Scheshinski and Weiss(1983)의 (s,S)준칙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의 價格變更에 비용이 들 경우에는 현재 가격주위에 上限價格(S)과 下限價格(s)을 정해놓고 가격변동의 필요성이 이 밴드를 넘어설 때 가격을 변경시키는 것이 최적이 된다.

關係를 (歪度의 경우에는 일정 한계영역내에서) 갖는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같은 相關關係를 설명하는 데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인플레를 외생으로 간주하여 인플레가 가속될 때 이것이 分散이나 歪度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分散이나 歪度를 외생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分散이나 歪度의 증가가 인플레의 가속으로 연결되겠는가를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중 어느 방법을 택하든 인플레율과 분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歪度와 인플레의 相關關係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인플레를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플레율이 높아질 때 分散과 歪度가 어떠한 영향을 받겠는가를 보기로 하자. 價格變動의 分布를 중심으로 볼 때 인플레란 전체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격변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전체분포의 외견상 형태는 변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위치만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古典的 兩分論(classical dichotomy)에 해당한다. 반면 메뉴費用理論이 말하듯 가격변동에 경직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되 그중 일부는 움직이지 않고 전에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율이 上昇함에 따라 價格變動分布의 왼쪽꼬리 부분이 두껍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더 구체적으로, 인플레율이 0일 때에는 0의 값에서 긴 막대를 갖는 좌우대칭의 분포에서부터 출발해 보기로 하자. 이제 인플레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正規分布에 0의 값에서 긴 막대를 갖는 分布를 합성해 놓은 것과 같은 分布를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율이 높아짐에 따라 分布의 分散은 커지게 된다. 한편 歪度에 있어서는 분포의 왼쪽꼬리 부분이 두껍

게 남아 있게 되는(때로는 雙峰分布(bimodal distribution)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면서) 형태가 되어 歪度와 인플레율 사이에는 마이너스의 相關關係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인플레率이 아주 높아져서 0의 값과 分布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分散과 歪度는 다시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 1〉과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歪度에 관한 이같은 예측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간에서 인플레율이 포지티브한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 힘들다. 오히려 인플레율이 높을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인플레율이 마이너스값을 보일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전기간을 통틀어 볼 때에도 인플레율과 歪度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25]

다음으로 分布의 分散이나 歪度를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分散이나 歪度가 증가할 때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하는가를 보기로 하자.[26]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價格變化는 언제나 상대가격과 명목가격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相對價格 변화효과만을 보기 위해 분포의 歪度나 分散은 변하되 평균은 변하지 않는 분포를 가정하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8]은 평균은 항상 0에 고정되어 있지만 분포의 형태가 한번은 좌측으로 기울고 다른 한번은 우측으로 기운 외생적 가격쇼크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평균이 0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가격변동이 완전신축적이어서 가격쇼크가 그대

25)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價格不變更範圍(inaction range) 밖에 있는 품목의 가격은 모두 인플레율만큼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한다. 뒤의 Fischer假說에서 설명하듯이 만일 품목별로 메뉴費用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갖는 품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높은 비용을 갖는 품목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分布가 왼쪽으로 기울 수도 있을 것이다.

26) 이 부분은 주로 Ball and Mankiw(1995)의 설명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림 8] 歪度에 따른 相對價格變化의 인플레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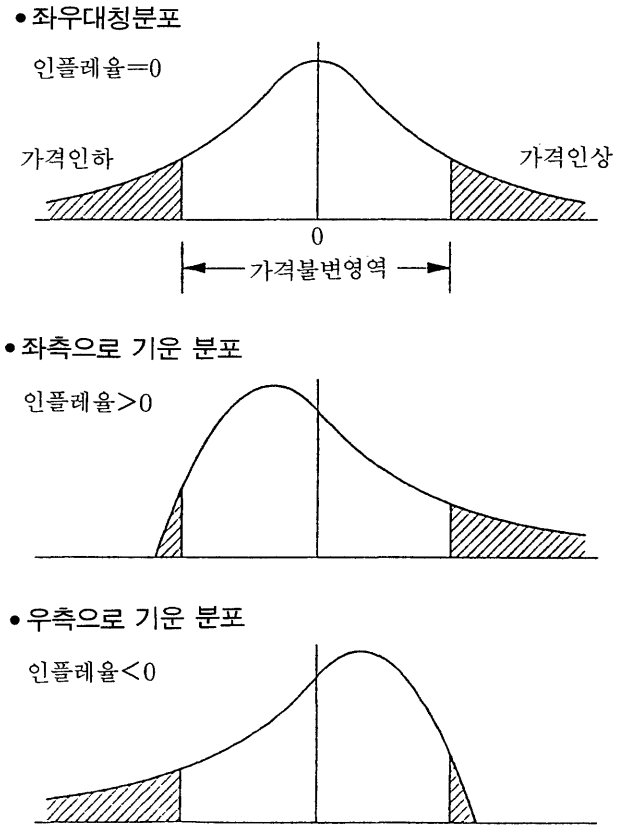

로 현실가격에 반영된다면 인플레율은 0이 된다. 이제 이곳에 메뉴費用을 도입하여 0의 값 좌우의 일정 영역내에 있는 품목의 가격은 변동되지 않고, 그 영역의 밖에 있는 품목의 가격들만이(그림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영역) 변동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만일 가격쇼크의 분포가 좌우대칭이라면 우측의 가격상승이 좌측의 가격하락과 정확히 상쇄되어 평균값은 다시 0이 된다. 반면 分布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측의 빗금 부분이 좌측의 빗금 부분을 압도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양수로 나타나게, 즉

[그림 9] 價格分布의 分散과 인플레

• 좌우대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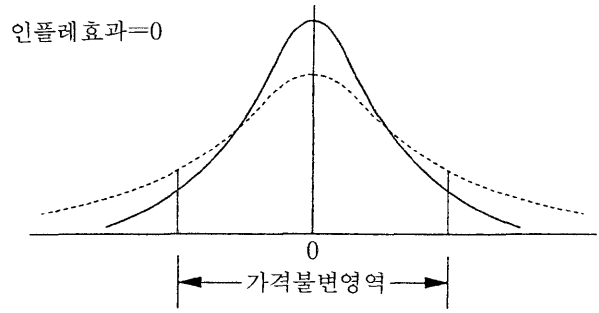

• 기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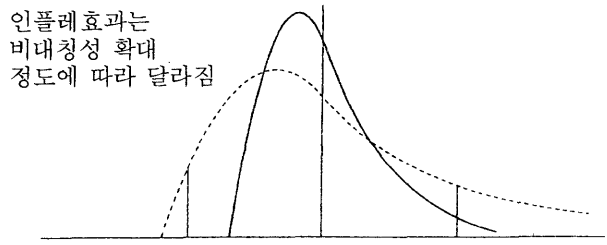

전체 물가는 오르게 된다.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分散이 증가하는 경우의 효과를 보기로 하자. [그림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격쇼크가 좌우대칭인 경우에 分散의 증가는 인플레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반면 分布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분산의 증가는 꼬리부분의 비대칭성을 확대시켜서 분포가 기운 방향에 따라 전체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같은 설명이 분포에 대하여 갖는 첫번째 시사점은 물가상승기에서는 좌측으로 기운 분포가, 그리고 물가하강기에는 우측으로 기운 분포가 얻어지리라는 것이고, 두번째 시사점은 주어진 歪度하에서 分散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율이 높아지리라는 점이다.

이제 이같은 시사점을 위에서 얻어진 價格變動分布와 비교해 보면 첫번째 시사점은 자료에 의해 비교적 충실하게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즉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물가가 떨어질 때에는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림 3]에 의해 쉽게 확인된다. 다만 [그림 7] 및 그에 후속하는 回歸方程式의 결과를 보면 인플레가 일정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歪度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는다. 물론 價格쇼크分布의 형태를 외생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이론에서는 分布의 分散이나 歪度는 물론 平均까지도 외생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高인플레-低歪度의 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우연히도 高인플레 物價쇼크가 모든 품목에 고르게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7]과 같이 꽤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일어난 다수의 예를 모두 우연에 돌린다는 것은 이 이론의 약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시사점에 대한 증거를 그래프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歪度를 불변으로 한 상태에서 분산과 인플레율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3차원의 그래프를 보아야 하나 위의 그래프는 모두 2차원의 단순비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回歸方程式을 통해 歪度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다음 인플레와 分散과의 관계를 볼 수는 있겠는데 아래 식은 이같은 관계를 회귀해 본 것이다.

$$inf = -0.284 + 0.414\ std + 0.097\ skew, \qquad R^2 = 0.58$$
$$(-4.35) \quad (14.43) \qquad (6.81)$$

이 식을 보면 歪度를 통제했을 때 인플레와 標準偏差간에 강한 양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보여 상기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歪度의 증가가 인플레를 가져온다는 이 명제는 인플레理論에서

소위 費用上昇(cost push)이론이나 供給쇼크(supply shock)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70년대와 80년대초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과 같이 일부품목의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전체 인플레가 초래되었다는 설명방법이 이것이다. 이 명제는 또한 공공요금 등 일부품목의 가격규제를 통하여 인플레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과연 석유가격의 폭등이 인플레를 유발하는가? 일부품목의 가격통제가 효과적인 인플레 수속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전형적인 해답[27]은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 인플레압력이 수용(accommodation)되지 않는 한 일부품목의 가격상승이 전체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 논지는 이렇다(Friedman[1977] 참조). 즉 한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종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고 따라서 다른 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의 감퇴가 통화량의 증가 등에 의해 보전되지 않는 한 수요감소를 통해 다른 재화가격의 하락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플레를 가격쇼크분포의 歪度에 연결시키는 위와 같은 해석은 인플레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현상에만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메뉴비용으로 인하여 전체분포의 얼마만큼이 잘려나가든 실제 구매력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잠재되어 있는 인플레압력이 아니고 실제 실현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즉 [그림 9]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평균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구매

27) 일부 학자들은 이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형적이라는 명명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70~8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이같은 통화수용론(monetary accommodation)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력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이것이 전체 거래액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평균은 다시 0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28]

3. 價格의 下方硬直性

이 가설은 價格의 硬直性을 가정한다는 면에서 위와 동일하나 다만 그 방향면에서 價格이 상방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하방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더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은 현실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만한 이론적 뒷받침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Fischer(1982)는 價格變動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해서는 스스로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Ball and Mankiw(1994a)가 下方硬直性에 관한 비교적 치밀한 논리적 추론에 입각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들의 논문이 下方硬直性에 관한 유일한 체계적 설명이 아닌가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이들의 설명을 중심으로 下方硬直性理論 및 그 경험적 함의를 보기로 한다.

Ball and Mankiw(1994a)는 下方硬直性의 이유를 趨勢인플레와 메뉴費用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29] 즉 趨勢인플레가 있을 때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결국 相對價格을 인하하는 효과를

28) Ball and Mankiw(1995)는 그들의 이론이 Friedman의 지적에 대한 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위와 같은 장단기효과를 오해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Ball and Mankiw도 그들의 이론이 단기적인 현상을 위한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Friedman의 설명을 반론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한 Friedman의 주장이 공급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9) 본고에서는 편의상 價格硬直性을 대칭적 경직성과 하방경직성으로 나누었지만 이들에 따르면 결국 메뉴費用이라는 한가지 항목하에서 두가지 현상이 모두 설명되는 셈이다.

갖게 되므로 굳이 메뉴費用을 지불하면서까지 名目價格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相對價格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대로 둘 경우 趨勢인플레로 인하여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더 자주 그리고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로 인해 명목가격이 오를 때는 신축적이지만 내릴 때는 경직적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價格變動의 분포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명제로부터 유도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어진 외생적 쇼크에 대하여 소망스러운 가격변경(desired price adjustment)의 폭은 쇼크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같은 절대값 크기의 쇼크에 대해서는 쇼크가 양수값을 취할 때 더 크다. 즉 일단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한다면 그동안 추세인플레하에서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고 고수해 오는데서 발생했던 상대가격의 자동하락분까지 반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상대가격 하락분만이 아니고 향후 예상되는 추세인플레만큼도 또한 가격인상에 반영을 해주어야 한다. 반대로 價格을 인하해야 할 쇼크, 즉 음수값의 쇼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격인하의 필요성 중 이미 일부가 추세인플레로 실현되었거나 또 앞으로 실현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망변경폭은 작다. 둘째, 쇼크의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옛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고(이를 價格固守領域(inaction range)이라고 해보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쇼크가 있을 때에 가격을 변경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價格固守領域의 兩 極端(아래 그림에서의 $[a, b]$)에서의 所望價格變動幅은 같다. 이는 양극단의 한계점에서 價格變更과 固守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유도되는 조건이다. 즉 가격을 변경시키거나 고수하거나 이익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이 한계점이 되는데, 이 점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메뉴비용이 가격의 인하시에나 인상시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림 10] Ball and Mankiw의 下方硬直性 假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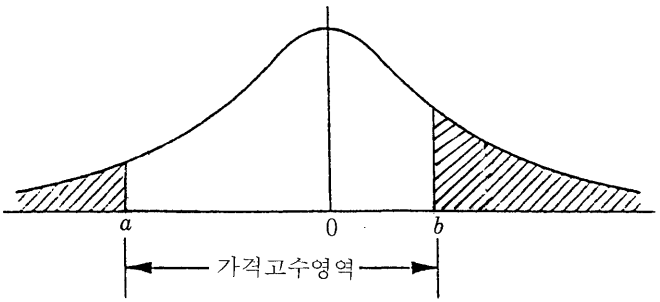

이상의 두가지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를 보자. 우선 가격변동을 필요로 하는 외생적 쇼크는 평균값 0을 갖는 單峰의 대칭적 분포 형태(이를테면 正規分布)를 취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첫번째 함의는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價格固守領域(inaction range)이 추세인플레가 양수일 때 0의 값에서 좌우대칭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즉 가격인상요인은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곧 가격변경으로 연결되는 반면 가격인하 요인은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價格의 下方硬直性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앞의 第1命題와 第2命題의 결합에서 도출된다. 즉 메뉴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양극단에서의 소망변동폭은 같아야 하는데, 쇼크가 양수일 때의 소망변경폭이 쇼크가 음수일 때보다 크므로 양자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격고수영역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가격변경이 이루어진 영역, 즉 價格固守領域 밖에서 이루어진 가격변동의 평균, 즉 가격변동폭의 절대값은 引上쪽이 引下쪽보다 커야 한다. 이는 앞서 가격고수영역 양극단에서의 소망변동폭이 같고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변동폭이 커지는데, 윗 그림에서와 같이 가격고수영역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 빗

금친 부분의 평균값이 왼쪽의 평균값보다 커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위의 두가지 함의 중에서 두번째 함의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진 자료에 의해 검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격변동폭의 절대값이 가격상승품목에서 가격하락품목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30]

가격변동의 方向에 따라 그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정해 보기로 하자. 추세인플레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다 살펴보기로 한다. 그 하나는 전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추세인플레가 양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가끔 물가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추세인플레기대치는 전기간을 통하여 내내 陽數값을 유지하고 있었으리라는 가정이다. 두번째 가정은 매기 실현된 인플레율을 그 기의 추세인플레로 간주하여 실제물가가 오른 경우에는 추세인플레도 양수였던 것으로, 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추세인플레가 음수였던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perfect foresight를 가정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이제 그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4〉는 위와 같은 가정하에 가격이 상승할 때의 평균변동폭과 하락할 때의 평균변동폭 절대값을 계산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Ball and Mankiw의 메뉴費用-趨勢인플레 假說이 성립하려면 양수의 추세인플레가 가정된 전기간과 물가상승기에서 가격하락품목의 평균변동폭이 상승품목의 평균변동폭보다 커야 하는데, 결과는 이 같은 이론적 기대와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30) 물론 추세인플레가 음수일 때, 즉 추세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반대가 된다. 이 모형은 가격의 상향변동과 하향변동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下方硬直性만에 대한 이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 하방경직성이 일어나는 것은 추세인플레가 양수일 때뿐이고, 추세인플레가 음수일 때는 상방경직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표 4〉 價格上昇品目과 下落品目간의 價格變動幅(절대값) 비교

전 기 간		물가상승기		물가하락기	
상승품목	하락품목	상승품목	하락품목	상승품목	하락품목
1.70 > 1.48		1.78 > 1.38		0.75 < 1.90	

전기간에 걸쳐 추세인플레가 양수였다고 가정한 전기간에서 보면 價格上昇品目의 평균 변동폭은 1.70%로 下落品目의 평균변동폭 1.48%보다 크다. 또한 物價上昇期와 下落期를 나누어 각 경우의 평균변동폭을 계산한 경우에도 물가상승기에는 상승품목의 평균변동폭이, 그리고 물가하락기에는 하락품목의 평균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Ball and Mankiw의 추세인플레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결과는 애당초 가격변경을 요하는 외생적 쇼크가 0의 주위에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당초 쇼크의 분포가 인플레시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물가하락기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가정하면, 위의 결과는 이같은 원초적 쇼크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가격조정에 있어서의 下方硬直性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원초적인 쇼크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체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價格固守領域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가격의 하방경직성 현상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가 가격의 下方硬直性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Ball and Mankiw 류의 하방경직성 가설을 검정하려면 원초적 쇼크의 분포에 관한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검정결과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價格變動에 대한 適應速度의 差異

이 가설에 의하면 價格變動을 유발하는 명목 쇼크가 있을 때 조정비용이 없거나 작은 品目의 價格은 즉각적으로 分布의 꼬리부분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원래의 價格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머지 價格도 따라 움직여서 결국에는 正規分布를 회복하겠지만 과도기중에는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거나 꼬리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Fischer(1982)는 價格의 조정속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品目마다 메뉴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메뉴비용이 큰 品目은 價格을 변경시켜야 할 요인이 발생해도 오래 기다렸다가 한목에 대폭 변경시키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소비자 저항이 메뉴비용의 주된 요인이라면 비교적 잦은 價格變動에 익숙한 식료품 등은 조정비용이 낮고 구매빈도가 낮은 내구재의 경우에는 조정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두번째 이유는 단기 공급곡선의 탄성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장기 탄성치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단기 탄성치에 차이가 있다면 수요쇼크가 있을 때 價格變更의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메뉴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價格變動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이 가설의 함의는 일단 價格이 變動된 品目의 價格은 그 수준에서 한동안 머물고 대신 남아 있던 品目들의 價格들이 변경을 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는 인접해 있는 기간의 價格變動幅(절대값)의 순위에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검정해 보면 인접된 달을 바로 다음달로 할 경우 〈표 5〉의 1개월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또 그 방향에서는 住居費에서

〈표 5〉 隣接된 價格變動幅 順位間의 相關關係

품 목	1개월	2개월	품 목	1개월	2개월
1. 穀類	0.37	0.27	22. 外衣	0.28	-0.09
2. 肉類	0.24	0.21	23. 스웨터·셔츠	0.30	-0.06
3. 乳卵	0.05	0.20	24. 內衣	0.27	0.08
4. 어개류	0.10	-0.05	25. 織物·실	0.34	0.06
5. 菜蔬·海草	0.12	0.14	26. 기타被服	0.36	0.17
6. 果實	0.15	0.14	27. 신발	0.23	0.05
7. 油脂·調味料	0.32	0.18	28. 被服 및 신발서비스	0.37	0.25
8. 빵·과자	0.27	0.12	29. 醫藥品	0.41	0.23
9. 茶·飮料	0.34	0.04	30. 保健醫療用品	0.46	0.16
10. 酒類	0.21	0.04	31. 保健醫療서비스	0.25	0.08
11. 外食	0.28	0.14	32. 敎育	0.21	0.01
12. 住居費	-0.02	-0.04	33. 文房具	0.43	0.19
13. 電氣料	0.10	-0.08	34. 敎養·娛樂	0.17	0.05
14. 水道料	0.49	0.15	35. 交通	0.35	-0.09
15. 燃料	0.22	-0.11	36. 通信	0.24	0.07
16. 一般家具	0.35	-0.02	37. 理美容	0.31	0.06
17. 家庭用家具	0.24	-0.07	38. 裝身具	0.16	0.26
18. 廚房用品	0.34	0.18	39. 담배	0.18	0.01
19. 家事雜貨消耗品	0.30	0.10	40. 宿泊料	0.30	0.07
20. 寢具 및 織物製品	0.33	0.06	41. 手數料	0.40	0.13
21. 家事서비스	0.34	0.01			

유일하게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이론적 기대치와 상반된다.

今月과 翌月의 가격변동폭 사이에 포지티브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곧 Fischer가설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현재 消費者物價指數는 月別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5일, 15일, 그리고 25일의 3회에 걸쳐 조사를 한 다음 이것을 평균하여 월지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5일자에 반영된 가격변동은 상관없지만 15일자, 25일자에 반영된 것들은 그 달의 월지수에 실제 가격

변동의 각각 2/3와 1/3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음달 지수로 이월되게 된다. 즉 가격조사가 월 3회 실시되고 이것이 평균되는 과정에서 월별지수간에 인위적인 포지티브 상관관계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같이 물가변동분의 일부가 翌月指數에 이월되는 효과는 비교하는 월지수의 간격을 2개월로 넓힐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순위간의 상관관계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산출해 보았는데(〈표 5〉의 세번째와 여섯번째 열 참조) 이로 인해 위에서 얻은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 즉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의 수가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포지티브 상관관계를 보이는 품목의 수가 여전히 많다.

價格變動幅의 순위 사이에 왜 이같은 포지티브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농수산품의 경우와 같이 수시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폭적인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價格引上要因을 수차례에 나누어 價格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메뉴費用理論과는 정면으로 상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Fischer가설의 둘째 함의는 價格變動의 조정비용이 品目에 따라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면, 이중 조정비용이 작은 品目은 價格變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먼저 價格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순위를 보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가설은 앞서 Friedman의 matched sample test에서 지지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메뉴費用이 다르다는 이 가설은 앞서 인플레와 分散간의 相關關係 설명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앞에서 인플레를 외생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分散을 외생으로 간주하는 경우 두가지를 살피면서, 이중 전자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분포의 꼬리가 왼쪽으로 남아 있어야 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플레 진행과정에서 분포의 꼬리가 왼쪽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모든 품목의 메뉴費用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만일 메뉴비용이 품목에 따라 다르다면 비용이 작은 품목이 우선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외견상 나타나는 分布는 오른쪽 꼬리가 두껍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즉 인플레를 외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分布가 도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가설은 Ball and Mankiw(1995)에서 외생적이라고 가정된 쇼크의 분포가 사실은 내생적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도 시사한다. 인플레가 相對價格의 교란을 가져오는 것인지, 상대가격의 심한 변동이 인플레로 나타나는 것인지의 구분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품목별로 메뉴費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 變動의 分布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含意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얻어진 價格變動 분포의 일반적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價格變動의 분포가 正規分布를 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0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긴 막대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分布가 평균값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분 품목의 가격변동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체평균을 끌어올리는 품목은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外食費, 家事서비스, 被服·신발서비스, 理美容 등과 같이 人件費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果實, 어개류, 菜蔬·海草, 乳卵, 肉類 등 農畜水産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셋째, 價格의 平均持續期間과 平均變動幅 사이에는 강한 포지티브 相關關係가 존재한다. 즉 한 가격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품목의 價格은 일단 변하면 큰 폭으로 변하고 價格變動이 자주 일어나는 품목의 1회 변동폭은 작은 경향이 있다. 이중 電氣料, 담배, 手數料, 通信, 水道料 등 공금요금적 성격을 띤 품목들은 가격변동의 빈도가 낮은 대표적인 품목들인데, 대신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때는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서 물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른 품목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향이 있다.

넷째,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의 分散 및 歪度는 陽의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즉 인플레가 진행될 때 相對價格體系의 심한 교란이 동반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같은 分布가 시사하는 이론적 함의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價格變動에 관한 그간의 이론들을 보면 가격변동이 伸縮的이라는 가설과 硬直的이라는 가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위에서 얻은 결과들은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分布에서 0의 값에 긴 막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 가격의 자유로운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이 이같이 경직적인 것은 메뉴費用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정기간 동안 가격이 전혀 변동하지 않는 품목이 많다는 것 외에도 分布가 正規分布에 비해 밀집되어 있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하는 등등이 이를 말해 준다. 또한 인플레와 분포의 分散 또는 歪度가 陽의 相關關係를 갖는다는 것도 메뉴

費用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가격이 下方硬直性을 갖는다고 흔히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방경직성을 合理性 公準하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모형은 많지 않고 따라서 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힘들다. 최근의 Ball and Mankiw 모형은 下方硬直性의 이유를 추세인플레하에서 상대가격이 자동적으로 잠식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가격책정전략의 일환으로서 설명한다. 즉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어느 개별품목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격이 자동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굳이 메뉴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은 약해지며 따라서 가격인하는 드물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격변경을 요하는 외생적 쇼크가 대칭적으로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그 함의를 검정한 결과는 이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생적 가격쇼크가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없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의 검정결과가 Ball and Mankiw 류의 가설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품목마다 메뉴비용이 다르고 따라서 품목간 가격조정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가설은 여러가지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가격변동에 메뉴費用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 또는 추구되고 있는 '제로인플레'운동이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인플레가 사회적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인플레의 수속을 통하여 이같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인플레가 지속될 때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메뉴표를 바꾸어야 하는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다. 둘째는 인플레에 수반되는 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인플레가 곧 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닐 수도 있지만 메뉴費用과 결합된 인플레는 상대가격의 왜곡이나 교란을 불가피하게 한다. 메뉴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하에서 인플레를 제로로 유지하는 것은 메뉴비용의 부작용이 相對價格體系의 교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柳潤河, 「經濟政策의 動態的 矛盾과 信賴性」, 『韓國開發硏究』, 제11권 제2호, 韓國開發硏究院, 1989 여름.

Ball, L. and S. G. Cecchetti, "Inflation and Uncertainty at Short and Long Horiz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0, pp. 215~254.

Ball, L. and N. G. Mankiw, "Asymmetric Price Adjustment and Economic Fluctuations," *The Economic Journal*, 104, 1994a, pp. 247~261.

———, "A Sticky-Price Manifesto," WP No. 467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rch 1994b.

———, "Relative-Price Changes As Aggregate Supply Shock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1995, pp. 161~193.

Barro, R. J.,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5326, October 1995.

Barro, R. J. and D. B. Gordon, "A Positive Theory of Mone-

tary Policy in a Natural Rate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 July 1983.

Blejer, M. I., "On the Anatomy of Inflation: The Variability of Relative Commodity Prices in Argentina,"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5, November 1983, pp. 469~482.

Briault, C., "The Costs of Inflation,"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February 1995, pp. 33~45.

Bruno, M. and W. Easterly, "Inflation Crisis and Long-run Growth," NBER Working Paper 5209, August 1995.

Cassino, V., "Menu Costs—A Review of the Literature," Discussion Paper G95/1, Reserve Bank of New Zealand, March 1995.

Curkierman, A., *Inflation, Stagflation, Relative Prices and Imperfect In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Driffil, J., G. E. Mizon, and A. Ulph, "Costs of Inflation," in B. M. Friedman and F. H. Hahn(eds.),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North-Holland, New York, 1990.

Easterly, W., "When is Stabilization Expansionary? Evidence from High Inflation," *Economic Policy*, April 1996.

Fischer, 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Costs of Inflation: Ⅱ,"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5, 1981a.

———, "Relative Shocks, Relative Price Variability, and Inflation,"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81b, pp. 381~431.

———, "Relative Price Variability and Inflation in the Uni-

ted States and Germany," *European Economic Review*, 18, 1982, pp. 173~196.

———, "Modern Approaches to Central Banking," NBER Working Paper 5064, March 1995.

Fischer, S. and F. Modigliani,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Real Effects and Costs of Inflation," *Weltwirtschaftliches Archive*, 114, 1978.

Fischer, S. and L. H. Summers, "Should Nations Learn to Live with Infl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417, December 1988.

Friedman, M., "The Use of Ranks to avoid the Assumption of Normality Implicit in the Analysis of Variance," *JASA*, 32, 1937, pp. 675~701.

———, "Nobel Lecture: Inflation and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977, pp. 451~472.

Gerhaeusser, K., "Price Dispersion and Inflation: A Test of Causality," *Applied Economics*, 20, 1988, pp. 701~709.

Gordon, R., "What is New-Keynesia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8, 1990, pp. 1115~1171.

Gregorio, J., "Inflation, Growth, and Central Banks: Theory and Evidence," The World Bank Research Working Paper 1575, February 1996.

Haldane, A., "Inflation Targets,"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August 1995, pp. 250~259.

Jones, L. E. and R. E. Manuelli, "Growth and the Effects of Inflation," NBER Working Paper 4523, 1993.

Kydland, F. E. and E. C. Prescott, "Rules Rather than Dis-

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977.

Lach, S. and D. Tsiddon, "The Behavior of Prices and Inf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Disaggregated Price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1992, pp. 349~389.

Lucas, R. E., Jr., "Some International Evidence on Output-Inflation Tradeoffs," *American Economic Review*, 63, June 1973.

Mankiw, N. G., "Small Menu Costs and Large Business Cycles: A Macroeconomic Model of Monopol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85, pp. 529~537.

———, "A Quick Refresher Course in Macro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ember 1990, pp. 1645~1660.

McCallum, B. T., "Inflation Targeting in Canada, New Zealand,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in General," NBER Working Paper 5579, May 1996.

Mizon, G. E., J. C. Safford, and S. H. Thomas,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Price Changes in the United Kingdom," *Economica*, 57, 1990.

Okun, A. M., "The Mirage of Steady Inflation," *BPEA*, 2, 1971.

Parks, R. W., "Inflation and Relative Price Vari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 1, 1978.

Rae, D., "Are Retailers Normal?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Price Changes in New Zealand," Discussion Pa-

per G93/7, Reserve Bank of New Zealand, July 1993.

Rogoff, K., "Optimal Degree of Commitment to an Intermediate Monetary Targ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 4, November 1985.

Sargent, T. J. and N. Wallace, "Rational Expectations, the Optimal Monetary Instrument, and the Optimal Money Supply Ru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April 1975.

Shapiro, S. S. and M. B. Wilk, "An Analysis of Variance Test for Normality: Complete Samples," *Biometrika*, 52, 1965, pp. 591~611.

Sheshinski, E. and Y. Weiss, "Optimum Pricing Policy under Stochastic Infl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50, 1983.

Tobin, J., "Inflation and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2, 1972.

———, "Stabilization Policy Ten Years After," *BPEA*, 1, 1980.

Vining, D. R. and T. Elwertowski,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Prices and the General Price Level," *American Economic Review*, 66, September 1976.

論 評

朴 宗 奎
(韓國租稅硏究院)

우리가 접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470개 개별 품목지수 증가율의 가중평균치이다.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0가지의 개별적인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著者는 이와 같은 풍부한 소비자물가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립적인 경제이론들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함의를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著者가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론은 최근들어 시도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 데이터를 세분하여 연구하였던 경우는 없진 않지만 물가 상승률의 분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던 경우는 논평자가 알고 있는 한 그야말로 최근의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론의 목적은 가격결정의 행동양식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고 나아가 著者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변화율 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소위 코어인플레이션을 추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後者는 매우 중요한 거시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著者가 본문에서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한 著者의 또 다른 훌륭한 力作을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1)]

1) 특히 가격변화율 분포의 비정규적 특성이 화폐적 착오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방경직성과 Ball and Mankiw의 논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논평자는 저자와 의견을 달리한다.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면의 제약을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논평자의 의견을 첨가시킴으로써 讀者의 耳目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 기회를 빌어 이 논문의 정책시사점 가운데 하나, 메뉴비용의 존재가 제로 인플레 운동의 유력한 실증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pp. 112~113)에 대해서만 논평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Lucas(1973)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명목수요가 불균등하게 배분(unevenly distributed)되거나 메뉴비용이론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産業別로 수요 내지 비용의 변화 정도가 다르다면(sectoral shock)(Ball and Mankiw[1995]) 상대가격은 某種의 분포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가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율에 관계없이 메뉴비용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메뉴비용과 기대인플레이션율과는 아무런 명시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2] 한편 朴宗奎(1996)[3]는 Ball and Mankiw(1994)의 모형을 발전시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수록 가격변화율이 0%인 頻度(frequency)값은 더욱 증가한다는 이론적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著者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율이 0%가 될 뿐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율마저 0%가 된다 하더라도 메뉴비용이 사라진다고 보아야 할 이론적 이유는 없으며 가격의 경직성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메뉴비용의 존재가 제로 인플레이션 운동에 대해 시사하는 경험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이 논문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著者의 주장대로 제로 인플레이션이 달성되면 메뉴비용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아도 우리가 당면한 인플레이션율이 이를테면 3~4% 정도의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성질의 것이라면 과연 인플레이

2) 예를 들어 Ball and Mankiw(1995)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메뉴비용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3) 박종규,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출간예정) 참조.

션율을 0%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지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메뉴비용은 메뉴판의 가격을 고치는 불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계약갱신 비용,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4] (p. 94)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대가격체계가 혼란스러워지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을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高率의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자면 高率의 인플레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플레期待心理가 蔓延되어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전세값이 급등함으로써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전세값이 폭등하여 아무리 내핍생활을 해보아도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고율의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늘려보겠다는 의욕도 좌절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富의 가치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하나의 조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변화폭이 심한 인플레이션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율의 등락이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면 기업가의 창의적 노력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에서 勝者가 되려는 데에 집중되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는 財테크에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富의 창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대체재가 별로 없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폭등시킴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완만한 성질의 인플레이션이라면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율이 아예 0%가 된다면 경제 전체적 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로 인플레 운동을 실제로 전개하는 데에도 무

4)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밑도는 현재에 있어서도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믿고 있다.

시할 수 없는 비용이 수반되며 경제 전체적 복지를 오히려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Okun의 법칙이 말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간의 상충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논평자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3~4%의 인플레이션율을 0%로 낮추기 위해 1%의 실업증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율을 0%로 만들기 위해 그만큼의 실업증가를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 정도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플레로 인해 자신이 인출한 금액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예전보다 은행에 자주 출입해야 한다는 점을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드는 경우도 있다. 이 비용은 집을 나서서 은행으로 가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하기 때문에 신발끈이 닳아버린다고 하여 소위 신발끈 비용이라는 궁색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가기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 속에서 낭비해야 하는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가 은행출입 자체가 요구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경험해 보았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계약갱신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상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경우는 볼 수 있어도 가격만을 홍보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가격홍보 비용이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반면에 실업이 의미하는 경제적 대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평상시에 한 경제가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었던 재화와 용역을 실업으로 말미암아 생산해내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만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3~4%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기 위

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생산액과 실업을 생각한다면 제로 인플레 운동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0%에 도달했다지만 일본이 인플레이션율을 0%로 만들기 위하여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0%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려 노력한 결과였다기보다는 戰後 최장기간의 불황을 겪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며, 미국 및 유럽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들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감수해야 했던 실업률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려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인플레로 인하여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낮아져 1만원을 들고 가게에 가더라도 과거에 비해 살 만한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렇지만 한개에 1만원씩 하는 배를 서슴없이 사고 한벌에 몇백만원 하는 옷을 서슴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소비자물가가 10% 오르든 20% 오르든 아무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3~4%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면 서민들 역시 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알고 있다. 즉 사과값이 오른다면 사과를 사지 않고 대신 배를 사며 배추값이 오르면 김치를 조금 적게 담근다. 물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불편은 있지만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고충(예를 들어 승용차를 사고 싶은데도 살 수 없다든지, 보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지,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등등 그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에 비한다면 그것은 그리 특별한 불편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 역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실업이 서민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에게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용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리 커다란 비용이 될 수 없지만,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실업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무관한 가운데 실업자라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도록 강요한다. 職場과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當事者의 자존심이나 인격 같은 것은 경제적인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5)]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종식으로 인한 효율성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大義名分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퇴치하려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그러한 인플레이션 자체로 말미암아 서민생활이 불안해진다기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反인플레이션(anti-inflation)정책에 의해 서민생활은 오히려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파레토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정책방향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며 공평성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 제로 인플레 운동을 시행하자고 주

5) 마틴 루터 킹 牧師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한 남자로부터 일자리를 박탈해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心理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통고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라고까지 痛烈하게 말한다.

장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메뉴비용의 존재를 그 운동의 실증적 근거로 간주하기도 어려우며 3~4%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나아가 0%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본다.

洪 基 錫

(本院 專門硏究員)

최근 인플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全體物價水準의 변동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微視的인 수준에서 個別價格들의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인플레 사례의 구체적 특징들을 밝힘으로써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플레라는 현상 자체와 경제주체들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물가자료에 나타난 個別價格變動의 分布를 분석함으로써 여러가지 흥미로운 실증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 실증결과들에 비추어 가격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假說들을 比較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물가결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보고된 우리나라 가격변동분포의 특성들을 요약하면, 가격변동의 분포가 보통 非對稱的이라는 것, 가격변동분포의 分散이나 歪度가 증가할수록 인플레가 상승한다는 것, 어떤 한 기간 동안 가격변동은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0이라는 것, 그리고 가격변동이 잦은 품목은 그 변동폭이 작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최근 미국의 물가자료에서도 관찰된 바 있지

만(Ball and Mankiw[1995]),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특성들이 관찰됨을 실제로 확인한 것에 이 논문의 중요성이 있다. 물가변동에 관한 이러한 기초적 사실들은 앞으로 물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 보고된 실증결과들에 비추어 가격결정에 대한 여러가지 假說들을 比較·檢定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伸縮的 가격조정과 硬直的 가격조정의 두가지 가설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실증결과들은 대체로 경직적 가격조정가설, 특히 최근 들어 新케인지안들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S, s)式의 가격조정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S, s) 모델은 개인의 경제행위에 수반되는 調整費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때마다 조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現在의 가격이 最適價格에서 벗어난 정도가 클 때에만 조정을 하고 그 정도가 어떤 범위 이내일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 s) 밴드란 바로 이 범위, 즉 현재가격과 최적가격간 차이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調整費用下의 가격조정은 非伸縮的으로 된다. 이러한 (S, s) 모델은 전통적 케인지안들이 흔히 가정하는 경제내의 경직성에 대해 엄밀한 微視的 基礎를 제공하면서 최근 비단 가격조정만이 아니라 투자나 내구재소비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연구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여러 결과들은 바로 이러한 (S, s)式의 가격조정모델에 의해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따라서 적어도 短期에 있어서는 케인지안的인 思考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 대해 한가지 욕심을 부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논문의 결과들이 가지는 政策的 示唆點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자세한 논의이다. 특히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간의 관계와 그 相對的 外生性은

인플레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이 논문의 著者는 앞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믿어진다. 다만, 이 논문에서 언급된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本 檢討者는 아래에서 간단한 추가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의 상대적 외생성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정리하겠다. 인플레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 논문에서 보고된 비신축적 가격조정이 의미하는 것은 總供給曲線이 단기적으로 右上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량의 예기치 못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켜서 생산의 증가와 물가상승을 동시에 가져오게 된다. 반면 가격변동의 분포가 외생적이라는 것은 상대가격의 변화가 總供給曲線 자체를 移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떤 특정품목의 급격한 相對價格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물가상승과 함께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인플레가 외생적인 경우에는 화폐의 非中立性이나 인플레의 相對價格 攪亂效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지만, 가격변동이 외생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자의 경우 안정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후자의 경우 품목별 需給安定을 통한 상대가격의 안정이 강조된다.

그러면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 중 어느 것이 더 外生的일까? 실제자료를 보고서 그 상대적 외생성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의 저자는 인플레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S, s)식 가격조정하에서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의 歪度 사이에는 陰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자료를 보면 두 변수 사이에 陽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따라서 저자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가격변동의 분포가 외생적이고 인플레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듯하

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본 검토자의 생각으로는 인플레가 외생적인 경우에도 인플레와 가격변동분포의 왜도 사이에 陽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통화량의 증가율이 외생적으로 상승한 경우 기업들은 최적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S, s) 밴드 자체를 위로 조정할 것이다. 이 경우, 통화량의 증가가 없었더라면 상승하지 않았을 가격들 중 일부가 上方으로 조정되고 조금 상승했을 가격들은 더 많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전에 하락했을 가격들 중 일부는 더 이상 하락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일부는 이전보다 더 작게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율의 상승과 더불어 가격변동분포의 왜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Ball and Mankiw(1995)도 원칙적으로는 통화량의 외생적인 증가가 가격변동분포의 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앞의 논의에 따르면, 인플레가 외생적으로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산량의 증가가 수반되는 반면 가격변동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산량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서 인플레가 주로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상대가격의 충격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플레와 가격변동의 분포 외에 통화량과 생산량의 변화를 같이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産業構造調整의 成果와 政策的 示唆點

成 素 美

(本院 研究委員)

◇要　約◇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고용·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I. 序 論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로부터 출발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장기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대개 성장의 원천은 요소투입의 양적 증가와 생산성의 증가로 나뉘고, 생산성 증가의 주요원천은 노동과 자본의 질적 향상 및 이러한 질적 향상에 측정되지 않은 효율성 및 기술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는 자본 및 노동 등 요소투입 신장률의 증가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기술진보가 추가적인 成長潛在力 증대의 원천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經濟活動人口의 증가가 둔화되고 勞動時間이 단축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동투입의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한 投資率을 계속 높여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그것을 특정목

적을 위한 행위에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와 같은 인간의 능력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다. 특히 현대경제에서 혁신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지식기반이 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를 비롯한 지식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통적인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본고에서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고용·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2)]

사실 혁신활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투자 지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활동들－예를 들면 특정고객을 위한 제품설계, 생산공정의 문제해결, 경쟁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감시 등－간의 境界도 不分明하다. 많은 경우 기술적으로 앞선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타 기업의 개발활동 및 성과와 기업외부의 기술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資源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逆엔지니어링은 물론 상당한 學習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R&D로 산정되지 않지만 효과면에서는 R&D와 상당히 유사하다.

---

1) 지식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추세는 成素美(1995), pp. 56～57 참조.
2) 일반적으로 기업단위에서는 매출액 중 신제품의 비중, 국가단위에서는 무역액 중 첨단제품의 비중이 혁신의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R&D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R&D라는 것은 技術革新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一部分일 뿐이다. 대개 新製品의 생산 혹은 新工程의 도입을 위해 설비 및 공장에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은 R&D비용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운 조직 및 분업형태, 근로자들의 기능전환,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훈련시스템의 성격과 효율성은 공학자에서 기계공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技能供給을 결정할 뿐 아니라 기술진보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사간 협상 및 분규해결의 유형, 기업과 근로자들간의 상호 신뢰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통제구조는 경영자가 어떤 기술활동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혁신활동은 R&D보다 훨씬 많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개발지표는 기술혁신이라는 큰 그림의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혁신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무형투자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포괄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투자뿐만 아니라 특허와 라이선싱, 디자인, 엔지니어링, 기술예측 등 기술축적과 관련된 투자 이외에도 인적자원의 배양 및 조직구성과 관련된 투자, 시장조사 및 시장조직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통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추계된 적이 없는 형편이다. 이용가능한 지표들 중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비교적 개념이 잘 확립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3] 또한 연구개발투자는 특허출원건수, 발표논문수 등의 통계에 비해 중립적인 지표라고 할

3) 연구개발투자통계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OECD, *Frascati Manual*(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1980, 1993 참조.

수 있다.[4)]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제Ⅱ장에서는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한국의 전반적 산업구조변화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장기추세를 비교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산업부문별 수출구조변화, 생산·고용·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산업구조 조정의 성과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기로 한다.

Ⅱ. 産業構造變化

1. 産業構造變化의 一般的인 趨勢

장기적인 산업구조변화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농업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둘째, 제조업부문의 비중은 산업화과정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경제발전이 일정단계에 이르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생산성과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다.

OECD국가 전체로 볼 때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OECD국가들의 평균 제조업 비중은 1968~73년 기간동안에는 27.8%이던 것이 1974~79년에는 26.1%,

4)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 화학 및 의약품업에서는 비교적 유효하나 기타산업에서는 유효성이 떨어지므로 산업간 편차가 크다.

1980년대 전반에는 24%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5] 1992년 주요 선진국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을 보면 독일과 일본이 28.7%와 27.9%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미국(1987년)과 영국이 각각 19.3%, 프랑스는 20.4%이다.[6]

제조업의 고용수준을 보면 197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며 유럽에서 특히 많이 감소하였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제조업의 고용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최근의 불황기간동안에는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및 GDP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이 연평균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전반에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증가의 상당부분이 제조업관련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서비스활동의 상당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된 것이 서비스업 비중증가를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ades(1987)에 따르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2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7]

그러나 구조변화에서 공통특성이 관찰되는 보다 일반적인 이유는 수요의 소득탄력성, 생산성 증가율, 상대가격 증가율이 산업간에 차이를 보이는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5) OECD(1989) 참조.
6) OECD(1995) 참조.
7) Blades(1987)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소매업,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은 모두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라고 가정하였고, 운송 및 통신, 금융, 보험업은 1/2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1〉 OECD國家들의 製造業 및 서비스業 比重變化(1980~92)

	경상GDP에 대한 비중			
	제조업		서비스업[1]	
	1980	1992	1980	1992
미 국	21.8	19.3[5]	64.6	70.1[5]
캐나다	17.9	16.0[6]	52.9	56.5[6]
멕시코	22.2	21.2	60.1	65.8
일 본	29.2	27.9	56.3	59.0
오스트레일리아	19.2	14.7	59.3	69.9
뉴질랜드	22.0	17.4[6]	58.3	62.6[6]
오스트리아	27.8	25.1	50.8	58.5
벨기에	24.2	22.6[6]	57.4	63.7
덴마크	17.2	16.6	56.8	61.0
핀란드	25.4	19.5	46.0	55.4
프랑스	24.2	20.4	57.0	64.9
독 일[2]	32.4	28.7	49.5	54.6[7]
그리스	17.4	13.1	45.6	50.0
아이슬란드	15.4	13.5[7]	40.3	47.9[7]
아일랜드	-	-	49.9[4]	51.2[7]
이탈리아	27.8	20.5	53.5	63.0
룩셈부르크	28.5	24.2[7]	61.0	66.0[7]
네덜란드	17.7[3]	18.3	58.2[3]	62.5
노르웨이	16.0	13.5[7]	49.0	56.4[7]
포르투갈	31.0	27.9[6]	51.6	54.5
스페인	26.7[3]	27.9[6]	59.9[3]	60.7[6]
스웨덴	20.9	17.6	56.2	59.8
스위스	25.8[3]	24.4[6]	61.1[3]	62.4[6]
터 키	17.3	22.3	50.3	53.0
영 국	23.4	19.3	50.1	58.1

註 : 1)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 포함.
2) 독일 통계는 1990년까지는 서독만을 포함, 1991년부터는 통일 독일의 숫자.
3) 1985. 4) 1986. 5) 1987. 6) 1990. 7) 1991.

資料 : OECD(1995).

농업부문의 취업자는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서비스는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높지만 생산성 증가는 낮고 수입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격상승이 공산품의 가격상승보다 빠르다.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상대가격의 증가에 의하여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지속되거나 서비스부문 내부에서 지식집약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韓國의 産業構造變化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장기추세가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0년 36.8%, 1970년 26.6%, 1980년 14.7%, 1995년 6.6%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1960년 47.3%, 1970년 50.8%, 1980년 55.6%, 1995년 66.2%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7~89년 기간에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변화는 부가가치, 산출, 취업자수의 어느 기준으로 보든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8)]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명목GDP에 대한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의 21.0%에서 1988년에 32.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26.9%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GDP 기준으로 보면 1988년 이후의 제조업 비중감소는 그리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총산출에 대한 제조업

8)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과 산출비중은 『국민계정』 통계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고용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연보』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림 1] 韓國 製造業의 GDP比重, 産出比重, 雇傭比重의 變化推移(19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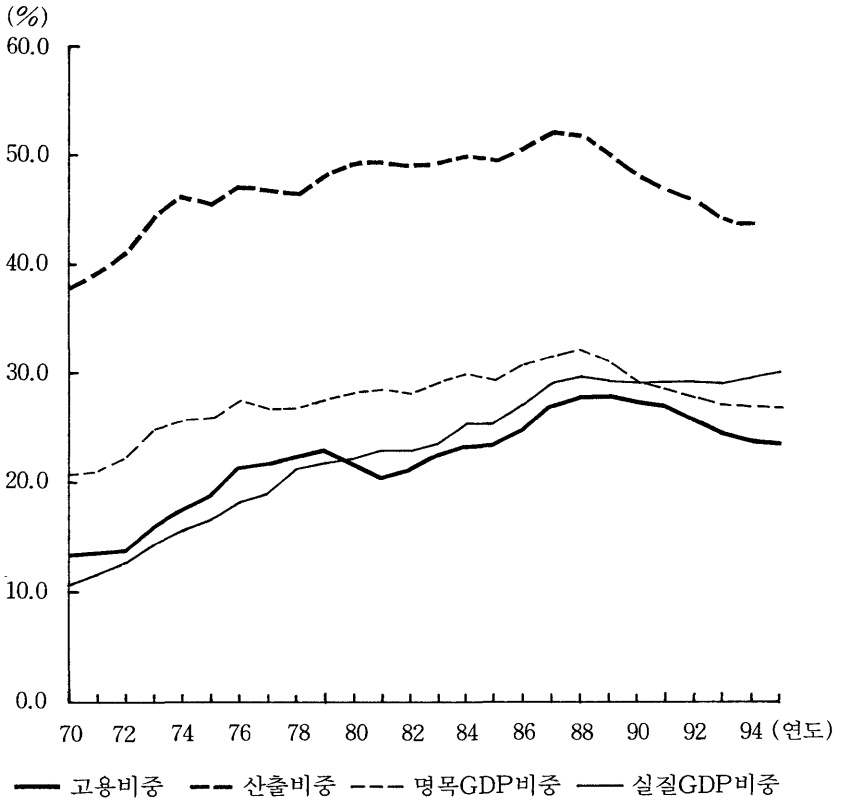

비중 역시 1970년의 37.9% 수준에서 1987년에 51.9%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1994년에는 43.3%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70년의 13.2%에서 1989년에 27.8%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여 1995년에는 23.4% 수준이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197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말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산출에 대한 서비스업의

9) 제조업의 상대가격이 하향추세이므로 실질로 보면 명목에 비해 제조업 비중 감소가 덜 뚜렷하다.

[그림 2] 韓國 서비스業의 GDP比重, 産出比重, 雇傭比重 變化推移(19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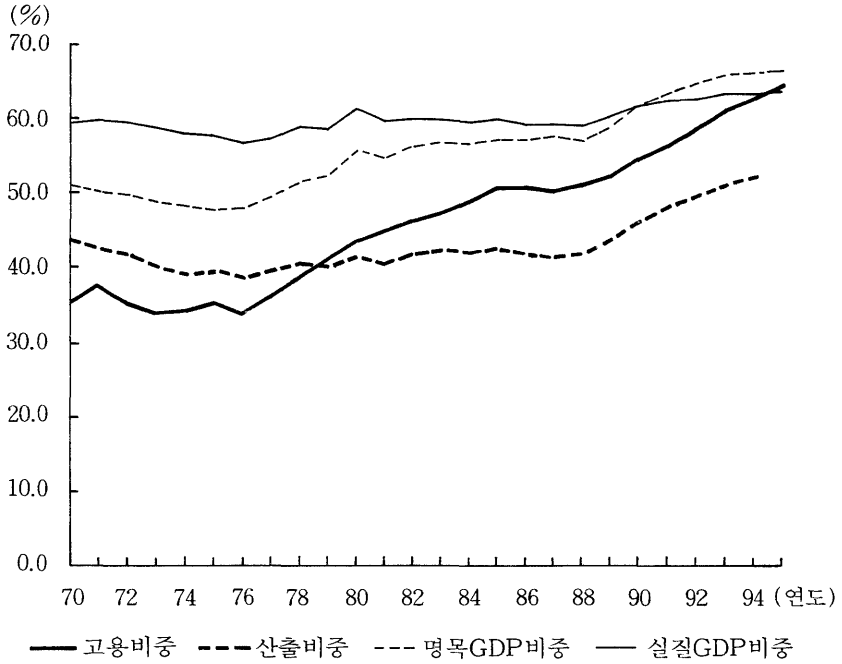

비중은 1970~88년간 최고 43.7%(1970년)에서 최저 38.5%(1976년)의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51.7%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수 기준으로 보면 1970년에 35.3%이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1995년에는 64.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증가는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서 생산이나 부가가치로 계산한 비중증가에 비해 고용비중의 증가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3. 構造調整經路의 國家別, 産業別 差異

앞장에서 우리는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가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OECD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고용의 구조적 감소의 시간경로가 국가별로 서로 달랐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산업특성별로 구조변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거나 임금 및 기능수준이 비교적 높은 산업의 경우 직업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직업수의 감소가 평균보다 훨씬 적었다. 1980~93년간 총제조업고용의 증가율과 첨단기술산업의 고용증가율이 각각 북미지역은 −1.6%, −0.8%, EU는 −1.7%, −0.8%, 일본은 0.9%, 2.4%로 나타나고 있다.[10)]

또한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재래기술산업이라 하더라도 섬유, 의류, 가죽 등의 산업에서의 생산성은 평균 이하인 반면, 조선 및 기초금속의 생산성은 많은 나라에서 합리화 노력의 결과 증가하였다. 다음 章에서는 한국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특성별 구조조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10) OECD(1995) 참조.

Ⅲ. 製造業 構造變化에 대한 評價

본장의 목적은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제조업에만 국한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술적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은 혁신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비스업 내의 각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제조업의 수출,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하는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혁신활동을 측정하는 대리지표로는 연구개발집약도를 사용한다.[11] 연구개발투자 지표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의 제한, 위 지표의 상대적 명료성 및 중립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혁신집약적 산업이며, 혁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과도 높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성과란 중기적 생산성 향상 및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혁신활동이 활발한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산업구조고도화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1. 革新集約的 産業의 意味

과연 혁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과도 높다고 할

11) 연구개발집약도란 생산액 대비 연구개발지출 혹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지출로 정의된다.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혁신집약적 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의 증가속도도 빨랐다는 사실은 이하의 제4절에서 보일 것이다. 한편 혁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잠재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술혁신과 경제발전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두가지 가설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12]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가설(기술주도론)과 경제발전이 기술혁신의 필요를 창출한다는 가설(수요주도론)이 그것이다. 후세 학자들의 실증연구가 축적되면서 이들 선형모형은 상호작용적 시스템 모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혁신이 먼저인가, 경제발전이 먼저인가, 혹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그 어느쪽이든간에 경제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혁신활동이 지속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혁신집약적인 산업은 어떤 산업들인가? 경제의 모든 부문과 모든 산업이 끊임없이 기술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활동은 극히 집중되어 있어서, 이하의 〈표 2〉에서 보듯이, 대개 5~6개 산업부문 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집약도의 산업별 격차가 큰 사실에 대해 단순히 어떤 산업들에서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적고 다른 산업들은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물론 나무책상과 반도체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구분이 확실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다른

1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가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成素美(1995), 제2장 참조.

산업에 비해 기술이 R&D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둘째 타산업의 기술기반을 대표하거나 타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의 특정기술이 그 기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의 범주를 넘어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과 관련한 기술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술혁신 및 산업의 생성,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반도체와 컴퓨터관련 기술이 그러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ies)" 혹은 "핵심기술(core technologies)"이라는 개념은 경제발전의 어떤 주어진 국면에서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미국 국립공학원(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에 따르면 오늘날 핵심기술의 특성을 가지는 첨단기술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터, 로봇 기술, 통신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을 들고 있다.[13)]

이러한 사실들은 혁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경제의 장기발전을 가늠해 보는 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革新集約度에 따른 産業分類

혁신집약도에 따라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세분해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OECD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조업을

13) 이러한 핵심기술의 리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갈 것이므로 현재의 핵심기술이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핵심기술로 남아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22개 주요 산업으로 나누고 그것을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라 다시 세 가지 그룹으로 묶어 보고자 한다. 筆者가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기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OECD 분류를 따르면 분석결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므로 결과의 해석이 명료해진다. 둘째, 실제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OECD(1992)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집약도의 수준에 따라 22개 산업을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연구개발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을 첨단기술산업, 그 다음으로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간기술산업, 연구개발집약도가 가장 낮은 산업군을 재래기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4]

연구개발집약도는 OECD전체 산업부문 연구개발지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3개 주요 국가, 22개 제조업분야의 1979~81년의 3개년간 생산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연평균을 사용하고 있다.[1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81년 기간의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른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으로의 분류는 1972~74년 기간의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르더라도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3〉에서 1987~89년 기간의 OECD 주요국의 산업별

14) 제조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분류 방법 중에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소재형과 가공형, 임금수준에 따라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 산업으로 분류하는 방법, 요구되는 생산기술의 수준에 따라 숙련기술산업과 비숙련기술산업으로 분류하는 방법, 경쟁우위요소의 특성에 따라 자원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규모집약적 산업, 차별화중시 산업, 과학응용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5) 선진 13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하며, 각 산업별로 총생산 중 각 국가의 점유율을 가중치로 하여 R&D집약도를 계산하였고 PPP를 사용하여 동일통화로 전환하였다.

〈표 2〉 尖端技術産業, 中間技術産業, 在來技術産業으로의 分類[1)]

분 류	산업명	ISIC[2)]	연구개발집약도	
			1972~74	1979~81
첨단기술산업	항공우주	3845	19.6	14.2
	컴퓨터	3825	10.4	9.0
	의약품	3522	6.1	7.5
	통신 및 반도체	3832	7.1	7.4
	과학기기	385	3.9	4.9
	전기기계	383(3832제외)	3.3	3.2
중간기술산업	자동차	3843	2.4	2.7
	화 학	351,352(3522제외)	2.2	2.1
	일반기계	382(3825제외)	1.1	1.4
	고무 및 플라스틱	355, 356	1.2	1.1
	기타제조업	39	0.9	1.0
재래기술산업	기타수송기기	3842, 3844, 3849	0.5	0.7
	비금속 광물제품	36	0.6	0.6
	석유정제	353, 354	0.8	0.6
	조 선	3841	0.6	0.6
	비철금속	372	0.5	0.6
	철 강	371	0.4	0.5
	조립금속	381	0.3	0.5
	제지 및 인쇄	34	0.2	0.2
	음식료품 및 담배	31	0.2	0.2
	섬유·의복	32	0.1	0.1
	목재 및 목제품	33	0.1	0.1

註 : 1)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에 대한 OECD의 정의는 1979~81년 기간의 OECD 13개국, 22개 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ISIC는 국제표준산업분류코드.

資料 : OECD,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Annual Review 1992,* 1992.

〈표 3〉 OECD 主要國의 産業別 硏究開發集約度(1987~89)

		KSIC	산업명	R&D집약도[1]
첨단기술산업		3845	항공우주	20.2
		3825	컴퓨터	12.4
		3832	통신 및 반도체	10.8
		3522	의약품	10.3
중간기술산업	중간고기술산업	385	과학기기	4.8
		3843	자동차	3.5
		351, 352(3522 제외)	화 학	3.4
		383(3832,38342 제외)	전기기계	3.2
	중간저기술산업	382(3825제외)	일반기계	2.1
		3842, 3844, 3849	기타수송기기	1.9
		3841	조 선	1.4
		353, 354	석유 정제	1.1
		36	비금속광물	1.1
		39	기타제조업	1.0
		355, 356	고무 및 플라스틱	1.0
		372	비철금속	0.9
재래기술산업		371	철 강	0.7
		381	조립금속	0.6
		31	음식료품 및 담배	0.3
		34	제지 및 인쇄	0.2
		32	섬유 및 의복	0.2
		33	목재 및 목제품	0.1

註 : 1) R&D 집약도의 계산방법은 〈표 2〉와 동일.
資料 : OECD(1992).

연구개발집약도를 보면 상위 4개 산업과 하위 6개 산업은 여전히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위그룹의 연구개발집약도 순위는 1979~81년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던 전기기계가 1987~89년 기간에는 자동차산업이나 화학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재래기술산업에 속하던 기타수송기기, 조선, 비금속광물 등의 산업도 1980년대 동안 연구개발집약도가 크게 증

가하여 1987~89년 기간에는 중간기술산업에 속하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제조업, 비철금속 등의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집약도가 더 높다. 따라서 1980년대말 이후의 연구개발집약도에 대한 분석은 중간기술산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중간고기술산업과 중간저기술산업으로 나눔으로써 4개의 산업군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OECD는 현재도 여전히 구조변화분석에서는 1979~81년 기준으로 정의한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16] 그것은 장기에 걸친 구조변화 분석에서 기존의 분류에 따른 분석결과가 훨씬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筆者도 1987~89년간 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집약도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산업, 중간고기술산업, 중간저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4가지 産業群으로 나누어서 보는 분류방법도 시도해 보았으나 분석결과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한편 연구개발집약도의 수준은 첨단기술산업의 비중 등 산업구조의 차이나 연구개발잠재력의 차이에 따라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17] 그러나 어느 한 국가의 연구개발능력이 주어졌을 때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는 결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군과 낮은 산업군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표 4〉는 한국의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를 계산하여 높은 순서(사용기준)로 배열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OECD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전기기계산업만을 예외로 하면, 첨단기술산업, 중간기

16) 예를 들면 OECD, *Industry and Technology: Scoreboard of Indicators,* 1995 등을 참조할 것.

17)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고 그 다음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순이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스웨덴의 경우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1992)를 보면 의약품산업이 30.4, 통신기기 및 반도체산업 35.0, 항공산업은 14.9에 이르고 있다.

〈표 4〉 韓國의 産業別 硏究開發集約度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1991~93)[1]	
	사용기준	부담기준
영상, 음향 및 통신	5.18	5.48
과학기기	4.11	3.87
컴퓨터	3.74	3.46
자동차	3.52	3.69
일반기계	2.45	2.42
고무 및 플라스틱	2.34	2.32
전기기계	2.21	2.17
화 학	2.04	2.06
기타제조업	1.61	1.67
기타수송기기[2]	1.45	1.26
비금속광물	1.38	1.36
조립금속	1.15	1.20
섬유, 의복, 가죽	0.99	0.99
제지 및 인쇄	0.99	1.00
음식료품 및 담배	0.62	0.70
석유정제	0.44	0.45
1차금속[3]	0.43	1.06
목재 및 목제품	0.19	0.19

註 : 1) 연구개발집약도는 1991~93년의 3개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지출의 연평균임.
2) 조선 포함.
3) 철강 및 비철금속.
資料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각년도.

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을 구성하는 산업들이 서로 일치하도록 묶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의 경우에 1980년대를 통해 자동차의 연구개발집약도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기기계의 연구개발집약도 순위는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기계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OECD의

분석과 같다.

다만 한국의 경우 첨단기술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연구개발집약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OECD의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 수준과 비교해 보면 특히 첨단기술산업에서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동일한 첨단기술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활동 중 지식집약도가 높은 부문, 즉 기본설계, 디자인, 핵심부품 및 소재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 輸出構造 變化

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변화 추이는 산업구조고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경쟁에 노출된 수출부문의 구조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국가의 경제성과에 대한 간접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교역이 활발할수록 경쟁이 치열하며 치열한 경쟁은 성과개선을 촉진한다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Guerrieri and Milana(1995)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1970년의 12.2%에서 1989년에는 20.5%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산업의 수출비중 변화는 어떠한가? 이를 보기 위해 筆者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테이프의 국제표준무역분류(SITC)로 되어 있는 수출입통계를 표준산업분류(KSIC)로 대응시킨 다음 앞 절에서 정의한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지표를 보면,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은 1970년 8.3%, 1980년 16.3%, 1995년 36.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8] 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기술산업의 비중은 1970년의

[그림 3] 韓國 製造業輸出의 技術集約度別 構成(19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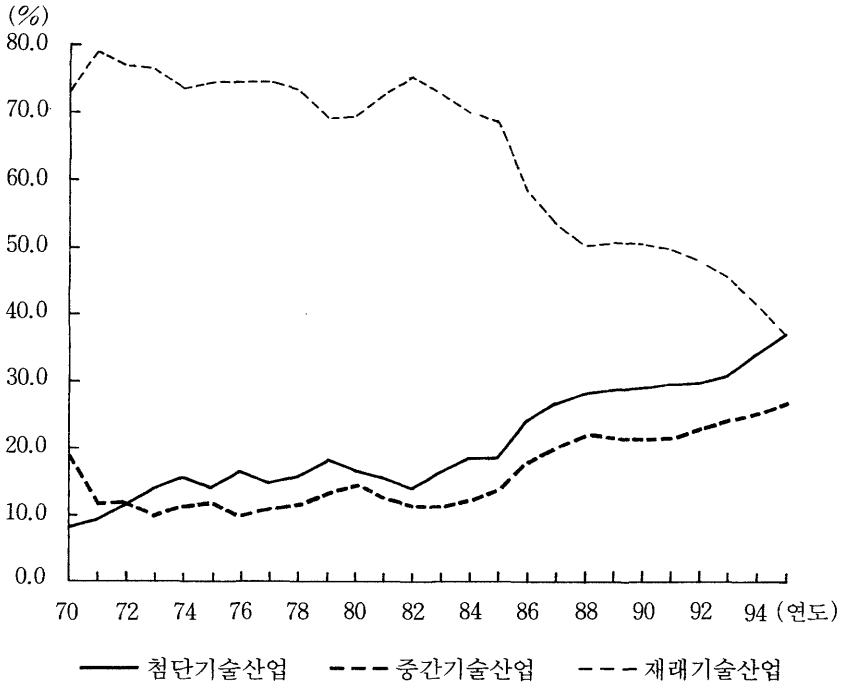

19.0%에서 1995년에는 26.7%로 증가하였고,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은 1970년의 72.7%에서 1995년에는 36.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OECD와 비교 가능한 1993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한국은 30.6%로 OECD평균인 25%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OECD에 비해 더 고도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첨단기술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첨단기술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는 OECD에 비해 훨씬 낮다. 동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품목이나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기

18) 제조업은 1995년 총수출의 95.5%, 총수입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이다.

첨단기술제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이며, 그 다음이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전기 및 전자기계, 컴퓨터의 순으로 되어 있다. 첨단기술제품 수출 중에서 의약품, 항공기, 과학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1986년 이후 한국의 수출 1위 산업은 전자산업이다.

OECD국가들의 경우 제조업 수출에 대한 첨단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이 1980년의 16%에서 1993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19] 특히 첨단기술제품 중에서도 수출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컴퓨터와 반도체인데, 이들 두 품목의 경우 OECD내에서의 수출점유율이 1980~93년 기간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20] 나머지 첨단기술제품들 중에서 1980년 이후 수출시장점유율 증가가 비교적 큰 제품은 통신장비, 의약품, 과학기기, 항공기 등이다.[21]

한국에서나 OECD에서나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재래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등 구조변화의 방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OECD국가들의 제조업수출(1992년)에서는 중간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고,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92년까지만 해도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47.7%로 가장 높고, 중간기술산업은 22.9%로 가장 낮아서 OECD의 수출구조와는 대조적이다.

---

19) OECD(1995) 참조.

20) OECD회원국들의 상품수출(1991년)은 세계 전체 상품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1) OECD(1995)에서는 1980~93년 기간동안 40개 상품의 OECD내 수출점유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7개 제품(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의약품, 과학기기, 항공기, 전기기계)은 수출점유율 증가가 큰 9대 제품에 속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 아닌 제품 중에서 수출점유율 증가가 큰 품목은 자동차와 기타제조업제품이었다.

[그림 4] OECD 製造業 輸出 技術集約度別 構成(197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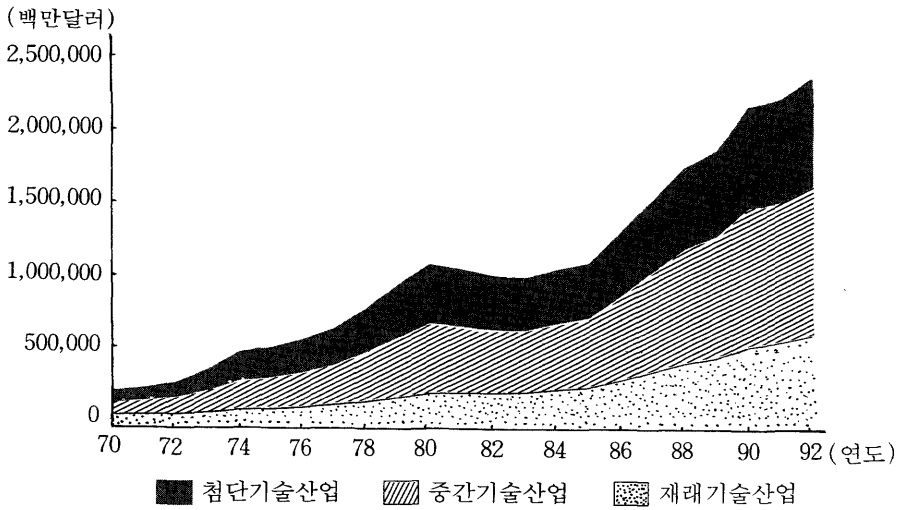

資料 : OECD(1995).

한국의 경우 중간기술산업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들이다. 재래기술산업도 출하액 대비 국내수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22] 재래기술산업은 1993년까지만 해도 무역흑자가 가장 큰 산업이었다.

그런데 [그림 5]에서 보듯이, 재래기술산업의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1984년부터 흑자 기조가 정착되었지만, 중간기술산업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산업과 중간기술산업의 무역특화계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특화계수는 해당산업의 무역액 대비 순수출액 비율로 정의되며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아래에서 TS_i = 산업 i의 무역특화

22) 내수비율 = {1-(수출/출하액)}. 1993년에 재래기술산업의 내수비율은 78.1%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5.3%로 상당히 높다.

[그림 5] 技術集約度別 貿易收支 變化推移(19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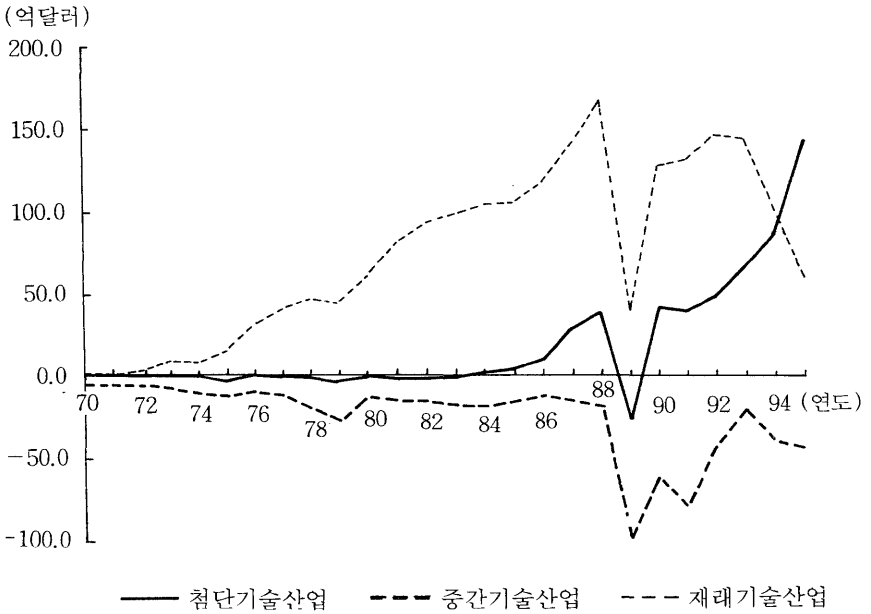

계수, X_i = 산업 i의 수출액, M_i = 산업 i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TS_i = \frac{(X_i - M_i)}{(X_i + M_i)}$$

특히 중간기술산업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부문은 일반기계산업과 화학산업인데 이들 산업의 무역특화계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0년과 1995년의 무역특화계수를 보면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0.76에서 −0.48로, 화학산업의 경우 −0.41에서 −0.16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재래기술산업과는 대조적으로 1993~95년간 첨단기술산업의 무역수지는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3~95년간의 제2차 엔고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신장률은 1994년 15.7%, 1995년

31.5%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은 총수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이다.[23]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첨단기술산업의 수출이 재래기술산업의 수출을 처음으로 초과하였다.

최근 재래기술산업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재래기술산업부문에서의 수출신장률이 수입신장률에 비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래기술산업부문의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 즉 수입침투율은 1993~95년 기간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결국 재래기술산업의 무역수지악화는 개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침투율은 국내총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말하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입침투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됨을 의미한다.

$$MPEN_i = \frac{M_i}{PROD_i + M_i - X_i} \times 100$$

위에서 $MPEN_i$ = 산업 i의 수입침투율, $PROD_i$ = 산업 i의 출하액, X_i = 산업 i의 수출액, M_i = 산업 i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재래기술산업이 한국 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래기술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동남아 개도국들과의 양방향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내무역지수는 동일산업 내에서의 양방향 무역(two-way trade)의 정도를 나타낸다. 산업내무역지수는 총무역에서 순수출 혹은

23)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비중은 1995년에 17.7%로서 단일품목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韓國 在來技術産業의 産業内貿易指數 推移(197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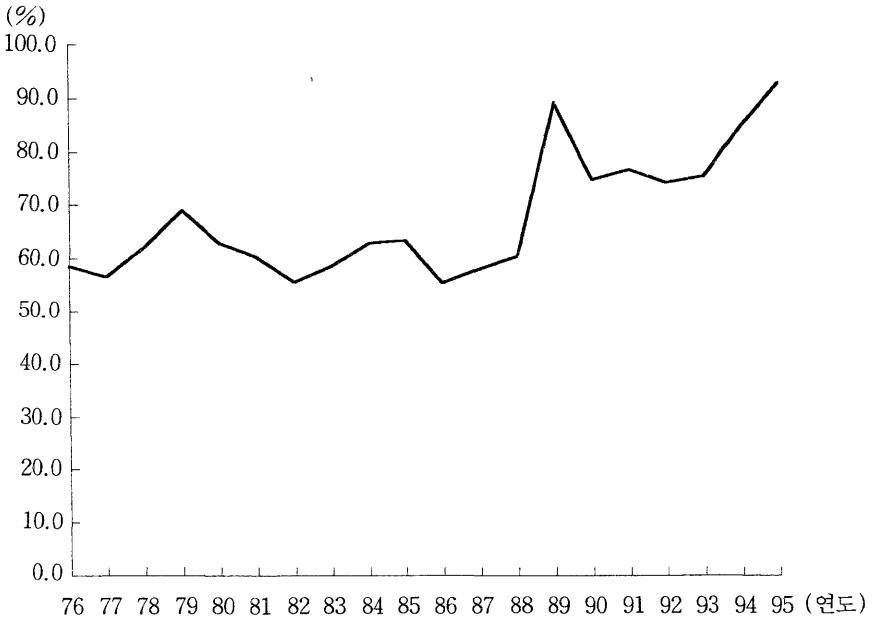

순수입의 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총무역에 대한 비중으로 정의되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수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데 만약 어떤 국가의 수출과 수입이 거의 같은 경우 지수가 높아진다. 만약 주로 수입하거나 혹은 주로 수출만 하는 경우(one-way trade) 산업내무역지수는 낮아진다.

$$IIT_i =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times 100$$

위의 식에서 IIT_i = 산업 i의 산업내 무역지수, X_i = 산업 i의 수출액, M_i = 산업 i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첨단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높다. 〈표 5〉에 나타난 G7국가들의 수입침투율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

〈표 5〉 産業類型別 輸入浸透率 變化 : G7國家와의 比較

	제조업전체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G7국가								
미 국	8.9	16.0	10.3	22.0[1)]	13.4	19.6[1)]	6.3	8.7[1)]
캐나다	30.7	40.0	57.1	65.0[2)]	50.1	52.8[2)]	13.4	18.2[2)]
일 본	5.3	5.7	6.0	6.1[1)]	4.5	5.2[1)]	5.4	6.4[1)]
프랑스	21.3	30.2	25.4	40.4[1)]	30.5	39.8[1)]	15.8	21.4
독 일	19.6	27.2	24.9	39.0[1)]	21.3	28.1[1)]	17.2	21.9[1)]
이탈리아	20.0	20.6	23.4	24.9[3)]	31.2	32.4[3)]	14.1	14.3[1)]
영 국	23.4	33.5	34.0	50.0[2)]	31.9	41.1[1)]	16.6	21.8[1)]
한 국	22.5	21.2	46.6	54.5	28.8	23.7	15.7	15.0

註 : 1) 1991.
2) 1990.
3) 1987.

資料 : G7국가는 OECD(1995) 참조. 한국은 관세청 무역통계와 통계청 광공업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출하였음.

가들에서 첨단기술산업과 중간기술산업에서의 수입침투율이 재래기술산업의 수입침투율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역이 활발할수록 경쟁이 치열하며 치열한 경쟁은 성과개선을 촉진한다는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1980년과 1992년의 수입침투율을 계산해 보면 한국의 경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기술산업의 수입침투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간기술산업 및 재래기술산업의 수입침투율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G7 국가들에서 수입침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과 이탈리아는 수입침투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은 수입침투율이 유난히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24)]

24) 수입침투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무역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이 더 낮거나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입침투율이 낮아질 수 있다.

本節의 한국수출구조 분석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림 3]에서 보았듯이,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고도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1980년대를 통해 연평균 20% 이상의 실질성장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행운에 힘입은 바도 크다.

엔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1986~88년간의 제1차 엔고기간에 한국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첨단기술산업 및 중간기술산업의 경우 1986~88년간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6.5%, 48.9%에 이르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나 중간기술산업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상대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인 경우가 많은 반면, 재래기술산업은 주로 개도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재래기술산업의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4.8%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후의 제2차 엔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1994~95년간 첨단기술산업 및 중간기술산업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4.3%, 28.7%에 이르고 있으나, 재래기술산업의 경우 9.8%에 그치고 있다.

4. 産出, 附加價値, 雇傭構造

앞절에서는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한국산업의 구조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내수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전체의 구조고도화 정도는 어떤가?

해외경쟁에 노출되는 수출부문과는 달리 내수를 포함한 국내산업

전체의 고도화 정도는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1976~93년 기간동안 제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수출구조와는 달리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간기술산업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재래기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고용, 산출의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50%를 넘는다. 1993년의 경우 재래기술산업의 산출비중은 53.8%, 고용비중은 56.7%, 부가가치비중은 52.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18.4%, 제조업 총산출의 15.1%, 제조업 총고용의 14.7%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91년 기간에 첨단기술산업의 산출, 고용, 부가가치 비중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1990~91년 사이에 첨단기술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이 상대적인 비중에서는 물론 절대수준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1년의 중간기술산업과 재래기술산업의 산출수준은 각각 전년대비 5.0%와 6.7%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첨단기술산업의 산출수준은 8.4% 감소하였다. 부가가치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15.7% 감소한 반면, 중간기술산업과 재래기술산업은 각각 13.4%, 19.6%의 증가를 보였다. 고용증가율은 첨단기술산업은 −28.7%, 중간기술산업은 −11.3%인 데 반해 재래기술산업의 고용은 2.8% 증가하였다.[25)]

일시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산업별 수출비중의 차

25) 재래기술산업의 고용수준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0~91년 기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 韓國 製造業 내에서의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比重變化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
산 출	1980년	10.1	20.9	69.0
	1988년	18.4	27.3	54.3
	1993년	15.1	31.1	53.8
고 용	1980년	13.9	22.0	64.0
	1988년	18.7	27.0	54.3
	1993년	14.7	28.6	56.7
부가가치	1980년	12.0	21.1	66.9
	1988년	19.4	27.2	53.4
	1993년	18.4	29.0	52.6

註 : 위 수치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tape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7] 製造業 産出에 대한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比重變化(197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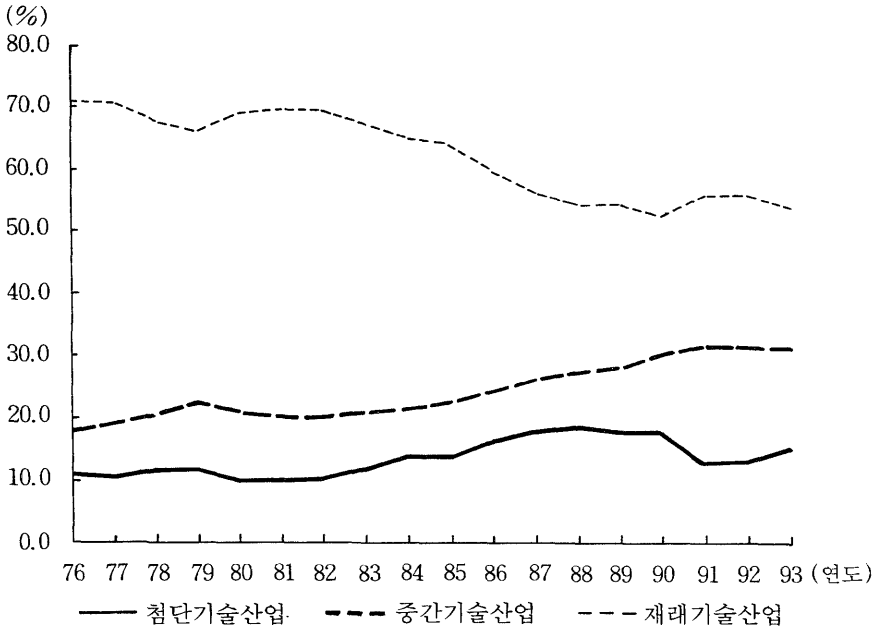

이 및 엔화가치의 변화가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그리고 성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90~91년은, 1986~88년간의 수출주도 고성장 그리고 1989년 엔/달러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격감과 성장둔화에 이어, 다시 내수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내수증대의 내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건설투자의 급증이었다.[26] 따라서 1990~91년간 건설관련 산업인 철강, 시멘트, 목재 등 재래기술산업의 산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졌고, 수출비중이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산업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1990~91년간 제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하는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이 각각 3.3%포인트, 4.0%포인트, 5.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일시적 역전현상은 1993년에 다시 반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4년에 수출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문제시되던 소위 '양극화현상'이라 불리는 산업부문간 경제성과의 현격한 대비현상은 어쩌면 이와 같은 역전현상의 재역전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가동률 변화에 따른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걸러내기 위해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고용, 산출, 부가가치수준의 3개년 이동평균 및 5개년 이동평균을 각각 계산한 다음 각 산업의 비중변화를 보았다. 결과는 1990년 이후 첨단기술산업의 비중감소,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증가 추세가 그 정도가 보다 완만하기는 하지만 199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은 고용수준의 3개년 이동평균치를 계산한 후 그 비중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9]는 부가가치 생산수준의 5개년 이동

26) 건설투자는 1986~89년간 연평균 16.9%의 성장을 보이다가 1990년에는 전년대비 61.1%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주택투자는 1991년에도 13.0%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2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주택투자증가율은 −6.6%로 반전되었다.

[그림 8] 製造業 雇傭에 대한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比重變化 : 3個年 移動平均[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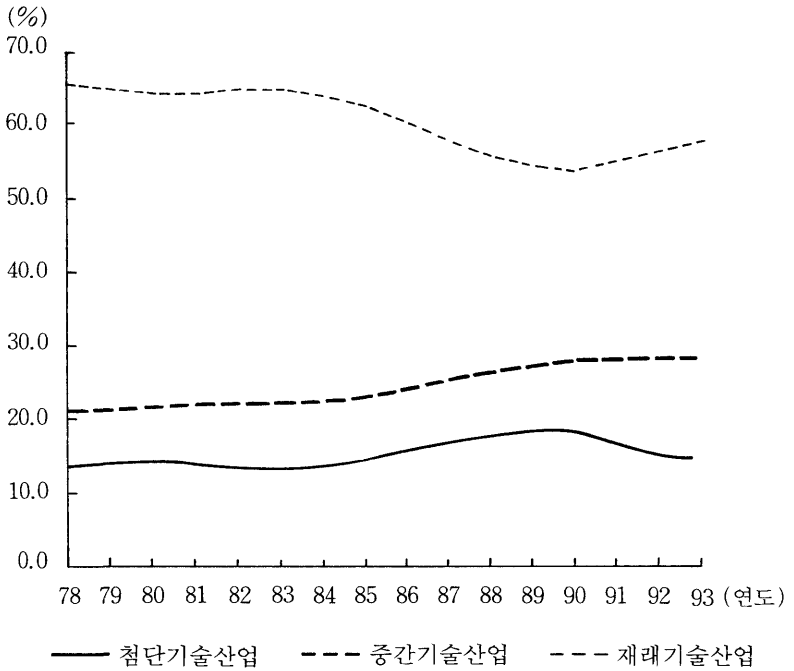

註 : 1) 제조업전체,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고용수준의 3개년 이동평균치를 구한 다음 각 산업의 고용비중을 계산하였음.

평균치를 계산한 후 그 비중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1995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3개년 이동평균치 혹은 5개년 이동평균치로 계산한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199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재래기술산업의 비중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5. 技術集約度와 勞動生産性 變化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도 높은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림 9] 製造業 附加價値에 대한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比重變化 : 5個年 移動平均[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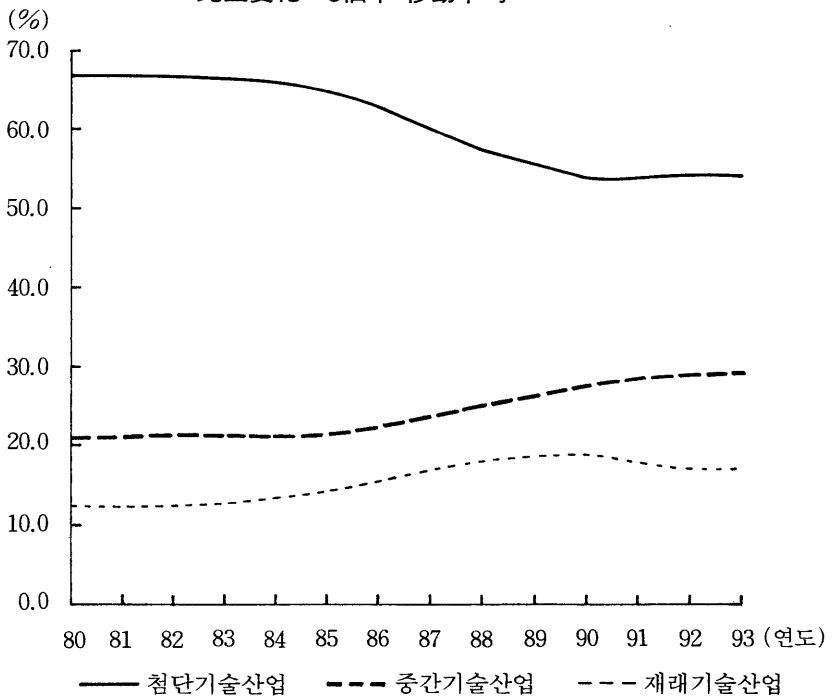

註 : 1) 제조업 전체, 첨단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부가가치수준의 5개년 이동평균치를 각각 구한 다음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하였음.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경제가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체로 긍정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1인당 실질부가가치생산으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의 수준이 1993년 현재 첨단기술산업이 가장 높고,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순서로 되어 있다.[27)] 그러나 1983년까지만 해도 재래기술산업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1983년부터

27) 대개 노동생산성은 1인당 실질부가가치생산 혹은 1인당 실질산출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지표를 노동의 효율성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장비율, 가동률, 기술변화 등의 요인이 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10]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勞動生産性[1](197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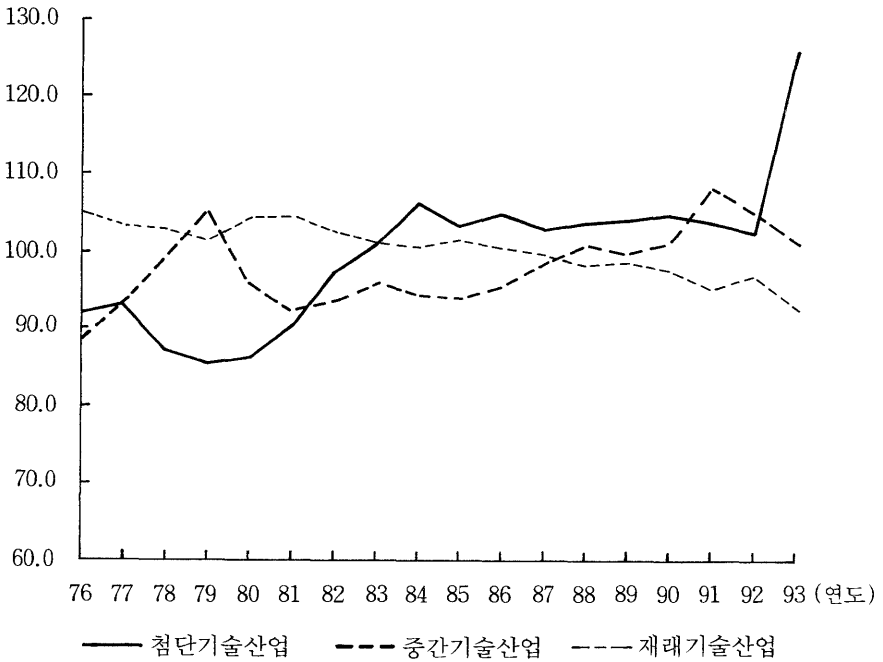

註 : 1) 제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변화임.

첨단기술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부터는 재래기술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전체의 평균노동생산성 이하로 떨어졌다. 중간기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이후 제조업 평균노동생산성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를 보면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1976년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76~93년간 첨단기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6.9배, 중간기술산업은 5.8배, 재래기술산업은 4.5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1993년 제조업전체의 노동생산성은 1976년에 비해 5.1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1]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勞動生産性 增加速度[1)]
(197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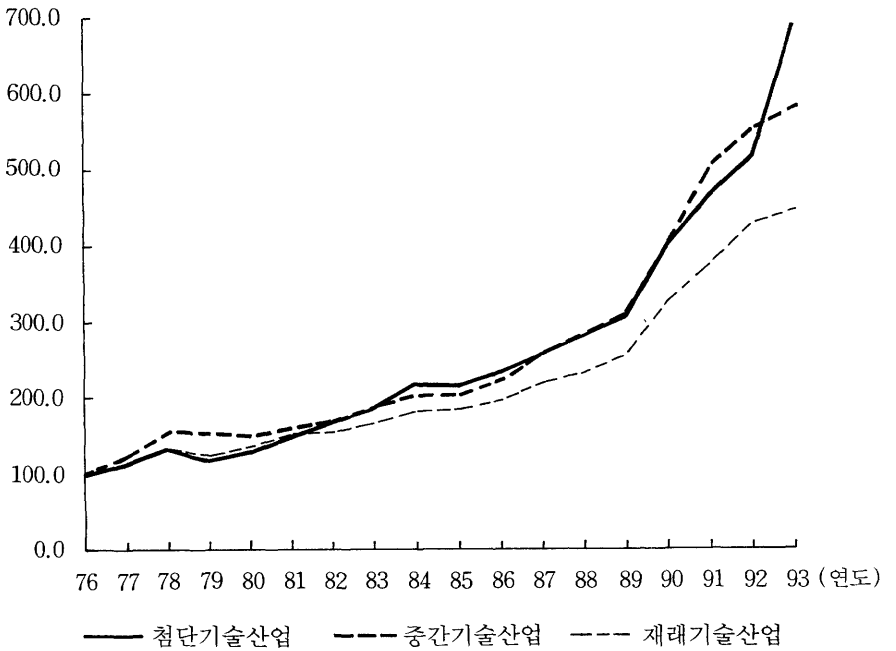

註 : 1) 1976년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변화임.

비교시점을 1976년으로 한 것은 1976년은 한국의 거시경제가 대체로 장기성장 추세선 위에 놓여 있어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교시점을 1980년, 1985년, 1990년 등으로 다르게 잡아 보더라도 기술집약도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속도의 차이에 관한 위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집약도의 차이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199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1~93년간의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20.4%에 이르고 있으나 재래기술산업은 11.2%에 그치고 있다.

이제 단위노동비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단위노동비용은 1단

위의 산출에 드는 노동비용으로 정의되며 이것은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급여총액을 실질산출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산업 i의 단위노동비용 ULC_i은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ULC_i = (w_i L_i) / y_i = \{w_i / (y_i / L_i)\}$$

위의 식에서 w_i는 산업 i의 평균명목임금, L_i은 산업 i의 취업자수, y_i는 산업 i의 실질산출이다. 단위노동비용은 결국 평균노동생산성 대비 평균명목임금의 비율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의 장기추세를 보면 명목임금비용의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해 얼마나 상쇄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1990~93년간의 단위노동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0.63%, 중간기술산업은 1.57%에 그치고 있으나 재래기술산업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3.38%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재래기술산업에서는 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의 상승이 타부문에 비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8]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부문간 성과의 극심한 대비현상, 소위 '양극화 현상'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산업별 단위노동비용의 수준을 보면 1976~93년간 1993년을 예외로 한다면 재래기술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1993년의 경우 재래기술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첨단기술산업의 단위노동비용보다 높다.

단위노동비용은 흔히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달러로 환산한 단위노동비용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6~93년간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4.72%이고, 1993년 제조업 전체의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수

28) 그러나 재래기술산업에서도 철강이나 비철금속 등 1차금속산업과 음식료품산업은 제조업평균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높고 단위노동비용은 낮다.

[그림 12] 製造業全體의 달러表示 單位勞動費用의 前年對比 增加率(197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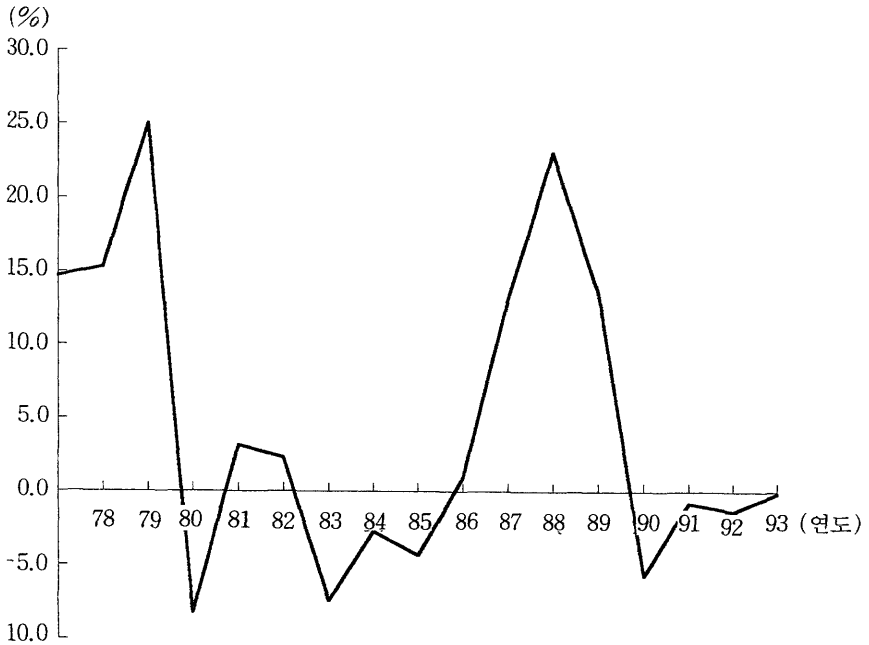

준은 1976년의 2.0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림 12]에서 보듯이 1977~79년, 1987~89년 두 기간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유난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두 기간동안 제조업 평균명목급여가 매우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인당 실질산출로 계산한 노동생산성이 이에 훨씬 못미쳤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977~79년 기간에는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따른 인력의 초과수요로 인하여 제조업 평균명목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이 33.0%에 이르렀고, 1987~89년간에는 호황과 민주화 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등으로 제조업 평균명목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이 20.2%로 매우 높았다.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속도는 재래기술산업에서 가장 빠르다. 즉

[그림 13] 尖端, 中間, 在來技術産業의 달러表示 單位勞動費用 增加趨勢(197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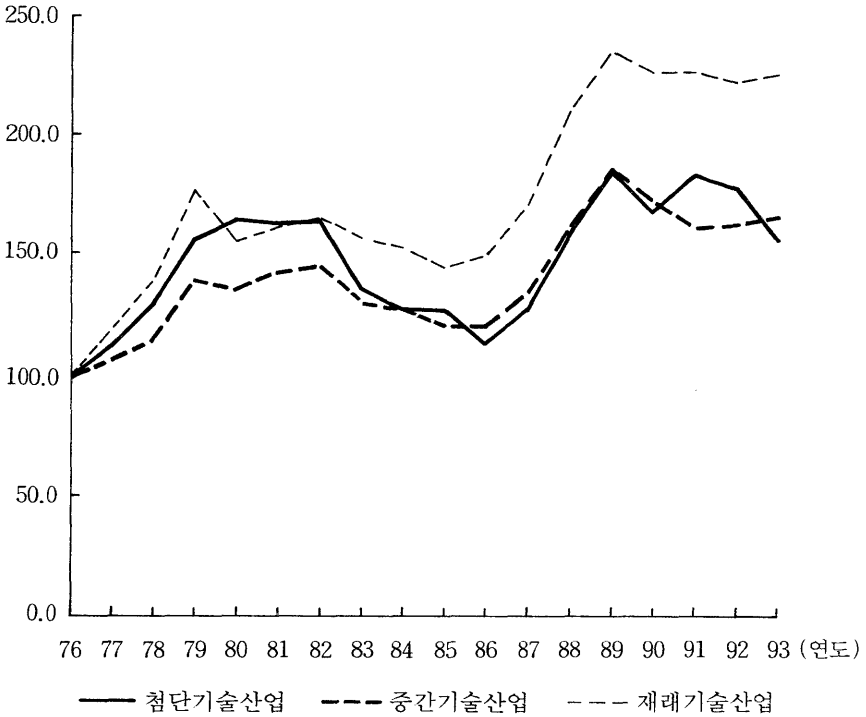

註 : 위의 수치는 1976년의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수준을 나타냄.

재래기술산업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비해 명목임금상승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은 1976년의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산업의 단위노동비용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976년 대비 1993년의 단위노동비용 수준은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154.9, 중간기술산업은 164.9, 재래기술산업은 225.5로 나타나고 있다.

Ⅳ. 要約 및 結論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G7 국가들을 보아도 첨단기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실은 교역이 활발할수록 경쟁이 치열하며 치열한 경쟁은 성과개선을 촉진한다는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의 수준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술집약도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구조고도화의 정도를 파악한 우리의 접근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수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할 때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첨단기술산업은 주로 수출산업이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제조업수출 중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산업별 연구개발집약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기술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집약도가 낮은 품목이나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OECD에 비해 더 고도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첨단기술산업수출의 대부분을 전자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과학기기, 항공산업의 수출비중은 아주 작다. 수출이 몇 개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출성과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특히 1996년의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

출성과의 악화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의 수출구조를 OECD와 비교할 때 중간기술산업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29] 한국의 경우 중간기술산업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들이며,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간기술산업이 가장 낮다.[30] 중간기술산업의 수입침투율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본재산업으로 불리는 일반기계산업, 소재산업의 대표격인 화학산업 등은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일본과 독일의 경제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간기술산업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반기계와 화학산업은 중간기술산업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부문이다.[31] 그런데 총무역액 대비 순수출비중인 무역특화계수가 이들 두 산업에서 특히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미래의 수출특화산업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래기술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래기술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재래기술산업 내에서의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산업내 분업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위노동비용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재래기술산업에서 더 많은

---

29) 중간기술산업이라고 해서 첨단기술산업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정의했듯이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으로의 분류는 연구개발집약도의 수준에 따른 것이지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것이 아님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30) 재래기술산업도 중간기술산업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내수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수출특화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비율은 출하액 중 수출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을 말하는데, 1993년의 중간기술산업의 내수비율은 79.8%, 재래기술산업의 내수비율은 78.1%이다.

31) 제조업전체의 무역수지는 1976~95년 기간동안 198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지속해 왔다.

합리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대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재래기술산업의 경우 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의 상승이 타부문에 비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부문과는 달리 재래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우리는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하였으며, 고기술산업일수록 해외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경쟁에 노출된 교역재 부문의 구조조정은 대체로 잘 이루어졌지만 비교역재부문의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32)]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다음의 두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해외경쟁 못지않은 국내경쟁을 유발·촉진함으로써 혁신노력을 자극하고, 둘째, 개별주체의 혁신노력이 상승효과를 촉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제도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적고 유연성이 커서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경쟁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판단이 개입된 정책조치가 자금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인수 및 합병

32) 앞으로 직접투자의 증대 및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과 더불어 서비스 등 비교역재 부문에서의 해외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교역재부문에 비해 교역재부문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에 대한 제한, 해고요건에 관한 규정의 명료성 부족 등 노동 및 자본시장에서의 퇴출장벽도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기업의 사업재구축을 방해하는 각종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진입제한도 상당한 경쟁제한 요소로 남아 있다.

각 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나 진입 및 퇴출장벽 때문에 지대추구의 기대수익률이 혁신활동의 기대수익률보다 높은 환경에서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였던 한국 정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부문 및 경제활동에 대해 지대를 창출하였고, 기업들은 지대를 추구하면서 성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발전단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경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약자보호는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경제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혁신능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가격기능의 원활한 작동(get prices right)'이다.

장기적인 조정과정의 대부분은 시장기능이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을 둘러싼 조직과 제도의 혁신이다. 조직과 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계획 없이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진화되어 갈 수 있다.[33] 그러나 이

33)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Hayek는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개인지식의 한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규정되지만 이러한 세계에서도 개인들의 분권화된 선택에 의해 일련의 사회적 관습과 제도가 형성되고 진화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계획 없이 자발적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러한 자발적 질서도 자연현상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은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의 분업 및 협업을 시도해야 한다.[34] 정부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조직과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각 시장의 거래비용 및 조직비용을 낮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생산비용 이외에 시장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기업내부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비용(costs of organizing)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간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를 찾는 비용, 거래성립을 위한 협상비용, 거래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강제하는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인허가를 얻기 위한 각종 비용,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낭비, 제도나 법률의 투명성 결여에 따른 추가적인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업외부와의 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외부의 제도적 장애 혹은 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내부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조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35]

---

34) 시장과의 분업이란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조직 및 제도를 의미하며, 시장과의 협업이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의미한다. 제도 및 조직은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35) 예를 들면 기업들은 단순노동인력의 고용을 인재파견업자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고용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 한국의 경우 인재파견업이 아직도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에 추가적인 조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법의 합리성 결여도 기업들의 조직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노사관계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환경으로 외부화되어야 할 요인들이 기업에 내부화되어 있거나 정부로 인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내고 거래비용절감을 위한 제도 및 조직혁신을 단행할 수 있어야 한다.[36]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혁신활동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 혁신능력을 결정하는 인적자본의 질과 효율적 기술혁신시스템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시장환경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7] 그런데 혁신활동에 필요한 인재와 효율적 혁신시스템은 혁신과정에서 양성 또는 형성된다. 혁신활동과 우수한 인적자원 및 효율적 기술혁신시스템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제도마련은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주요과제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인적자본배양, 혁신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운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기획, 관리 및 조정 면에서 보다 고도의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맞는 관료의 자질은 과거와는 다르다. 앞으로의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라기보다는 관련 관료들의 능력, 분석의 엄밀함, 시장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공통인식, 좁은 의미의 이기심은 간과할 수 있

36) 조직 및 제도혁신의 주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조직들을 포함한다.

37) 장기적으로 시장의 완전개방을 전제로 한다면 요소의 비용보다는 요소의 질이 문제가 된다. 기업들은 흔히 금리가 높아서 기업활동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율은 35%를 웃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이 격화되면 자금의 초과수요도 줄어들뿐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면 금리는 자연히 낮아질 것이다.

는 경제철학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혁신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능력개발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成素美, 『技術革新의 經濟分析: 革新의 經濟成果 提高를 위한 國家戰略의 摸索』, 연구총서 67, 한국개발연구원,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Blades, D., "Goods and Service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8, Spring 1987.

Fagerberg, J.,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Journal*, Vol. 98, 1988, pp. 355~374.

Guerrieri, P. and C. Milana, "Technological and Trade Competition in Hightech Produc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9, No. 1, 1995.

Hayek, Friedrich A. von., *Individualism and Social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Hughes, K., *Technology and Expor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OECD, *Structural Adju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1987.

———, *Economies in Transition: Structural Adjustment in OECD Countries,* 1989.

———,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Annual Review*

1992, 1992.

———, *Frascati Manual*(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incal Activities-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1980, 1993.

———, *Industry and Technology: Scoreboard of Indicators,* 1995.

Soete, L.,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The Evidence Reconsidered," *Research Policy,* Vol. 16, Nos. 2~4, 1987.

論 評

姜 哲 圭
(서울市立大學校)

이 글은 첨단산업의 수출증가율과 수입침투율이 높아 첨단산업이 한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70년대 이후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재래산업이나 중간산업에 비하여 첨단산업의 역할이 컸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체로 무난한 분석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이론 부문에서도 신성장이론(new development theory)은 이미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지식 혹은 기술을 포함시켜 그것이 한계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성장이론은 전통적인 성장이론이 외생변수로 여기던 기술진보를 내생화하고 그 방법으로 a. 학습을 통한 기술진보(learning by doing, P. Romer[1986] 등) b. 인적자본의 축적(Lucas[1988], Stokey [1990], Tamura[1991] 등) c. 연구개발투자(R&D)에 의한 기술진보(P.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89] 등)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물적자본의 투자확대, 인적자본의 투자확대, 그리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하게 되면 기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성장모형은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 있는 논문이라 여겨진다.

한국의 첨단산업이 성장을 선도하여 구조를 고도화시켰다는 명제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각국의 산업은

항상 첨단·중간·재래기술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첨단산업이 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의 자체가 이미 설명하고 있는 명제라고 할 수도 있다. 첨단이라는 뜻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말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탄력성이 높고 투자가치가 있는 부문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첨단산업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거나 기술집약적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명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이 명제만을 위한 분석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산업별, 기술별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이 다른 나라와 동질성을 가지는가 혹은 차별성을 가지는가 등에 관하여 설명이 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자도 논문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첨단산업이 OECD제국의 첨단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OECD 선진국의 산업과 한국의 산업이 병렬로 비교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상세하게 비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을 좀더 세분하여 한국의 산업구성과 선진국들의 산업구성이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같은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일본, 혹은 여타 선진국의 부가가치가 다르다는 엄연한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부각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전자산업이라 하여도 미국의 전자산업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자산업간에는 상품의 품목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이 가상현실(virtual realities)을 포함하여 그야말

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본은 그 다음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전산기나 프린터 인공지능에 의한 우편물 판독기 등을 중심산업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포함하지만 TV, VCR,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아직도 중심이다. 이렇게 주 상품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차이가 나고 기술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동시에 기술면에서의 차이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같은 상품이라 하여도 기술적 차이가 현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면 그것이 같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서 팔리더라도 한국반도체 기업과 일본, 미국의 반도체 기업간에는 부가가치가 다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생산공정면에서 볼 때 설계, 디자인, 기계, 소재생산, 부품생산, 가공조립기술 등 제 공정 중 한국의 첨단산업이 어느 부문에 특화하고 있으며 어느 부문의 기술이 우수하고 어느 부문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지를 밝히면 좋을 것이다. 가공조립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으나 설계, 디자인 등은 뒤떨어져 있다든지 기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왜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가 하면 같은 첨단산업이라 하여도 한국과 선진국과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을 위해서이다. 그러한 비교 없이 선진국과 동열에서 첨단·중간·재래산업을 비교하는 것은 자칫 오도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산업별 시계열 분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인과설명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각 시기마다 첨단산업이 재래 혹은 중간산업에 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검토하여 밝히면 좋을 것이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저자는 앞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

여, 첫째 해외경쟁 못지않은 국내경쟁을 촉진하여 혁신노력을 자극하고, 둘째 혁신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 및 제도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다. 경쟁촉진과 조직 및 제도혁신은 산업구조조정뿐 아니라 경제운영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산업구조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분류의 첨단산업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는 일반적 지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조정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산업, 어떠한 기술, 어떠한 수준의 부가가치, 국제분업 속에서의 위치 등에 관한 현상분석과 비전제시가 있어야 좀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그 자체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향후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朴 埈 卿

(本院 先任硏究委員)

產業政策에 관한 論議에서 持續可能한 成長經路(先進經濟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構造變化의 規則性)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必然的인 長期構造變化에 역행하는 診斷(兩極化, 產業空洞化 등에 대한 憂慮)과 處方(經濟力集中에 대한 規制, 中小企業의 保護)이 상당한 說得力이 있는 現實을 감안하면 이 論文은 長期構造變化에 대한 理解를 증진시키는 意義가 있다.

OECD 產業分類(尖端技術產業, 中間技術產業, 在來技術產業)에 의한 產業別指標(GDP · 雇傭 · 輸出入의 構成比, 生產性, 賃金, 單位勞動費用, 貿易收支, 貿易特化係數 등의 推移)를 이용하여

1970~94년간의 構造變化를 분석하고 國際比較를 통하여 産業調整의 成果를 평가하고 있다. 諸 指標가 보이는 構造變化의 樣態는 전반적으로 先進國의 構造變化過程에 공통된 規則性(stylized facts)과 부합하여 著者가 예상한 基本前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接近方法에서는 단순한 産業分類에 의한 分析이 지니는 情報에 한계가 있다는 指摘이 있을 수 있으며, 分析目的에 합당한 産業分類의 代案이 없다면 統計處理上의 技術的 問題 등 R&D 集約度에 의한 OECD의 産業分類를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分析結果의 解釋에서도 단순한 産業分類에 의한 分析의 限界를 감안하여 假說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

中間技術産業과 在來技術産業에서도 OECD 13個國과 비교하여 상당한 技術隔差가 상존한다. 高技術分野(中間技術分野 포함)의 機械類·部品·素材를 輸入에 의존하고 있어서 中間技術産業에서 技術隔差의 縮小를 위한 技術開發投資로 R&D 集約度가 OECD 13個國보다 높을 수 있으며, 尖端技術産業에서는 低附價活動이 점하는 비중이 OECD 13個國보다 높아서 R&D 集約度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R&D 集約度를 기준으로 분류한 産業群의 內部에서 달러표시 賃金에 의한 雇傭構造나 國際價格에 의한 商品構成의 國際比較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統計資料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分析結果의 解釋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R&D의 世界化가 진전되고 아시아地域에서 産業內 分業이 확대되는 추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輸出構造의 變化(尖端技術産業의 輸出比重은 增加, 在來技術産業의 輸出比重은 감소, 中間技術産業의 輸出比重은 OECD보다 낮으나 貿易特化係數가 상향세)에 의하여 産業調整의 成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는 勞動生産性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在來技術産業으로부터 國際競爭에 의하

여 革新이 촉발되는 尖端技術產業으로 資源再配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國際競爭에 노출되는 交易財部門의 비중(GNP對比 輸出入比重과 製造業比重)이 감소하고 非交易財部門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革新成果의 低下와 構造高度化의 遲延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革新에 의한 構造高度化가 반드시 상당한 輸出比重과 製造業比重의 維持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부문이 國際競爭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構造高度化는 產業全般에서 知識集約化가 진전됨을 의미한다. 在來技術產業과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全產業에서 知識集約的 高附價活動의 비중이 증가하고 低附價活動은 低賃金 地域으로 이전되어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高附價活動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GDP에서 점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고부가활동의 비중이 낮은 산업은 비중이 감소하며, 이 결과 제조업과 수출의 비중은 감소할 수도 있다. 輸入에 의존하던 高技術分野 資本財·中間財의 輸出產業化가 진전되어 GNP대비 수입비중이 감소하고 이러한 輸入減少가 低附價 消費財의 輸入增加를 상회하면 輸出入이 GNP에서 점하는 비중은 저하된다. 서비스부문은 直接投資를 통하여 內外市場에서 國際競爭에 노출된다. 商品輸出入에 직접적 관련은 적으나 直接投資를 통한 知識·技術의 輸出로 外貨獲得에 기여한다. 특히 國內市場의 開放으로 서비스부문에서 外國人投資에 대한 規制가 완화되어 국제경쟁이 국내기업의 혁신을 촉발할 것이다.

企業集團의 現況과 特徵：
比重 · 市場地位 · 多邊化 · 所有構造

李 在 亨

(本院 專門研究員)

* 필자는 본 연구에 있어서 통계자료작성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통계청의 변효섭 서기관, 김성일 씨, 공정거래위원회의 박귀찬 사무관, 김정기 사무관,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임영재 박사 및 동아대 박병형 교수, 원고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승진 주임연구원 및 김현애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要　　約◇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I. 序　　論

기업집단(소위 '재벌')은 우리나라 산업의 진화과정과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산업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개발연대 이후 "수출입국", "중화학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산업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기업집단이 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한국산업발전의 역사가 곧 기업집단의 역사이기도 했으며, 기업집단의 변신과정이 바로 한국산업의 발전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의 생성·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특징들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경제력집중 문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 끊임없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기업집단을 보는 시각도 정경유착, 특혜, 부동산투기, 폐쇄적·집단적인 소유·경영체계 등 성장과정과 경영행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수출증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의 발전 등 기업집단이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과거의 특혜·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측면이 오늘의 기업집단을 있게 한 충분조건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우리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모두 기업집단의 공로로 돌리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다. 기업집단은 여타 기업에 비해 한걸음 빨리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에 편승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여 왔고,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지 못한 기업집단들은 도태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욕

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집단의 참여 없이는 의도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많은 지원·육성정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산업정책적 방향에 순응한 기업집단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기업집단의 성장과정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친 득실이 어떠하였든, 현재 우리의 산업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기업집단의 존재는 '현실'이며, 이 기업집단 문제는 거의 모든 산업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이란 말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로서, 이보다는 오히려 '財閥'이라는 말이 학계나 일반인들에게 좀더 친숙한 개념일 것이다. '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어딘지 좀 무미건조하며 가치판단을 일체 배제한 딱딱한 말이라면, '재벌'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함축적으로 응축한 좀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과 재벌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인[1)]이

1) 동일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으며, 회사일 수도 있다. 동일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운데 당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및 동일인 혹은 이들 친인척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조합,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 동일인의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중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동일인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의 순위가 1~30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2)]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戰前의 일본 재벌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재벌을 "독점자본 내지는 금융자본"으로 정의하였고, 또 일부학자들은 "持株關係를 통하여 횡단적으로 지배하는 기업형태, 즉 콘체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森川英正(1978)은 기업집단을 "부호의 가족·동족의 폐쇄적인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인 사업경영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벌(혹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변형윤(1975), Jones and Sagong(1980), 李奎億·李成舜(1985), 服部(1986), 鄭求鉉(1987), 유상진·이상문(1987), 김석기(1987), 趙東成(1990), 姜哲圭·崔廷杓·張志祥(1991), Fields(1991), 孔柄淏(1995) 등이 각각 나름대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3)]

이들 정의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운데는 기업집단 자체의 특징보다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속성은 ① 거대 기업집단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②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그들 계열기업이 개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③ 계열기업간 복잡한 지분관계와 기업집단 총수 및 가족의 소유지분에 의한 기업소유의 집중이 높다는 점, ④ 계열기업간 통합적 경영구조 및 집단적·협조적·상호의존적 기업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

2)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姜明憲(1995).

본고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앞의 세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기업집단의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업집단의 비중과 특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기업집단의 시장력, 다변화, 소유구조의 특징을 개관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기업집단의 규모 및 시장성과가 시장 및 생산구조 변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企業集團의 比重

1. 産業構造의 變化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집단의 성장은 산업발전 및 구조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뒤에서 논의할 기업집단의 성장추이 및 현황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 구성비의 변화와 각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을 경상가격기준으로 보면,[4]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제1차산업부문(농림어업 및 광업)의 급속한 비중감소와 건설업 및 금융·서비스업의 비중증대일 것이다. 이는 경제의 서비스

4)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불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타당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각종 통계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의 편의를 위해 경상가격을 채택하였다.

화·소프트화라는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는 1983~88년간에는 비중이 늘어났으나, 1988~94년간에는 비중이 5.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광공업통계를 통해 사업체[5] 규모별 광공업부문의 구조변화를 보면, 1983~94년간 종업원수 100인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체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 데 비하여, 중·대규모 사업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종업원수 500인이상의 사업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산업의 성장은 기업수의 증가에 의한 부분과 기업규모의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1+\Delta S) = (1+\Delta N)\times[(1+\Delta S)/(1+\Delta N)]$$

(ΔN과 ΔS는 각각 사업체수 및 출하액 증가율을 나타내며, 따라서 $(1+\Delta S)$=총출하액 증가배수, $(1+\Delta N)$=사업체수 증가배수, $[(1+\Delta S)/(1+\Delta N)]$=사업체당 출하액 증가배수가 된다.)

의 항등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광공업부문의 성장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83~94년간 광공업부문은 출하액 기준으로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사업체수 증가에 의해 기인된 부분과 사업체당 출하증가에 의한 부분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런데 사업체규모별 사업체당 출하액증가율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데 비해 사업체수는 중소규모의 사업체일수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광공업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이다.

---

5) 사업체(establishment)란 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제조업의 경우 '공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한 개의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광공업통계에서는 사업체를 조사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표 1〉 事業體 規模別 成長要因

(단위 : 연평균증가율, %)

	총출하액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당출하액증가율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5~ 9인	19.0	32.8	26.3	5.1	12.9	9.2	13.2	17.6	15.7
10~ 19인	23.8	25.7	24.8	10.6	7.6	9.0	11.9	16.8	14.5
20~ 49인	26.1	20.6	23.1	12.3	3.0	7.1	12.3	17.1	14.9
50~ 99인	21.2	16.1	18.4	8.3	-0.3	3.5	11.9	21.6	14.4
100~199인	20.6	13.6	16.7	6.9	-3.4	1.1	12.8	17.6	15.4
200~299인	12.1	14.9	13.6	1.7	-2.7	-0.7	10.2	18.1	14.4
300~499인	17.2	9.7	13.0	5.3	-6.5	-1.3	11.3	17.3	14.5
500인이상	15.2	11.5	13.2	4.5	-5.8	-1.2	13.5	18.4	14.6
제조업전체	17.2	14.2	15.5	8.5	7.0	7.7	8.0	6.7	7.2

資料 : 통계청, 『산업센서스보고서』, 각년도 및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로부터 계산.

이 표에서 또 한가지 알 수 있는 점은 1983~88년간과 1988~94년간의 광공업부문 성장패턴이다. 1983~88년간은 3저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 호황의 시기였으나, 1988~94년간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시기였다. 호황기에는 특히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수가 급격히 늘어나 성장이 가속되지만, 침체기에는 사업체수 증가의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경제력집중 변화추세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상이다. 즉 기업집단 계열사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하여, 호·불황에 따라 산업전체의 사업체수의 변화에 의해 광공업부문 전체 출하액이 크게 변화됨으로써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6)]

〈부표 1〉과 〈부표 2〉에는 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산업별로

6) 이에 관해서는 李在亨·劉承旻(1994)에서도 1970~88년간의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광공업부문의 구조와 성장패턴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이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두 표에서 광공업부문의 성장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30)",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3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2)",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33)",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등 고기술부문의 성장이 현저하고, 이들 부문에서는 특히 사업체수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企業集團의 比重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단순한 의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예컨대, 국민총생산 혹은 국내총생산)에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몇차례 추계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司空壹(1980)은 1978년의 30대기업집단의 대GNP비중을 약 17.1%로 추계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1992년의 경우 30대기업집단이 국민총산출의 32.2%, GNP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7)8)] 또한 李奎億·李成舜(1985)은 1982년의 국세청 법인세자료

7) 30대재벌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司空壹(1980)과 韓國經濟研究院의 추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司空壹 추계		韓國經濟研究院 추계			
	1973	1978	1982	1985	1990	1992
30대재벌총매출액/국민총산출	-	-	28.5	29.7	28.5	32.2
30대재벌부가가치/국민총생산	9.8	17.1	7.3	10.6	10.7	11.9

8) 이러한 추세는 대개 재벌계열기업의 부가가치 내지는 총생산액(혹은 매출액)을 구하고 이를 GNP 등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구해진 숫자인데, 분모가 되는 GNP가 추계에 의한 통계이므로 이를 통해 계산된 숫자의 절대치 자체

〈표 2〉 鑛工業部門 30大企業集團의 比重(1994)

(단위 : %)

기업집단계층	출하액	종업원수	자산액	부가가치
상위 5위	24.6	11.1	25.6	24.0
상위10위	32.1	13.7	35.1	30.2
상위15위	35.0	15.2	39.8	32.7
상위20위	36.8	16.2	41.3	34.1
상위25위	38.3	17.0	43.0	35.7
상위30위	39.6	17.7	45.0	36.9

를 이용하여 30대기업집단이 총법인기업 자산의 18.5%, 매출액의 39.8%를 차지한다고 계산한 바 있다.

〈표 2〉에는 1994년 광공업부문에서 30대기업집단[9]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30대기업집단은 1994년 현재 광공업 총출하액의 39.6%, 자산의 45.0%, 부가가치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17.7%로 여타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집단 계열사업체의 경우 규모가 크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장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대체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화학, 기계, 전자, 운송장비 등의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고용집중률이 낮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는 1977~94년간 광공업부문의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30대기업집단의 점유율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1977~82년간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된 숫자라면 변화추세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9) 광공업부문 30대기업집단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지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위 집단의 경우 어떠한 기준을 택하더라도 다소간의 순위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 자료에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양자의 기준에 의해 30대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집단 구성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鑛工業部門 30大企業集團의 比重變化 推移(出荷額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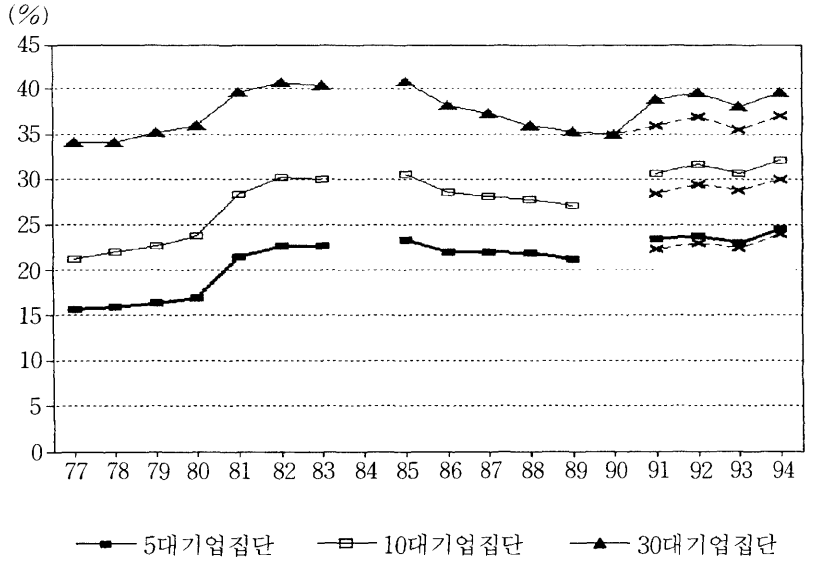

註 : 1991년 이후의 점선부분은 과거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추세임.

다가, 1982~85년간은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후 1990년까지 그 비중은 급속히 낮아졌으나, 1991년에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한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1981년과 1991년 양년도에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이 갑자기 상승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돌출변수로 인한 것이다. 즉 1981년의 경우는 당시 국내 최대의 제조업체로서 광공업부문 전체 매출액의 약 4%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던 유공이 민영화되어 30대 집단의 계열기업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며,[10] 1991년의 경우는 30

10) 1981년에 선경이 유공을 인수함에 따라, 출하액 기준으로 10위권에 머물던 선경이 일약 제1위 기업집단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선경의 순위는 몇년간 유지되었다.

대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인을 제거한다면, 30대기업집단의 비중은 '1977~81년=다소 증대, 1981~85년=현상유지, 1985~90년=급격한 하락, 1990~94년= 근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1970년대 후반 이후 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여 이 그림을 보면 경기와 기업집단의 비중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의 석유위기 이후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경기가 침체기에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유례가 없는 활황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그림 1]과 비교한다면, '호황기=기업집단비중 감소, 침체기·안정기=기업집단비중 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장기 내지 호황기에는 수많은 중소규모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활동에 의해 성장이 선도됨으로써 기업집단의 비중이 낮아지다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상위 5대기업집단의 동향과 경제력집중간의 관계라 할 것이다. 30대기업집단의 점유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 5대기업집단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30대기업집단 가운데 상위 5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하위기업집단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력집중의 문제도 실상은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0대기업집단내 규모격차의 확대는 〈표 3〉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표에는 전산업 및 광공업부문에 있어 30대기업집단 중 상위 5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

〈표 3〉 企業集團間 規模隔差(賣出額 基準)

(단위 : %, 배)

	전산업[1]		광공업부문[2]	
	30大 중 5大비중	(상위5대)/(하위5대)	30大 중 5大비중	(상위5대)/(하위5대)
77			46.0	7.1
82	56.5	16.0	55.5	11.9
88			60.8	15.6
92	64.4	20.5	59.7	17.2
94			62.1	18.6
95	66.5	32.8[3]		

註 :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자산기준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규모격차임.
2) 광공업부문 출하액기준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함.
3) 불과 3년간에 상하위 기업집단간의 격차가 갑자기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서 오는 매출액과 자산규모간의 불일치, 하위 기업집단의 구성의 변화에 따른 업종구성의 변화 등에 의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 숫자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집단의 평균적인 규모격차가 나타나 있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982~95년간 30대기업집단 중 상위 5대기업집단의 비중은 약 10%포인트 높아졌으며,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집단간의 평균격차도 16배에서 32.8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공업부문에 국한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77년의 경우 상위 5대기업집단과 하위 5대기업집단간의 격차는 약 7배 정도였으나, 1994년에는 약 19배로 확대되었다.

3. 産業構造와 企業集團

30대기업집단의 산업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기업집단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에는 광공업부문의 30

[그림 2] 鑛工業部門 中分類産業別 30大企業集團의 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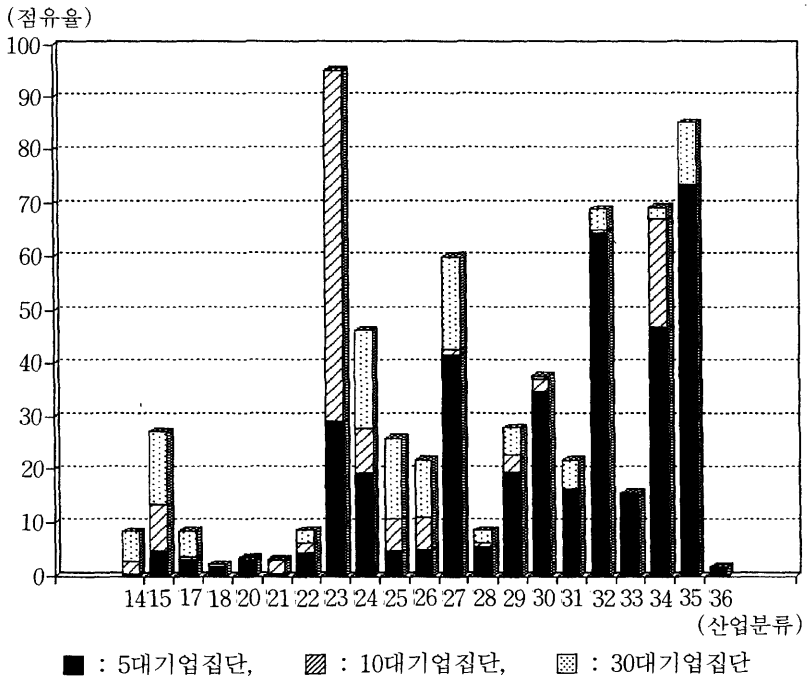

註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산업 번호별 산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14 기타광업, 15 음식료품,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N. E. C,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대기업집단의 산업중분류별 비중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0대기업집단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23), 화합물 및 화학제품(24), 제1차금속(2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2),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기타운송장비(35) 등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시장규모가 클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이 영위업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산업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활력을 보이며 성장해 온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 외의 기업집단들은 음식료품, 석유, 화학, 비금속광물제품 등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비교적 침체되어 있는 장치산업 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기업집단의 성장이 빨랐던 것은 이러한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하튼 상위기업집단이 대거 진출한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산업계에 있어서도 큰 활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거대하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생존해 나가기 어렵다. 이들 산업에서의 하위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개발력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산업상의 특징에서 기인된 면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광공업부문은 모두 603개의 세세분류산업으로 분류된다.[11] 이들 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표 4〉에서 보듯이 출하액기준으로 산업규모가 1조원 미만인 산업이 54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1조원 이상인 산업은 6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규모산업이 광공업 전체 출하액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기업집단의 진출이 두드러져, 산업규모가 2조원 이상인 26개 산업 가운데 25개 산업에

11) 1994년 현재 1개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이다.

〈표 4〉 産業規模와 企業集團(1994)

(단위 : 개, 10억원, %)

산업규모	산업수			출하액		
	총산업수	5대집단참여	30대집단참여	산업총출하	5대집단점유율	30대집단점유율
1,000억원 미만	249	2	20	8,969(3.0)	0.7	5.4
1,000억~5,000억원	227	22	77	55,679(18.7)	3.6	10.9
5,000억~1조원	64	25	45	46,492(15.6)	10.4	21.6
1조~2조원	37	19	31	49,241(16.5)	15.6	29.0
2조원 이상	26	23	25	137,463(46.2)	42.7	63.3

註 : 1) ( ) 안의 숫자는 제조업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산업수는 세세분류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임.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 30대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63.3%에 이르고 있다. 반면 출하액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산업에서는 총 249개 산업 중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20개에 불과하며 출하액 비중도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을 요약하면, 상위기업집단일수록 ① 규모가 큰 산업, ② 성장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기업집단 역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Ⅲ. 企業集團의 市場地位 · 多邊化 · 所有構造

1. 企業集團과 一般集中

일반집중이란 한나라의 경제에서 소수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집단과

같은 기업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제전체의 집중도를 계측할 때는 일반집중도를 채택하나, 소유집중, 집단적 경영체계 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의 일반집중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다지 심각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규모 합병붐이 나타났을 때, 소수기업으로의 힘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클레이턴법 7조의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저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예에서 보듯이 이 자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가의 100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일반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1994년, 광공업의 38.7%) 일본(1980년, 제조업의 26.0%)에 비해 높지만, 미국(1980년, 제조업의 48.0%)이나 서구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일반집중도의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구조의 차이, 국가경제규모의 차이 등에서 오는 측면이 크므로 직접 비교하는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서구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일반집중이 높은 것은 산업발전의 역사와 기업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12)]

우리나라 광공업부문의 일반집중의 현황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광공업부문의 상위 100대기업은 1994년의 경우 출하액 기준으로는 38.7%, 고용기준으로는 17.6%를 차지하고 있다. 100대기업의 구성을 보면 독립기업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3개의 기업이

12) 우리나라나 일본기업의 경우 산업발전의 역사가 구미에 비해 훨씬 짧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단기간에 생산의 전부분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기술·자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원자재생산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수직적인 생산의 여러 과정에 계열화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및 일본의 기업들은 서구기업에 비해 내제율이 낮아 동일한 규모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직접 비교한다면, 서구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나 일본의 일반집중도가 낮은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표 5〉 鑛工業部門의 一般集中과 企業集團(1994)

기업구분	출하점유율(%)	고용점유율(%)	30대집단계열기업수
상위50대기업	31.8	13.8	49개
상위100대기업	38.7	17.6	83개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다. 상위 50대기업의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집중이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다른 한 측면인 것인다.

일반집중도는 출하액이나 고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7년에는 100대기업의 출하액점유율 및 고용점유율이 각각 44.9% 및 23.9%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각각 38.7%와 17.6%로 되었다. 이는 그동안 산업저변의 확대로 기업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기업수에서 10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2. 企業集團의 市場地位

기업집단과 독과점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에서 30대기업집단이 갖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은 개별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광공업부문에서는 1994년 현재 모두 3,168개의 품목[13]이 출하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을 시장구조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 3사점유율이 30% 미만인 경쟁형 시장은 전체의 7.5%

1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단위분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의 구분은 제조업의 경우 대개 품목분류에 따라 설정된다.

〈표 6〉 鑛工業部門의 品目別 市場構造(1994)

(단위 : 개)

시장구조구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경쟁형	59 (2.7)	57 (15.6)	101 (20.2)	22 (20.2)	239 (7.5)
저위집중형	264 (12.0)	89 (24.4)	118 (23.6)	18 (16.5)	489 (15.4)
중위집중형	391 (17.8)	73 (20.0)	103 (20.6)	15 (13.8)	582 (18.4)
고위집중형	1,198 (54.6)	139 (38.1)	173 (34.5)	52 (47.7)	1,562 (49.3)
완전독점형	281 (12.8)	7 (1.9)	6 (1.2)	2 (1.8)	296 (9.4)
계	2,193(100.0)	365(100.0)	501(100.0)	109(100.0)	3,618(100.0)

註 : ( ) 안의 숫자는 품목수 비중(%)이며, 시장구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경쟁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인 시장
- 저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시장
- 중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70% 미만인 시장
- 고위집중형: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되, 완전독점형을 제외
- 완전독점형: 1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시장

에 불과한 239개에 지나지 않는 반면, 58.7%에 해당하는 품목이 상위 3사점유율 75% 이상인 고위집중형 및 완전독점형시장에 속해 있으며, 특히 완전독점형 시장도 296개나 된다.

품목을 시장규모별로 분류해 보면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많고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집중도가 낮은 품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시장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경쟁형 시장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며, 고위집중형 내지는 완전독점형 시장이 6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장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품목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20.2%와 49.5%로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출하액 500억~5,000억원의 중규모 시장이 대규모 시장에 비해 오히려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집단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데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7〉 品目市場에서의 30大企業集團의 市場占有率(1994)

(단위 : 개)

30대집단시장 점유율 합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10% 미만	51 (2.3) (0.5)	39 (10.7) (1.0)	85 (17.0) (6.6)	13 (11.9) (4.6)	188 (5.9) (12.8)
10~30%	56 (2.6) (0.5)	31 (8.5) (0.8)	72 (14.4) (6.1)	14 (12.8) (6.4)	173 (5.5) (13.9)
30~50%	42 (1.9) (0.3)	23 (6.3) (0.6)	55 (11.0) (4.4)	13 (11.9) (3.5)	133 (4.2) (8.9)
50~70%	38 (1.7) (0.3)	25 (6.8) (0.6)	45 (9.0) (3.6)	8 (7.3) (2.1)	116 (3.7) (6.6)
70% 이상	101 (4.6) (0.7)	41 (11.2) (1.0)	97 (19.4) (7.8)	47 (43.1) (22.7)	286 (9.0) (32.1)
소 계	288 (13.1) (2.3)	159 (43.6) (4.0)	354 (70.7) (28.5)	95 (87.2) (39.3)	896 (28.3) (74.3)
비참여품목	1,905 (86.9) (7.4)	206 (56.4) (5.1)	147 (29.3) (8.8)	14 (12.8) (4.4)	2,272 (71.7) (25.8)
합 계	2,193(100.0) (9.7)	365(100.0) (9.2)	501(100.0) (37.4)	109(100.0) (43.8)	3,168(100.0) (100.0)
평균참여집단수	1.2	1.5	2.1	3.2	1.8

註 : ( ) 안의 숫자 중 상단은 당해 품목의 품목수 비중이며, 하단은 광공업부문 품목 총출하액(283.6조원) 중에서 당해 품목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7〉에는 시장규모별 30대기업집단의 참여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30대집단은 시장규모가 큰 품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하액 500억원 미만의 품목의 경우에는 총 2,193개 품목 중 13.1%에 해당하는 288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5,000억원 이상인 품목의 경우 87.2%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출하액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시장에서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다수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500억원 미만의 품목

〈표 8〉 市場規模別 企業集團의 市場地位

(단위 : 개)

기업집단계열 기업시장지위	500억원미만 품 목	500억~1,000억원 품 목	1,000억~5,000억원 품 목	5,000억원이상 품 목	합 계
1, 2, 3위	4 (1.4)	6 (3.8)	36 (10.2)	35 (36.8)	81 (9.0)
1, 2위	19 (6.6)	17 (10.7)	60 (16.9)	13 (13.7)	109 (12.2)
1위	161 (55.9)	67 (42.1)	122 (34.5)	25 (26.3)	375 (41.9)
2위 또는 3위	57 (19.8)	36 (22.6)	72 (20.3)	11 (11.6)	176 (19.6)
3위 밖	47 (16.3)	33 (20.8)	64 (18.1)	11 (11.6)	155 (17.3)
합 계	288(100.0)	159(100.0)	354(100.0)	95(100.0)	896(100. 0)

중 30대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는 시장당 평균 1.2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으나, 출하액 5,000억원 이상인 시장에는 시장당 평균 3.2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표 8〉은 품목시장에서의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시장지위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광공업부문의 3,168개 품목 중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은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89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65개 이상에서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시장점유율 1, 2, 3위가 모두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에 해당하는 품목시장도 81개(9.0%)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시장의 경우 이 비율은 36.8%에 이르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은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1위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고위집중형 시장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시장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다수 참여하여 이들이 시장에서 상위순위를 공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에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의 기업집단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시장 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는 다수의 기업집단이 동일시장에 참여하여 이들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企業集團의 多邊化

우리나라 상위기업집단이 가진 특징 중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많은 산업에 걸쳐 다변화(diversification)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일반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변화에 대해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데 반해, 기업은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집단이 다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혹은 전문화를 추구할 것인가는 기업집단 스스로의 경영방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대해 좋다, 나쁘다라는 일의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존 영위업종에 온존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에 소극적이던 기업집단들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기업능력을 벗어난 지나친 다변화로 인해 사라져 간 기업집단들도 적지 않다.

여기서는 다변화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30대기업집단의 다변화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표 9〉에서 보듯이 기업집단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수,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 엔트로피(entropy) 다변화지수 등 3가지를 통해서 30대기업집단의 다변화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14)]

14) 여기서 사용한 각종 다변화지수의 수식과 특성에 관해서는 [補論]에서 설명하였다.

〈표 9〉 企業集團의 多邊化(1994)

기업집단 계층	생산품목수 (평균)	주력산업 특화도[1]	엔트로피다변화지수[2]			(B)/(A) (%)
			총다변화 (A)	관련다변화 (B)	비관련다변화 (C)	
1~ 5	142	0.551	1.967	0.652	1.315	33.1
6~10	63	0.656	1.510	0.470	1.040	31.1
11~15	39	0.583	1.683	0.588	1.095	34.9
16~20	30	0.681	1.431	0.703	0.727	49.2
21~25	28	0.760	1.268	0.549	0.718	43.3
26~30	19	0.724	1.134	0.510	0.624	45.0

註 : 1)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출하액이 가장 큰 산업의 비중임.
2) 비관련다변화는 중분류산업에 걸친 다변화이며, 관련다변화는 중분류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다변화=관련다변화+비관련다변화)의 관계가 성립됨.

먼저 생산품목수를 보면, 상위 5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당 평균 142개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순위가 내려갈수록 생산품목수가 적어지고 있어 상위기업집단일수록 다변화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품목수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 상위 5대기업집단과 그 이하 기업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위기업집단일수록 생산품목수가 많은 만큼,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는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도는 약 55% 정도이나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 숫자는 커져 하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특화도는 약 7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다변화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기로 한다. 〈표 10〉에는 1991~94년간 5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집단규모와 베리지수(H)로 표시된 다변화지수간의 단순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정리되어 있다.[15] 이 표를 보면, 기업집단의 다변화

〈표 10〉 企業集團 規模와 多邊化간의 相關關係(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변화 (베리지수)				
	1991~94	1991	1992	1993	1994
기업집단순위	0.518	0.573	0.591	0.496	0.467
기업집단 출하액	0.387	0.454	0.429	0.384	0.331

註 : 위 상관계수는 모두 99%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

와 규모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16] 특히 기업집단 출하액으로 표시된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이를 서열화한 기업집단 순위와 좀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이후 기업집단규모와 다변화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추세적인 특성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현상에 불과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엔트로피(entropy) 다변화지수를 이용하면, 기업집단의 다변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에 의하더라도 상위기업집단의 다변화가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다변화지수는 상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1.97이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점차 낮아져, 하위 5대기업집단의 경우 1.3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17] 그런데 이를 관련산업 다변화와 비관련다변화로

15)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다변화의 척도로서 베리지수를 선택한 것은 〈표 9〉에서 사용한 주산업특화도가 다변화의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며, 엔트로피지수 역시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베리지수는 지수치 자체로부터 직감적으로 다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나, 다변화의 폭과 다변화된 생산품목의 규모분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베리지수의 수식과 특성에 대해서는 [補論]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상관계수가 갖는 본래적 특성상 계수치가 양변수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가는 말해 주지 못한다. 즉 지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상관관계가 높고,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상관관계가 낮은지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7)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단지 비교치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나누어 보면[18]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련다변화는 기업집단순위에 따른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비관련다변화는 상위기업집단일수록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다변화에서 관련다변화의 비율이 하위기업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위기업집단일수록 보다 넓은 산업범위에 걸쳐서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소유주 및 그 가족과 계열기업간 복잡한 자본연결관계로 기업소유의 집중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경제력집중이란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아마 이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소유집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관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도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한도의 제한 등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상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1987년부터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기준은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1993년부터 총자산기준으로 상위 30대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18) 비관련다변화는 이종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를, 관련다변화는 동종산업내에서 이루어진 다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중분류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를 비관련다변화, 동일한 중분류산업내에서 이루어진 다변화를 관련다변화로 정의하였다.

〈표 11〉 企業集團의 所有構造[1)]

(단위 : 억원, %)

	가족소유분[3)]	계열회사	내부지분율
83[2)]	17.2	40.0	57.2
87	14.7	32.5	46.2
89	14.8	30.0	44.8
90	14.3	31.3	45.7
91	14.1	32.9	47.0
92	12.6	33.5	46.0
93	10.3	33.1	43.4
94	9.7	33.1	42.7
95	10.5	32.8	43.3
96	10.3	33.8	44.1

註 : 1)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함.
2)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세청 법인세 자료에 의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3)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의 합계임.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30개로 한정된 1993년 이후 계열기업수는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다.

〈표 11〉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3]에서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최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지분은 크게 가족지분과 계열회사지분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가족지분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내부지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지분율의 현저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기존기업의 소유집중은 완화되더라도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비공개기업의 증자시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내부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그림 3] 企業集團 內部持分率의 變化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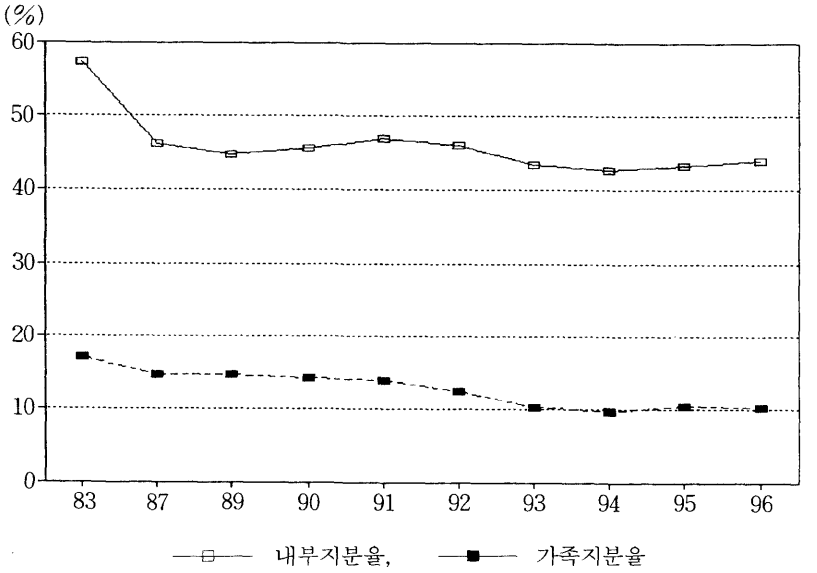

지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의 성장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족이라는 개인의 출자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가족소유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인 및 기관투자가 등 외부자들의 주식소유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공개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공개현황을 보면, 1994년 현재 5대집단의 경우 기업수로는 27.1%,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월등히 높은 62.5%가 공개되었으며, 30대집단 전체를 보더라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추세상으로 볼 때 공개기업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금의 비중은 상당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신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기업이므로 공개기업수가 계열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지만, 공개기업의 경우 우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금

〈표 12〉 企業集團 系列企業 公開現況

(단위 : 개, 억원)

	5대집단				30대집단			
	기업수기준		자본금기준		기업수기준		자본금기준	
	수	공개율(%)	금액	공개율(%)	수	공개율(%)	금액	공개율(%)
89	187	29.9	6,907	56.6	514	27.0	11,226	56.3
91					561	28.7	-	-
92	208	26.4	11,022	49.9	604	27.7	20,131	56.9
93	208	26.4	12,225	53.2	616	26.6	22,232	56.8
94	207	27.1	13,203	62.5	623	27.6	24,439	63.1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공개가 소유집중이라는 정책과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Ⅳ. 企業集團의 規模·成果·市場地位·多邊化간의 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1. 分析方法과 變數

앞의 Ⅱ장과 Ⅲ장에서는 횡단면적인 표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 그리고 기업집단의 시장력[19]과 다변화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30대기

19) 기업집단의 시장지위 혹은 시장점유율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업집단이 상당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다변화의 정도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력·다변화 등 시장활동과 관련된 변수와 자본장비율, 기업규모, 노동의 질 등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변수가 기업집단의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 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에(OLS) 의한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채택하기로 한다. 함수의 형태를 선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탄성치 불변을 전제로 하는 트랜스로그 함수(translog function) 등 비선형함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이 기업집단규모 및 성과, 시장구조, 생산구조간의 구체적인 함수관계가 아니라, 이들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단순한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이들 변수간에 어떠한 함수형태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선형함수를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1991~94년간의 상위 50대기업집단과 상위 200대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20] 기업집단 단위와 기업 단위로 각각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기업집단 단위의 분석과 별도로 기업 단위의 분석을 행한 것은 기업집단의 성과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기업의 성과의 합이며, 또 기업의 성과나 생산구조, 시장력 등은 사실상 개별기업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시도가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단위의 분석에 있어서는 30대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해 더미(dummy)변수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들 대기업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며, 또 30위 이내의 기업집

20) 상위 200대기업 중 자료가 불완전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실제 분석에 이용된 숫자는 1991년 198개, 1992년 198개, 1993년 150개, 1994년 157개가 된다.

단과 여타 기업집단간 기업경영을 특징짓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채택하지 않았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업집단 수준에서 계산된 수치이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업 수준에서 계산된 수치가 된다.

[종속변수: 성과지표]

$ES1 = S/E$: 종업원 1인당 출하액

$ES2 = S/PAY$: 임금단위당 출하액(PAY : 급여액)

[설명변수: 규모, 생산구조, 시장력 및 다변화 지표]

KL = (유형고정자산－토지)/종업원수 :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으로, 종업원 1인당 순수한 노동장비율을 나타낸다.

$PPAY$ = 종업원 1인당 급여로서, 노동의 질적 수준을 표시하는 대리변수로 채택하였다.[21)]

$SCALE$ = 기업집단의 총출하액(단위는 천억원)으로서 기업집단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GSHR = \sum_{i=1}^{n} w_i \cdot SR_{ik}$$

21) 급여가 노동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독점적 기업에 의해 얻어진 독점이윤이 노동에도 분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독과점적인 대기업이 우수인력을 선점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인이 복합되어 결과적으로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을 합쳐 '노동의 질'이라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측면은, 급여를 제외한다면 노동의 질을 측정할 보편성을 가진 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1인당 급여를 노동의 질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w_i=(기업집단의 i품목 매출액)/(기업집단 총매출액)

SR_{ik}=기업집단 k의 i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

: 기업집단의 품목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치로서, 가중치는 특정 기업집단의 총출하액 중 당해 시장 출하액의 비중이다. 특정 기업집단의 시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Hf = \sum_{i=1}^{n}\sum_{j=1}^{m} w_i \cdot (SR_{ij}^2 - SR_{ik}^2)$$

SR_{ij} : i시장에서의 j기업의 시장점유율

: 특정 기업집단이 참여한 시장의 허핀달지수[22)23)]에서 당해 기업집단의 기여치를 제거한 것으로, 당해 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DIV = 1 - \sum_{j=1}^{n} w_i^2$$

: 베리(Berry)지수로 표시된 기업집단의 다변화지표이다.

기업의 성과지표로는 출하액과 함께 부가가치도 자주 사용된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출하액을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

22)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의 가중평균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 = \sum_{i=1}^{n}\sum_{j=1}^{m} w_i \cdot SR_{ij}^2$$

단, w_i=(기업집단의 i품목 매출액)/(기업집단 총매출액)

23) 시장구조지수로서의 허핀달지수의 장점에 관해서는 李奎億(1976), 李奎億·李在亨·金周勳(1984), 崔載哲·李在亨(1988)을 참고하기 바란다. 허핀달지수가 상위 k사 집중률보다 우월한 집중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단지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24) 기업성과지표로서는 이전에는 Bain(1951, 1956) 등이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세전이익 혹은 세후이익 등의 지표를 사용했으나, 재무관련자료가 성과지표로서 갖는 한계로 인하여 Collins and Preston(1968, 1969)이 가격-비용 마진(PCM)을 성과지표로 채택한 이래 PCM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과지표로 자리를 잡았다. Collins and Preston은 PCM을 [매출액－변동비용－자본비용(기회비용＋감가상각비)]으로 계산했으나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을 무시하고 [매출액－변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광공업통계에서의 부가가치와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다(Schmalensee and Willig[1989]에서 인용).

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가가치도 일종의 규모변수로서 출하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든 실증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부가가치는 급여, 이윤, 감가상각비, 기타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급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사용된 *PPAY*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시장구조변수로서 기업집단의 특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GSHR*)과 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태의 시장구조(*Hf*)를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집단이 참여한 시장의 허핀달지수로 표시된 시장구조(*H*)와 각 시장에 있어서의 허핀달지수에 대한 기업집단의 기여치(*Hg*) 등을 고려하였으나, *GSHR*은 *H* 및 *Hg*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는 채택하지 않았다. *Hg*는 $(GSHR)^2$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당연하며, *GSHR*과 *H*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집단의 시장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것이다.[25]

다변화변수로서는 품목시장을 기본단위로 한 베리지수(Berry index)[26]로 표시된 다변화도(*DIV*)를 채택하였다. 베리지수를 선택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주산업특화도나 참여품목수 등은 기업집단의 다변화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엔트로피 다변화지수의 경우는 지수치가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

25) 崔載哲·李在亨(1988)에서는 1985년의 제조업부문 시장집중지수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H*)와 CR_k(상위 *k*사 시장점유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H*와 CR_1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고집중형이 많고, 또 기업집단은 Ⅲ장에서 보았듯이 높은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GSHR*과 *H*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6) [補論] 참조.

〈표 13〉 說明變數間 相關關係(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ALE	*KL*	*PPAY*	*GSHR*	*Hf*	*DIV*
SCALE	1.000	0.081	0.250	0.241	0.058	0.387
KL		1.000	0.410	0.168	0.050	0.165
PPAY			1.000	-0.077	0.251	0.234
GSHR				1.000	-0.189	-0.008
Hf					1.000	0.088
DIV						1.000

이 모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1~94년간의 50대기업집단에 관한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이 결과를 보면, *KL*과 *PPAY* 그리고 *SCALE*과 *DIV*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상관관계가 몇 개 변수를 제거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이 분석의 주안점이 특정의 함수식을 도출하기보다는 계수(coefficient)의 부호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모형에는 일단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음에 설명할 분석결과에서 설명력(R^2)이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시장구조지수 및 다변화지수의 계산은 품목분류(표준산업분류상의 8단위 분류)를 기본단위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의 구분이 표준산업분류상의 품목분류와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구조지수가 경쟁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시장을 기준으로 시장구조지수와 다변화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成果와 生産構造 · 市場力 · 多邊化간의 關係

"기업의 시장력과 다변화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산업조직이론에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과제였다.

시장력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시경제이론에서 경쟁시장에 비해 독점시장이 기업성과에는 플러스효과를 가져오지만, 배분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완전독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많은 시장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차이와 그로부터 기인된 기업의 시장력이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실증적 연구가 행해져 왔다. 산업조직론의 실증적 연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장구조-행동-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력과 성과간에는 正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었다.[27)]

이에 비해 다변화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범위의 경제' 개념, 위험분산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가장 큰 원인은 구체적인 기업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자료 제약상의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재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중 많은 부분도 이 다변화의 효과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시도한 바

27) Weiss(1974)는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46개의 구조-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중 40개에서 구조와 성과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정리하였다(Schmalensee and Willig[1989]에서 인용).

있던 업종전문화시책 등이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기업측에서는 다변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들어 다변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는 찾기 어려우며, 논리적 개연성이나 단편적인 일화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할 뿐이다.

다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다변화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번째는 다변화가 배분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시장지배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배분적 효율성의 저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적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다변화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성과와 배분적 효율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판단이 어렵다. 여기서는 다변화의 두가지 효과 중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선 생산구조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변수로는 종업원 1인당 장비율(*KL*), 노동자의 질(*PPAY*), 기업규모(*SCALE*)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시장력과 다변화의 정도를 보여 주는 변수로서 앞에서 설명한 *GSHR*, *Hf*와 *DIV*를 사용하였다. 이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4〉와 〈표 15〉에 요약되어 있다(표 14와 표 15는 각각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먼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성과변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든간에 노동장비율(*KL*)이 기업(집단)의 성과와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가진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한편, 종업원 1인당 급여(*PPAY*)는 1인당 매출액으로 표시된 성과지표(*ES*1)와는 전체연도에 걸쳐 正의 관계를 가지며, 그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급여를 반영한 성과지표, 즉 임금단위당 매출액(*ES*2)

〈표 14〉 企業集團 成果의 決定要因

종속변수	*ES*1	*ES*2	*ES*1	*ES*2	*ES*1	*ES*1	*ES*1
연도	91~94	91~94	94	94	93	92	91
표본수	200	200	50	50	50	50	50
상수항	48.391	15.191***	107.783	18.076**	198.267*	−36.561	20.733
	(0.975)	(4.306)	(0.725)	(2.070)	(1.700)	(−0.359)	(0.216)
KL	0.526***	0.036***	0.473***	0.028***	0.504***	0.645***	0.531***
	(8.163)	(7.940)	(3.752)	(3.757)	(3.797)	(4.368)	(3.607)
PPAY	10.472***	−0.141	10.463**	−0.165	7.481	(9.592)*	10.004*
	(5.160)	(−0.976)	(2.382)	(−0.638)	(1.267)	(1.960)	(1.832)
SCALE	0.290*	0.021*	0.180	0.011	0.551	0.109	0.320
	(1.706)	(1.714)	(0.574)	(0.591)	(1.464)	(0.288)	(0.809)
GSHR	−16.519	−0.802	66.689	5.649	−36.780	−4.045	−36.496
	(−0.430)	(−0.294)	(0.602)	(0.867)	(−0.442)	(−0.052)	(−0.534)
Hf	−23.290	−1.638	54.025	5.279	−49.593	−171.048	−135.489
	(−0.293)	(−0.290)	(0.368)	(0.611)	(−0.259)	(−0.968)	(−0.699)
DIV	−57.220	−3.356	−154.210	−8.362	−177.892*	68.953	3.607
	(−1.117)	(−0.921)	(−1.064)	(−0.982)	(−1.677)	(0.685)	(0.036)
R^2	0.473	0.281	0.446	0.291	0.388	0.500	0.440

註 : ( ) 안의 숫자는 *t*값임.
***, **, *는 각각 99%, 95%, 9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함.

〈표 15〉 企業成果의 決定要因

종속변수	*ES*1	*ES*2	*ES*1	*ES*2	*ES*1	*ES*1	*ES*1
연도	91~94	94	94	94	93	92	91
표본수	703	703	157	157	150	198	198
상수항	−58.401	13.400***	−157.351	9.215	−77.070	−115.169	−0.774
	(−1.266)	(4.926)	(−1.098)	(1.325)	(−0.622)	(−1.238)	(−0.011)
KL	0.620***	0.031***	0.756***	0.040***	0.704***	0.590***	1.148***
	(25.339)	(21.567)	(6.988)	(7.655)	(5.263)	(20.758)	(8.106)
PPAY	13.261***	−0.209	12.774***	−0.206	13.604**	18.850***	7.164
	(5.734)	(−1.532)	(2.481)	(−0.824)	(2.209)	(3.408)	(1.522)
SCALE	5.269***	0.346***	3.778**	0.197**	6.673	7.460***	5.422***
	(5.802)	(6.041)	(2.145)	(2.303)	(3.212)	(3.216)	(2.953)
GSHR	−39.686	−1.069	21.189	0.450	−62.604	−96.790	−43.292
	(−0.732)	(−0.334)	(0.141)	(0.062)	(−0.468)	(−0.956)	(−0.576)
Hf	154.657	10.019	118.919	8.468	245.190	172.117	158.194
	(1.456)	(1.599)	(0.532)	(0.781)	(0.989)	(0.753)	(0.939)
DIV	12.633	0.227	88.625	2.673	−12.450	29.275	−8.956
	(0.323)	(0.099)	(0.734)	(0.456)	(−0.136)	(0.384)	(−0.170)
R^2	0.551	0.432	0.360	0.325	0.301	0.734	0.417

註 : ( ) 안의 숫자는 *t*값임.
***, **, *는 각각 99%, 95%, 9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함.

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나, 그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 어느 쪽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규모(*SCALE*)와 성과간에는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규모는 일관되게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지표를 어느 것으로 택하든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기업집단의 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는 正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집단정책의 방향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시장력(*GSHR*) 및 비계열기업의 시장에서의 규모분포(*Hf*), 기업집단의 다변화(*DIV*) 등은 전반적으로 기업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SHR*은 기업집단 대상이나 개별기업 대상 모델에서 모두 1994년을 제외하고는 성과와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Hf*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대체로 성과와 부의 관계를 보이며,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정의 관계를 갖지만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화(*DIV*)는 연도에 따라 정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심한데,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계수(R^2)를 보면 전반적으로 횡단면분석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KL*과 *PPAY*간에 약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R^2가 과대

평가된 면이 적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모델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성과는 '많은 부분이' 노동장비율을 비롯한 생산구조변수에 의해 설명되며, 시장력 및 다변화 등의 변수는 성과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28]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① 기업(집단)의 성과는 많은 부분이 노동장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② 노동의 질도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비용을 상쇄한다면,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기업집단의 규모는 기업집단의 성과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이 모형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시장력,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기업의 분포 및 다변화는 성과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결론 ①, ②, ③은 일반적 결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④는 단지 이 논문에서 채택한 모형과 변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29] 따라

28) 이들 세 변수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설명력 역시 낮을 것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 세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R^2는 모두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29) 이 모델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는 결국 종업원당 혹은 임금단위당으로 표시된 생산성지표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업성과=경제적 의미의 이윤'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기업이 시장력 혹은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경쟁적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높은 초과이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기업의 출하액 혹은 부가가치와 비교할 때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석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로서의 출하액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부가가치, PCM 등의 성과지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력 혹은 다변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나타낼 변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업이윤과 함께 제세공과금, 임금·일반관리비 등에 스며들어 있는 '利潤性' 비용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풍부한

서 이 단계에서 결론 ④는 '제한적' 결론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Ⅳ. 要約 및 結語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30대 기업집단은 우리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비중은 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와 아울러 기업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절대적 비중문제로 축소시킨다면, 그 해소는 산업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는 점차 최상위 수개 기업집단의 문제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3) 기업집단들은 특히 규모가 큰 산업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위기업집단의 경우 성장이 빠른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의 참여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며, 중·하위 기업집단의 경우 시장규모는 크지만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선 산업에 주로 진출해 있다.

(4)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가 30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

자료 및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집중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또 다른 단면이다.

(5) 개별 상품시장에서 30대기업집단은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기업집단들이 상위지위를 다투며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6) 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및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상위기업집단은 하위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련다변화의 비중이 높다.

(7)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기업 효율성 혹은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변화 등의 효과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8)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의 규모는 성과와 밀접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9)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절대적 숫자로는 높은 편이지만, 근소하나마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소유지분의 비율하락이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0)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앞의 결론 (8)과 연결한다면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를 이용했으나마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다변화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기업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타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집단의 실상과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되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공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 및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또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필자 스스로 기업집단의 현황을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공업부문만이 아닌 산업 전부문에 걸친 기업집단의 비중과 사업활동상의 특징,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구체적인 자본적 연결구조와 특징, 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인적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과 생산물의 연결 및 의존구조,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 법·제도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미친 영향,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경영구조의 특징 등 여러 측면이 아직도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제력집중 및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서로의 논거를 확인할 경험적 증거를 갖지 못한 채 일방적인 입장의 표명만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집단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에 근거한 인식의 차

이를 좁히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점에서 기초자료의 정비와 충실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明憲,『財閥과 韓國經濟』, 나남출판, 1996. 5.

公正去來委員會,「大規模企業集團 株式所有現況」, 각년도.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聯 法規集」.

司空壹, 「經濟成長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硏究』, 제2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80.

劉承旻,「企業集團, 中小企業, 政府: 產業・企業政策의 課題」, 한국개발연구원 내부자료, 1995.

劉承旻・李仁燦,「韓國製造業의 技術的 效率性: 產業別 技術的 效率性의 測定」,『韓國開發硏究』, 제12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李奎億,「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한국개발연구원, 1976

李奎億・李成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서 85-02, 한국개발연구원, 1985.

李奎億・李在亨,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연구보고서 90-04, 한국개발연구원, 1990.

李奎億・李在亨・金周勳,『市場과 市場構造: 우리나라의 製造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84-06, 한국개발연구원, 1984.

李在亨・劉承旻,「大事業體와 財閥事業體의 成長과 生產性」,『韓國開發硏究』, 제16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崔載哲・李在亨,「市場構造指數의 選擇과 政策的 應用」,『韓國開發

研究』, 제10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教育社歷史新書 〈日本史〉 123, 教育社, 1978.

Cowling, K. and M. Waterson, "Price-Cost Margins and Market Structure," *Economica,* August 1976.

Schmalensee, R. and R.D. Willig, *Hand 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North-Holland, 1989.

Jacquemin, A. P. and C. H. Berry, "Entropy Measure of Diversification and Corporate Growth," *Journal of Industrial Ecnomics,* June 1979.

Weinstork, D.S., "Using the Herfindahl Index to Measure Concentration," *Antitrust Bulletin,* Summer 1982.

[補論] 多邊化指數의 特性

1. 出荷商品數 또는 參與産業數

기업집단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수로서 다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품목이 기업집단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는 결점을 갖지만 다변화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다.

2. 主力産業特化度(ISR: Industry Specialization Ratio)

이 지수는 기업집단 총출하액 중 중분류산업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앞의 지수와 달리 다변화의 범위를 알 수 없으며 또한 각 시장별 기업활동의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잘 반영한다.

3. 엔트로피(Entropy) 多邊化指數

엔트로피지수는 시장집중지수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변화지수로도 이용된다. n개의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엔트로피다변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 = \sum_{i=1}^{n} S_i \log S_i$$

단 S_i는 해당기업의 출하액 중 i산업의 비율

엔트로피지수는 여러가지 장점과 결함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다

변화의 속성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특정 기업집단의 다변화는 관련산업 내에서의 다변화와 이종산업간에 걸친 다변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이를 분해할 수 있다.

특정 기업집단의 출하액 중 i산업의 출하액 비중을 S_i라 하고, i산업내에서 좀더 세분된 j산업 출하액이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S_{ij}, 그리고 j산업출하액이 i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S_j라 할 때 그 집단의 총 엔트로피다변화지수(ET)와 관련산업다변화 엔트로피(ER), 이종산업다변화 엔트로피(EB)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T = EB + ER$$

$$ET = \sum_{i=1}^{n}\sum_{j=1}^{m} S_{ij} \log S_{ij}$$

$$EB = \sum_{i=1}^{n} S_i \log S_i$$

$$ER = \sum_{j=1}^{m} S_j \log S_j$$

(i=1,2,…… n : 중분류산업수

j=1,2,…… m : 특정 중분류산업 내에서의 세세분류산업수)

4. 베리(Berry)指數: 허핀달指數의 變形

이 지수는 시장구조의 측정에 이용되는 허핀달지수를 다변화지수로 이용한 것으로서, 각 집단의 총출하액 중 개별산업 i의 출하액의 점유율을 S_i라고 할 때

$$H = \sum_{i=1}^{n} S_i^2 \ (n\text{=참여산업수})$$

로 정의된다. 이 지수는 참여산업간의 상대적 규모차이가 산업수보

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산업의 규모분포를 나타내는 이점을 갖는다. 이 지수는 규모분포가 균등할수록 그 값이 적어지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Berry(1971)는 지수치가 클수록 다변화 정도가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H^* = 1 - H$$

로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표 1〉 鑛工業部門의 構造變化

(단위 : 개, 천명, 10억원)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업원수			출하액		
	83	88	94	83	88	94	83	88	94
광공업	41,088	61,723	92,578	2,299	3,208	2,965	60,814	134,420	297,845
광업	2,066	1,991	1,206	94	96	35	1,445	2,384	1,678
제조업	39,022	59,732	91,372	2,205	3,111	2,929	59,369	132,035	296,166
15	4,422	4,648	5,858	173	214	200	6,477	11,375	23,425
16	22	22	16	13	9	5	1,601	2,152	3,210
17	5,129	7,499	9,838	357	415	304	5,739	12,041	17,959
18	3,532	5,912	8,460	223	283	203	2,193	4,798	8,632
19	1,382	2,538	3,085	169	228	96	1,800	5,409	5,465
20	1,707	1,948	2,505	42	43	41	852	1,318	2,903
21	1,421	1,895	2,600	53	69	68	1,645	3,813	7,488
22	1,499	2,499	4,366	47	72	92	946	1,912	5,650
23	57	76	76	5	7	10	6,355	5,761	13,141
24	2,003	1,824	2,644	12	126	154	5,795	11,582	27,510
25	1,876	3,419	5,416	71	122	137	1,760	4,929	11,093
26	2,839	3,339	4,567	100	123	135	2,548	5,259	12,953
27	1,096	1,560	1,921	94	122	117	5,732	11,892	24,793
28	2,652	3,968	8,790	110	148	186	1,955	4,645	13,792
29	3,101	6,069	11,582	136	238	293	2,854	9,282	24,227
30	198	193	599	15	17	30	272	1,028	3,673
31	982	2,029	4,043	65	110	125	1,411	4,159	9,765
32	900	2,652	3,434	137	321	264	3,525	14,077	32,503
33	473	942	1,801	27	52	48	352	1,384	3,176
34	622	1,508	2,815	54	154	209	2,062	9,208	28,425
35	332	431	808	69	56	83	2,214	2,301	9,804
36	2,770	4,696	5,896	114	169	116	1,268	3,682	6,364
37	7	65	162	0	1	2	0	156	202

註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산업 번호별 산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15 음식료품, 16 담배,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N.E.C,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기타 운송장비,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부표 2〉 鑛工業部門 産業中分類別 成長要因

(단위 : %)

산업분류	총출하액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당출하액증가율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83~88	88~94	83~94
광공업	17.2	14.2	15.5	8.5	7.0	7.7	8.0	6.7	7.2
광업	10.5	−5.7	1.4	−0.7	−8.0	−4.8	11.3	2.5	6.5
제조업	17.3	14.4	15.7	8.9	7.3	8.0	7.7	6.6	7.1
15	11.9	12.3	12.4	1.0	3.9	2.6	10.8	8.1	9.6
16	6.1	6.9	6.5	0.0	−5.2	−2.9	6.1	12.8	9.7
17	16.0	6.9	10.9	7.9	4.6	6.1	7.5	2.2	4.5
18	16.9	10.3	13.3	10.9	6.0	8.3	5.4	4.1	4.6
19	24.6	0.2	10.6	12.9	3.3	7.6	10.4	−3.0	2.8
20	9.1	14.1	11.8	2.7	4.3	3.5	6.2	9.4	8.0
21	18.8	11.9	14.8	5.9	5.4	5.6	12.2	6.1	8.7
22	15.1	19.8	17.6	10.8	9.7	10.2	3.9	9.2	6.7
23	−1.9	14.7	6.8	5.9	0.0	2.6	−7.4	14.7	4.1
24	14.9	15.5	15.2	−1.9	6.4	2.6	17.1	8.6	12.3
25	22.9	14.5	18.2	12.8	8.0	10.1	9.0	6.0	7.4
26	15.6	16.2	15.9	3.3	5.4	4.4	11.9	10.2	11.0
27	15.7	13.0	14.2	7.3	3.5	5.2	7.8	9.2	8.6
28	18.9	19.9	19.4	8.4	14.2	11.5	9.7	5.0	7.1
29	26.6	17.3	21.5	14.4	11.4	12.7	10.7	5.3	7.8
30	30.4	23.6	26.7	−0.5	20.8	10.6	31.1	2.3	14.6
31	24.1	15.3	19.2	15.6	12.2	13.7	7.4	2.8	4.8
32	31.9	15.0	22.4	24.1	4.4	12.9	6.3	10.2	8.4
33	31.5	14.8	22.1	14.8	11.4	12.9	14.5	3.1	8.1
34	34.9	20.7	26.9	19.4	11.0	14.7	13.0	8.7	10.6
35	0.8	27.3	14.5	5.4	11.0	8.4	−4.4	14.7	5.6
36	23.8	9.5	15.8	11.1	3.9	7.1	12.7	5.4	8.1
37	88.5	53.2	68.0	56.2	16.4	33.1	20.7	31.6	26.2

註 : 산업분류는 〈부표 1〉과 동일.

論 評

朴 炳 亨
(東亞大學校)

이 논문은 기업집단(재벌)의 현황과 특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제요인들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비교적 만족스럽게 달성되고 있다. 최근 재벌-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광범위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접하기 쉽지 않은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하겠다. 관련 논의에서 많은 주장들이 흔히 명확한 경험적 근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정책적 판단의 혼선도 여기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경험적 증거의 모색을 선결과제로 보고 있는 논문의 기본적 입장은 올바른 것이다. 여기서는 방법론상의 한계점 및 회귀분석결과의 해석에 관련하여 약간의 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논문의 초점이 '기업집단의 규모-성과-시장지위-다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다고 본다면, 그 분석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연구목적이 어떤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형의 설정 및 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상관관계의 파악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다.

먼저 회귀모형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만큼 모형이 임의적(ad hoc)이라는 한계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 결정계수값이 '횡단면 분석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높다는 표현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임의적 모형설정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다.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들이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선 기업집단이 관측단위인 경우에는 변수의 집계과정에서 정보가 왜곡 또는 상실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기업성과에 대하여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가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외생변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결과에 교란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시장력을 가진 대기업들에서는 (노사문제 등의 맥락에서) 이른바 이윤배분(rent sharing)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피설명변수가 '이윤'변수가 아니라 '생산성'지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과의 해석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노동의 질의 대리변수로 함은 논평자도 미국 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 사용했었던 바이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것도 특히 기업집단 또는 대기업부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평균임금이 노동투입의 질로서 인간자본을 반영한다는 가정은 무엇보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고 일정시점의 평균임금은 (이윤배분 등을 통한) '노동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의 질'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논평자가 사용했던 몇가지 검증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상의 한계도 있는 만큼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다.

노동의 질이나 자본장비율의 효과는 피설명변수의 정의상 거의 자명한 것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지만, 규모변수가 기업집단 및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흥미있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가 개별기업차원에서는 나타나지만 기업집단차원에서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집단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규모의 불경제도 작용한다거나 대규모 집단의 경우 일부 계열기업의 나쁜 성과가 규모효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주요 관심사인 시장력 및 다변화 변수들의 유의하지 못한 추정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형설정에 특정한 결과일 수 있는 만큼 '제한적 결론'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가중평균 점유율이나 참여시장구조변수가 적어도 생산성 지수와 같은 효율성 변수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논문의 각주에서도 논의되듯이 기업이윤이 피설명변수일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기업집단의 비중, 시장지위, 다변화, 소유구조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지만 비교적 상세하고 최신화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집단의 비중이나 활동에 대하여 몇가지 중요한 추세 및 양상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는 상하위 기업집단간 규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행의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요망된다. [그림 1]에서도 주로 상위집단의 경우에 비중의 증가추세가 확연하며 통계기준의 조정에도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주로 상위집단에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집중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과의 단순한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은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통계치의 직접적 비교는 오히려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일반집중의 통계적 추계 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의한 추세비교 이외의 경우에는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집중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 즉 일반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에 있다고 본다. 일반집중이 나쁘다면 왜 나쁜가, 어느 정도 나쁜가, 그리고 나라마다 같은 논의가 가능한가(특유화되지 않은 일반적 성격의 거래의 비중이 높고 경쟁체질이 통상적인 거래문화에서는 일반집중이 부정적인 거래행태나 성과를 초래할 우려가 비교적 약할 것이다)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유분산이 문제라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자연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재벌특유의 거래행태에 초점이 두어질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그것이 과거 정책과 관행의 소산인 측면이 강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林 暎 宰

(本院 硏究委員)

본 논문은 우리나라 大規模 企業集團에 대한 基礎資料의 정비와 분석을 통하여 그 現況과 特徵을 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經濟力集中 및 大企業政策을 둘러싼 論爭에서는 서로의 논거를 확인할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고 있는 大規模企業集團의 現況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작업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초연구작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大規模企業集團이 갖는 속성으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들고, 그중 統計的인 分析이 가능한 처음의 세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大規模企業集團의 現況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들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네

가지 속성이란, ① 經濟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는 점, ② 그 系列企業들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個別市場에서 獨寡占的인 地位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③ 系列企業간 복잡한 지분관계와 企業集團 總帥 및 家族의 소유지분에 의한 企業所有의 集中이 높다는 점, ④ 系列企業間 統合的 經營構造 및 집단적·협조적·상호의존적 기업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들 중 네번째 특성은 현재 정부의 對재벌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위 企業集團 內部去來 規制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企業集團 內部去來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企業集團 內部去來現象의 分析에 필요한 企業資料가 아주 부족한 데에 많은 부분 기인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經濟 全體에서 企業集團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大規模企業集團의 사업구조조정이 鑛工業部門으로부터 첨단서비스산업 쪽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공업통계자료에 근거한 經濟力集中指標는 실제의 모습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全産業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重 대신 鑛工業部門에서의 企業集團의 比重을 추계한 이유가 설명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광공업부문에 국한한 분석으로부터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비중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와 대규모기업집단의 占有率間에 「성장기·호황기=기업집단 비중 감소, 침체기·안정기=기업집단 비중 증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성장기 내지 호황기에는 수많은 中小規模企業의 활발한 창업과 활동에 의해 성장이 선도됨으로써 企業集團의 比重이 낮아지다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企業集團의 比重이 높아지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물론 中小企業의 進入과 退出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성장기 또는 호황기에 中小企業의 進入速度와 불황기에 中小企業의 退出速度에 대한 경험적 비교를 수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제Ⅳ장 企業集團의 特性들간의 관계에 관한 實證分析에서는 1991~94년간의 上位 50大 企業集團과 上位 200大企業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집단 단위와 기업 단위로 각각 실증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시도는 모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上位 5大 企業集團 系列企業에 대해 dummy변수를 부여하며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본 논문의 第Ⅱ章 企業集團의 比重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上位 5大 企業集團의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上位 30大 企業集團 가운데 上位 5大 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重도 더욱 높아지면서 下位集團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본 논문에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해 dummy변수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자 하다가 30위 이내의 기업집단과 여타 기업집단간에 특별한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위 200대 기업이 대부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본 논문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企業集團의 規模는 企業集

團의 成果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企業規模는 企業의 成果와 正의 關係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규모는 총출하액으로 측정되었으며, 성과는 종업원 1인당(또는 임금 단위당) 출하액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大規模 企業集團들이 다양한 系列企業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다면(그것이 動態的 競爭力이든, 보다 長期的 利潤 追求이든), 1991~94년에 걸친 종업원 1인당(또는 임금 단위당) 출하액이라는 성과변수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결론부분의 정책적 시사점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 실증분석에서 "이 모형에 의하면" 企業集團의 多邊化는 成果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현단계에서 企業 效率性 혹은 成果라는 측면에서 多邊化 등의 效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변화의 효과는 動態的 效率性 또는 動態的 競爭力과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Vol. 18, Nos. 3, 4 **Fall / Winter 1996**

Product Liability Law: Economic Effect and Implementation — *Kwang-shik Shin*, *Bon-chun Koo*
Comment: *Il-joong Kim / In-gyu Kim*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Price Changes in Korea — *Yoon-ha Yoo*, *Myung-kee Sung*
Comment: *Jong-kyu Park / Ki-seok Hong*

Evaluation of Structural Adjustment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 — *So-mi Seong*
Comment: *Chul-kyu Kang / Joon-kyung Park*

Big Business Groups in Korea: Performance, Diversification, and Ownership Structure — *Jae-hyung Lee*
Comment: *Byong-hyong Bahk / Young-jae Lim*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研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아　　래〈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겉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총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내용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課題 提示를 내용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研究』 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싣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림.

研究報告書 案內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의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朴宗淇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硏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잠정)	金榮奉 外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과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의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敎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洲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을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兪 焄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金迪敎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產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秊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敎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產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秊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產業의 需要分析과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淇
第75－14卷	織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產構造	金榮奉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第78－01卷	1968～73年 韓國鑛工業 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秊 孫炳岩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產性分析(1966～75)	金迪敎 孫讚鉉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査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硏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產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敎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產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硏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硏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鎭敎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硏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硏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生產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硏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李奎億 編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炳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炳瑞 外
第82－09卷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秀吉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淸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重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秀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硏究	朴世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栽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 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德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炳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仁政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載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重雄 崔 洸 編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重雄 外
第84－05卷	인플레期待와 經濟安定	李啓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奎億 外
第85－01卷	產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大熙 柳炳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運邦 孫英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烷 外
第85－05卷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郭泰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德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啓植 郭泰元 編

第85－08卷	特許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鄭鎭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硏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硏究	李 烘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清 李啓植 編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烘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과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옵션市場의 活用方案	李 烘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化와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烘 外
第89-02卷	硏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產性	金迪敎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李啓植 編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祐 外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朴埈卿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硏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硏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淸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權純源 編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硏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의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李啓植 盧基星 編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產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張義泰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盧基星 編
第92－03卷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埈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產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柳一鎬 編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李元暎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兪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文亨杓 編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產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硏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柳一鎬 編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產業의 當面課題와 產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湜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比較	兪正鎬
第95－03卷	法經濟硏究(Ⅱ)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敎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의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　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과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과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新 刊 案 內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半洋裝/A5新/148쪽/定價 5,000원/朴 進 著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半洋裝/A5新/256쪽/定價 9,000원/姜 文 秀 著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半洋裝/A5新/202쪽/定價 7,000원/李德勳·崔範樹 著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과 政策對應

半洋裝/A5新/326쪽/定價 10,000원/朴 佑 奎 外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半洋裝/A5新/164쪽/定價 6,000원/姜 文 秀 外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半洋裝/A5新/286쪽/定價 9,000원/金 周 勳 著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半洋裝/A5新/346쪽/定價 12,000원/李 周 浩 著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半洋裝/A5新/242쪽/定價 10,000원/李 啓 植 外

創業支援金融制度의 發展方案

半洋裝/A5新/256쪽/定價 9,000원/李 德 勳 外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半洋裝/A5新/284쪽/定價 11,000원/左 承 喜 編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半洋裝/A5新/324쪽/定價 12,000원/崔範樹·李基煥 著

KDI 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硏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림.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會　　費 : 100,000원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8)

KDI 圖書 販賣處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7-3628
	종로서적(3층 사회관)	Tel. 733-2331
	영풍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9-5632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Tel. 816-9500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Tel. 425-0050